

KREI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임소영 · 김수린



KREI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임소영·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임소영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제4장 집필

김수린 | 부연구위원 | 제2장 집필, 제3장 감수

정책연구보고 P283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6.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유)디자인스토리

I S B N | 979-11-6149-565-1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고령농업인은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였고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자원이었다. 그러한 고령농업인이 건강 등 여러 사유로 쉽게 은퇴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농업 이외의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노후 소득안정정책이 있지만 경영이양직불과 농지연금은 농지의 처분과 연계되어 있어 당장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지금의 고령농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마저도 지원 상한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정책의 틀을 새로 짜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인 연금 논의가 등장하게 된다.

정책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인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농업인 노후소득안정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외국 사례를 맡아서 조사에 임해준 전문가들과 자문을 해준 자문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청년이 농업에 진입하여 성장, 안정 단계를 거쳐 고령에 들어갔을 때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소득정책일 것이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업인의 노후소득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 농업인구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22.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업인 연금제도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농업인 연금 도입에 따른 쟁점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럽 및 일본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었던 농업인 연금제도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 농업인 연금을 도입한다고 할 때 예상 가능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농업인 노후소득안정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농업인의 소득 및 지출, 농업인 노후소득안정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의 농업인 연금제도에 대해 국가별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 농업인의 노후소득지원 필요성과 노후소득안정정책 평가를 위해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량분석에는 농가경제조사를 비롯한 통계청 자료와 지원사업의 실적 자료 등 통계자료가 이용되었다.
- 농업인 연금제도의 신규 도입 가능성 및 농업인 노후소득안정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노후소득안정정책 및 농업인 복지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 외국의 농업인 연금 사례를 살펴본 결과, 농업인 연금이 노후 가계비 전체를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주요한 소득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독일, 프랑스, 일본의 농업인 연금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연금과는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영농민을 대상으로는 농민연금과 임금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일부를 MSA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농업인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반적 법적 연금보험(GRV)과 분리된 독자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농업자 연금은 공적연금체계의 2층에 해당하는 가산연금으로서 농업자연금기금이 농업자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 외국의 농업인 연금은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 뿐만 아니라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장치로서도 활용되어 왔다. 2018년 이전까지 독일의 농업인은 연금을 받기 위해 농장을 이양해야만 했으며 일본도 특례부가연금제도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노후 소득 확보와 경영이양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도 연금 지급의 조건이 완전한 은퇴라는 점에서 경영이양과 연관이 있다.
- 유럽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의 가입 범위는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관계된 인구까지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가족, 농업 종사 임금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농민과 임금농민을 구분하여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농업인노령보험은 농업경

영주와 배우자,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 농업자 연금은 가입 대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농가 내 농업종사자가 모두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농업법인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는 농업자 연금이 아닌 후생연금의 가입 대상이다.

○ 가입 방식에 있어 유럽 국가와 일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의무가입인 반면 일본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일본은 국민연금으로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하고 있는 구조이므로 농업자 연금이 가산연금으로서 의무가입의 필요성이 낮다. 반면, 유럽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독자적인 연금 체계로 운영되고 농업인의 자격 요건으로서 연금 가입 여부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의무가입의 필요성이 높다.

○ 농업인 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세 국가의 공통점이다. 프랑스에서는 예산으로 농업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재정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연간 소득이 기준 소득의 60% 미만일 때 최대 보험료의 60%까지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농업자연금기금의 운영비와 농업자연금 보험료의 지원액을 지급하고 있다.

○ 농업인 연금만으로는 노후필요소득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 프랑스에서는

낮은 연금액에 대한 농민단체의 불만이 커지자 최저임금의 70%에 불과한 자영농민의 농민연금액을 85%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였다. 독일 농업인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생계의 일부를 담당하는 부분연금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2018년까지는 부분연금하에서 연금 개시의 조건으로 영농은퇴를 의무화해 왔다. 일본의 농업자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산연금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업인에 한해 노후 소득원 중 하나가 된다.

- 연금 재원 확보방식에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있으며 각국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양세대가 피부양세대의 1/3 수준인 구조 탓에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일본은 2001년까지 부과방식을 적용하다가 부양세대의 경제적 부담가중으로 인해 적립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 농업인 연금을 도입한다고 할 때, 1안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을 운영주체로 하고 가산하는 형태의 농업인 연금을 제시하였으며 2안으로서 민간보험사를 운영주체로 하여 별도의 기금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각 방안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쟁점은 가입방식, 운영주체, 연금 재원확보,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요건으로 분류된다. 가입방식은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에 대한 결정이다. 운영주체는 농업인연금의 보험료 수납, 재정 운용, 연금 지급 등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것이다. 연금재원확보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간의 선택의 문제이다. 가입기간 및 연금수

령요건은 농업인 연금의 최소의무가입기간의 설정 여부, 연금 수급 시작 연령, 가입 요건으로서 경영이양 이행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 이러한 쟁점들은 농업인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관련부처의 입장, 재원확보 가능성, 농업경영환경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 외국의 사례는 국내와는 연금제도의 발전과정이나 특성의 차이가 있어 외국의 방식을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럽의 경우, 농업인 연금 관리 기관이 연금 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위한 여타 사회보험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과 연계되어 있다.
-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가산연금으로서 농업인 연금을 도입하되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일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내의 노후 소득체계와 보다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벤치마킹이 용이하다.
- 다만 일본의 농업자 연금은 별도의 운영기관과 기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일본과 같이 별도의 운영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기관 및 기금 설치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방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국내에서 그런 정도의 현장 수요가 확인되지 않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 따라서 농업인 연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의 일부로서 농업인 연금을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정책 제언

- 농업인 연금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응과제이다. 현재 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농업인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을 촉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받쳐 주는 체계가 되어야 농업인의 노후 소득 확보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추가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연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하되 보험료를 정부가 추가 지원함으로써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연금이 노후생계를 완전하게 보장하기에는 재정 여건 상 어렵고, 독일처럼 부분연금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농업인 연금제도가 경영이양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경영이양을 도울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인 연금제도가 부분연금이기 때문에 경영이양을 연금 수령의 조건으로 부과하기 어렵다. 그

러나 일본의 특례부가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경영이양을 전제로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은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과 통합하여 노후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제도로 구상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영이양직불과 농지연금은 모두 노후소득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전자는 구조조정에, 후자는 노후소득안정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두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낮고 사업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농지 이양과 연계된 노후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인 연금과는 달리 두 제도는 경영이양을 사전에 준비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 연금과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소득 중심의 농업인 연금과 자산 중심의 노후소득안전망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되 경영이양의 정의, 요건,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상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노후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농업인의 노후 준비 및 관련 정책 현황

1. 고령농업인의 경제적 상황과 노후 준비	19
2. 농업인의 노후 소득 관련 정책	22
3. 소결	48

제3장 농업인 연금제도의 해외 사례

1. 프랑스 농업인 연금제도	53
2. 독일 농업인 연금제도 운영 현황과 체계	69
3. 일본 농업자연금	90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114

제4장 국내 농업인 연금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

1. 농업인 연금 도입의 쟁점	121
2. 농업인 노후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31

부록

독일의 법적 연금보험(GRV)	137
------------------------	-----

참고문헌	143
------------	-----

제2장

〈표 2-1〉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부족	20
〈표 2-2〉 농지연금제도 담보농지 요건	24
〈표 2-3〉 농지연금제도 유형	24
〈표 2-4〉 농지연금제도 연금지급 정지	25
〈표 2-5〉 농지연금제도 연도별 가입현황	27
〈표 2-6〉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연도별 가입현황(2016~2020년)	34
〈표 2-7〉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신규이양 연령별 실적(2020년 기준)	37
〈표 2-8〉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지목별 현황(2018년 신규 기준)	38
〈표 2-9〉 농업인 연금보험료의 농업인 요건	40
〈표 2-10〉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	41
〈표 2-11〉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및 최대 지원금액 추이(2017~2021년) ..	41
〈표 2-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일제조사 추진체계	44

제3장

〈표 3-1〉 프랑스 사회보험체제 종류	55
〈표 3-2〉 프랑스 농민연금 유형	59
〈표 3-3〉 프랑스 농민연금 적용 대상	60
〈표 3-4〉 법정 퇴직연령 및 완전연금 수령연령	61
〈표 3-5〉 출생연도에 따른 완전퇴직 보험 기간	61
〈표 3-6〉 사회보장한도 미만/초과에 따른 기여율(2022년 기준)	63
〈표 3-7〉 MSA의 재정 수입(2020년 기준)	64
〈표 3-8〉 농업 종사자 레짐 사회수당 항목별 지출(2020년)	65
〈표 3-9〉 임금농민의 점진적 은퇴: 감축 노동시간과 연금 지급 비율	68

〈표 3-10〉 농업인노령보험의 최소영농규모 기준	71
〈표 3-11〉 농업인노령보험의 월 보험료 크기	73
〈표 3-12〉 조기연금의 연금 삭감 기준(2022. 1. 1.~2022. 6. 30. 기간)	77
〈표 3-13〉 완전한 취업능력감소연금의 연금 삭감 기준(2022. 1. 1.~2022. 6. 30. 기간)	79
〈표 3-14〉 부분적 취업능력감소연금의 연금 삭감 기준(2022. 1. 1.~2022. 6. 30. 기간)	80
〈표 3-15〉 연금유형별 상관지수	82
〈표 3-16〉 SVLFG의 사업 규모 및 재정 구성	84
〈표 3-17〉 농업인노령보험의 수입 및 지출 내역	84
〈표 3-18〉 농업인노령보험 보험자 현황	85
〈표 3-19〉 농업인노령보험 보험자 연령 구성(2020. 12. 31. 기준)	86
〈표 3-20〉 농업인노령보험 연금수령자 현황	87
〈표 3-21〉 농업인노령보험 연금유형별 월평균 연금액	88
〈표 3-22〉 보험자연금의 수령자 세부 구성	88
〈표 3-23〉 표준노령연금의 수령자 구성별 남녀 분포	89
〈표 3-24〉 보험자연금의 수령자 구성별 월평균 연금액	90
〈표 3-25〉 농업자연금의 신·구제도 비교	95
〈표 3-26〉 보험료의 국고보조 대상자와 보조액	99
〈표 3-27〉 연금단가(65세 지급 개시의 경우)	102
〈표 3-28〉 연금 지급	102
〈표 3-29〉 농업자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	103
〈표 3-30〉 농업자연금 피보험자 수 및 수급권자 수	108
〈표 3-31〉 보험료 납부금액별 피보험자 수	109

〈표 3-32〉 연금종류별 수급권자 수 및 연금액	109
〈표 3-33〉 농업자연금 사업 위탁업무 개요	111

제4장

〈표 4-1〉 농업인 연금 도입방안 정리	124
〈표 4-2〉 농업인 연금 도입방안별 장단점	125

부록

〈부표 1〉 2020년도 GRV와 AdL의 수입예산 구성	138
〈부표 2〉 연금유형별 상관지수	140

제2장

〈그림 2-1〉 빈곤 농가 연령별 구성(2020년 기준)	21
〈그림 2-2〉 농(어)가가 인지한 농촌 지역 우선 필요정책	22
〈그림 2-3〉 농업인 노후소득보장 관련 주요 정책 구조	22
〈그림 2-4〉 농지연금 예산 추이(2018~2022년)	25
〈그림 2-5〉 농지연금 추진체계	26
〈그림 2-6〉 농지연금제도 사업 실적(2011~2021년)	26
〈그림 2-7〉 농지연금제도 유형별 가입 비율	28
〈그림 2-8〉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예산 추이(2017~2022년)	32
〈그림 2-9〉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추진체계	33
〈그림 2-10〉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연도별 신규 가입현황(2016~2020년)	34
〈그림 2-11〉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지역별 가입자 현황(2020년 기준)	35
〈그림 2-12〉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지역별 가입 토지면적(2020년 기준)	36
〈그림 2-1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지역별 지급액 현황(2020년 기준)	36
〈그림 2-14〉 농업인 연금보험료 예산 추이(2017~2021년)	42
〈그림 2-15〉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추진체계	43
〈그림 2-16〉 농업인 연금보험료 월평균 지원 인원	45
〈그림 2-17〉 농업인 연금보험료 1인당 평균 지원월액 추이(2015~2019년)	46

제3장

〈그림 3-1〉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기본구조	55
〈그림 3-2〉 프랑스 연금체제 기본 구조	56
〈그림 3-3〉 2011~2020년 농민연금 수령권자 변화추이	66
〈그림 3-4〉 프랑스의 경제활동 중인 농업인 수 변화	67

〈그림 3-5〉 농업자연금제도의 위치	?
〈그림 3-6〉 구제도의 농업자연금 피보험자와 수급권자	94
〈그림 3-7〉 농업자연금 가입연령 연장	96
〈그림 3-8〉 35세 미만인 자의 통상가입 보험료	97
〈그림 3-9〉 보험료 부담 예시	99
〈그림 3-10〉 농업자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 소급	104
〈그림 3-11〉 특례부가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 소급	104
〈그림 3-12〉 피보험자 수 추이	109
〈그림 3-13〉 농업자연금(기금) 업무 추진 체계	111
〈그림 3-14〉 농업자연금기금 자금의 흐름도	113
〈그림 3-15〉 연금자산의 운용	114

제4장

〈그림 4-1〉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	122
----------------------------	-----

제1장

서론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농업인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음.

- 65세 이상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8.3%였으나 2020년에는 55.9%로 증가함.
- 반면 40세 미만 농가의 비율은 지난 30년간 14.6%에서 1.2%로 대폭 감소하였음.

○ 농업인의 고령화는 고령농업인의 경영은퇴가 지연되고 청년농업인의 진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임.

○ 경영이양 지연의 원인은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전망 미비와 후계자의 부재임.

- 65세 이상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경영이양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이유로 후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3.4%, 영농으로 생계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였음(임소영 외, 2019).
 - 만 65세 이상 농촌 노인 사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농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50.7%임(박대식, 2019).
- 그중에서도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전망 확충은 고령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전제 요건임.
- 농사일에 참여하는 농촌노인의 36.0%가 ‘농사일밖에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한편 그와 비슷한 35.3%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하였음(박대식, 2019).
-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전망 확충은 청년농 육성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음.
- 농업 종사의 매력도를 높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현재 농업인의 노후소득 관련 지원정책에는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있으나 호응도가 낮거나 충분한 소득보장 수단이 되지 못함.
- 경영이양직불제는 1997년에 도입되어 조기에 경영이양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었으나, 고령농업인의 자경의지가 강하고 농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농지를 신규농업인에게 매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참여도가 낮음.
- 농지은행 또한 농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참여도가 낮음.

- 농지연금 가입자는 2020년 기준 1만 7,098명으로 65세 이상 농가인구 98만 명 중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국민연금 가입률과 기준소득이 낮아 기대 연금액이 노후 소득안정에 충분한 수준이 아님.

-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35.6%(2018년)로 전체 가입률 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농업인 평균 수급 연금액은 월 26만 1,000원으로 전체 평균 월 50만 9,000원의 절반에 불과함(김남훈 외, 2020).
- 농촌노인 대상 사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5%만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월 수령액은 35만 원 정도임(박대식, 2019).

○ 기존의 노후 보장정책이 노후 소득안정에 충분치 않고 경영이양 지원 효과가 불분명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정책 즉, 농업인 연금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김수석(2008), 임소영 외(2019)는 농업인 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국회와 정치권에서 대선 공약으로 농업인 연금이 제시되었음.¹⁾

○ 외국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노후 소득 증가를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은 농업자노령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며, 경영이양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가연금을 지급함.

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정년제와 연금제 도입 제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청년미래세대 육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서 고령 은퇴농 연금제도 도입 검토, 은퇴농 농지는 청년에게 우선 제공을 대선공약으로 제시.

- 프랑스는 60세에 도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며 경영이양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독일은 67세에 도달한 농업인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함.
- 기존 정책의 보완 필요성이나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 연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농업인 연금 도입의 가능성 및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업인 연금제도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농업인 연금 도입에 따른 쟁점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유럽 및 일본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었던 농업인 연금제도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 농업인 연금 도입 시 예상 가능한 쟁점을 검토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제2장에서는 먼저 농업인의 노후소득 현황과 노후소득안정정책에 대해서 다룸.
- 고령농업인의 소득과 지출, 농업인의 공적 연금 가입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노후 준비 현황을 살펴봄.

- 농업인의 노후소득안정정책의 역할과 특징,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제도 개선 과제를 다룸.
- 제3장에서는 해외의 농업인 연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봄.
 -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의 운영 체계, 정부 지원 현황, 농업인 가입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국내 농업인 연금의 확충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해외 사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인을 위한 연금 확충에 있어서 예상가능한 쟁점에 대해서 다룸.
 -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 정부 지원의 방식, 연금 보험료, 경영이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농업인 연금제도 도입에 필요한 검토 사항들을 다룸.
- 제5장에서는 앞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농업인 노후 소득 지원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언함.

2.2. 연구방법

- 농업인의 소득 및 지출, 농업인 노후소득안정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정량 분석을 실시함.
 - 농가경제조사를 비롯한 통계청 자료와 지원 사업의 실적 자료 등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함.
- 해외의 농업인 연금제도에 대해 국가별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함.

- 프랑스는 한국외국어대 손동기 교수, 독일은 김수석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일본은 최경환 시니어이코노미스트에게 원고를 의뢰함.
- 농업인 연금제도의 신규 도입 가능성 및 농업인 노후소득안정정책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노후소득안정정책 및 농업인 복지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진행함.

3. 선행연구 검토

□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연구

- 정명채 외(1994)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민연금의 농어촌 지역 확대 시 예상되는 쟁점을 검토하고, 농어민 보험료 지원보다는 60세 이상 노령농민 노후보장제도와 농지이양에 따른 장려금 제도의 활용이 적절함을 주장하였음.
- 동 연구는 주요국 사례를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의 농업인 연금제도와 함께 OECD 국가들의 조기농민은퇴제도를 소개함.
- OECD 국가들의 조기농민은퇴제도 참여율이 대체로 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낮은 연금급여수준과 시간경과에 따른 구매력 약화를 그 배경으로 꼽았으며 1970년대 농업수입과 지가의 상승 또한 은퇴 유인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설명하였음.
- 박대식 외(2011)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를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인지도가 낮고 실제소득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신고함에 따라 기대 연금액이 낮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 소득에 맞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고, 사적 연금에도 가입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제안함.
- 농지연금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임소영, 최예준(2015)은 효율적 자원배분 및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가입자의 과소소득신고로 인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반감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정명채(2015)는 농촌 사회복지정책 중 사회보험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도입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음.

- 동 연구는 농어업소득의 변동이 심하고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점, 농업인의 취업상태 구분이 불분명하고 여러 형태의 은퇴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 은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동 연구는 농어민 연금에 경영이양연금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농민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 경영권을 이양하는 경우에 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함.

○ 김남훈 외(2020)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및 대상 범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 농업인 경영이양 관련 연구

○ 농업인의 경영이양을 촉진하고 노후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은 경영이양 직불제가 대표적이거나 타 직불제와의 상충성, 농업인의 낮은 호응도로 인한 한계가 지적되었음.

- 김수석(2008)은 경영이양직불제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와의 상충성 때문에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설명함.
- 오내원 외(2008)는 경영이양지원의 효과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상쇄된다고 지적함.
- 김태훈, 박지연(2018)은 경영이양직불제가 경영이양효과, 은퇴농의 소득보전 효과, 농지 규모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나 타 직불제와의 상충성, 농지규모화 사업 및 농지연금과의 유사성 문제로 인해 타 사업(농지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음.

○ 경영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농업인 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김수석(2008)은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의 사례를 들면서 영농은퇴와 연계된 농업인 연금제도를 정착시켜야 농업구조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농업인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임소영 외(2019)는 농업인의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노후소득안전망 강화와 후계자 확보, 생산적 노화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노후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중심의 경영이양직불제도 추진,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농지연금에 관한 연구

○ 황의식, 채광석(2008)은 농업인의 노후소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론 도입으로 인해 가계비 미충족 농가의 비율이 34.9%에서 17.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역모기지론은 장기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가격의 예상 변동과 위험선호에 따라 농업인의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김병규 외(2011)는 농지연금이 농촌 노인의 생계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농지연금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농지연금제도를 통한 생계비 충당 정도를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53.6~105.8%까지 충당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지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보증금 및 월보증금 인하, 정책금리 인하 등 농지연금제도의 매력도를 높여야 하며 농지연금 모델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최경진, 양재성, 성주호(2015)는 국내 농지연금제도의 도입 배경을 검토하고 급여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한 월지급금 모형의 설계 및 산출결과를 제시함

로써, 동 제도가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적용해 농지연금의 예상 월지급금액을 산정 후 비교하는 방식으로 급여지급방식 다양화를 모색하고, 부부의 최종 생존기간 등을 고려한 연생모형 도입을 제안하였음.
- 다만 농지연금제도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행된 제도라는 점, 주택연금과는 설계에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업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 기본적인 인프라의 확충이 덜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음.

○ 노진수, 장운욱(2016)은 농지연금 모형의 주요 가정들을 현실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월지급금 수준의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월지급금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이 연구는 현행 농지연금의 월지급금 수준의 결정요인인 확정적인 농지가격 모형, 상수의 연금 산정이자율, 통계청 사망률 가정 대신, 확률적 농지가격 모형, 확률적 이자율 기간구조 모형,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월지급금을 산출하여 그 수준을 비교함.
- 분석 결과 새로 산출한 월지급금은 현행 수준과 유사하였음. 그러나 이는 월지급금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의 상쇄로 인한 결과로, 향후 농지가격과 이자율의 변화, 사망률 추이 등을 관찰하며 적정성 분석 수행이 필요함.

○ 정영숙, 조덕호(2016)는 농촌노인 가구의 농지상속과 농지연금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 농촌노인 가구의 농지상속 동기는 경제적 빈곤으로 의식주 박탈이 심화될 경우 약화되었음. 이때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같은 맥락에서 농지연금 이용여부 역시 농지상속 의지와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즉 의식주 박탈이 커지면 농지상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의 노후소득에 관한 연구

○ 박대식(2004)은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이 연구는 농촌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정책방향으로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특성별로 차등화된 접근, 고령친화적 농업정책의 개발, 농촌 노인 맞춤형 영농교육 및 생산 장비 확보, 농외취업 기회 확대,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농업농촌의 특성 반영, 영농 은퇴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김정호 외(2007)는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 은퇴농의 생활 안정 지원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농업인이 단계적 정책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은퇴제도를 확립하고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음.
- 고령농 은퇴를 위해 고령농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지원, 인력지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대, 영구 은퇴 시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을 제시하였음.

○ 최경환, 황의식(2007)은 농업인의 노후소득 준비 실태를 살펴보고 노후 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국민연금 홍보 강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적정 수준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유도,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 확대, 주택역모기지론의 농업 부문 도입, 개인연금 활용 확대 유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였음.

○ 박대식 외(2009)는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수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적 기업 육성,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노후주택 개량 지원, 공동체형 농업인 홈 조성 등 전반적인 복지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최경환(2012)은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를 살펴보고 노후준비 상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후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농업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우선 공적 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 농지연금)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공적연금 외에도 사적 연금 가입 확대를 권고하고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본 연구의 차별성

○ 기존의 연구는 농업인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 확대, 농지연금의 도입 및 가입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이 연구는 기존의 노후소득지원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업인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시 발생가능한 쟁점을 다룬다는 면에서 기존 연구와는 주제 및 제안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제2장

농업인의 노후 준비 및 관련 정책 현황



2

농업인의 노후 준비 및 관련 정책 현황

1. 고령농업인의 경제적 상황과 노후 준비

- 농가는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질 만큼(송시완, 2016, p.21)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지역별 빈곤율은 농업(임업 및 어업 포함) 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백학영, 2016, p.79).
- 특히 고령농업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기대여명이 길지 않은 노인가구가 빈곤에 진입할 경우 여생 동안 빈곤을 탈출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강민정, 2017, p.1), 고령농업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고충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임소영 외(2019, pp.51-52)가 농가경제조사 2017을 이용하여 빈곤층 즉 중위소득 40%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70세 이상 농가의 26.6%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40% 미만에 해당됨.²⁾

- 농업인의 65~69세 기간 평균 소득의 65% 수준을 적정 노후 소득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70세 이상 농가의 79.5%가 적정 노후 소득수준에 도달하지 못함.³⁾
- 65세 이상 농업인이 인식하는 필요 최소 생활비를 설문한 결과, 소득이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는 각각 187만 원, 22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농가 경제조사자료상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비율은 각각 56.1%, 68.1%였음.

〈표 2-1〉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부족

단위: 명, %

기준	70~74세	75~80세	80세 이상	70세 이상 전체
중위소득 40% 미만	90 (18.1)	141 (28.1)	122 (37.0)	353 (26.6)
은퇴 직전 소득의 65% 미만	339 (68.3)	417 (83.2)	299 (90.6)	1,055 (79.5)
최소생활비(187만 원, 부부 기준) 미만	206 (41.5)	303 (60.5)	235 (71.2)	744 (56.1)
적정생활비(229만 원, 부부 기준) 미만	268 (54.0)	363 (72.5)	273 (82.7)	904 (68.1)

주 1) 괄호 안은 각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2)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는 임소영 외(2019) 65세 이상 현저통신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였음.
자료: 통계청(2018). 농가경제조사 2017 원자료; 임소영 외(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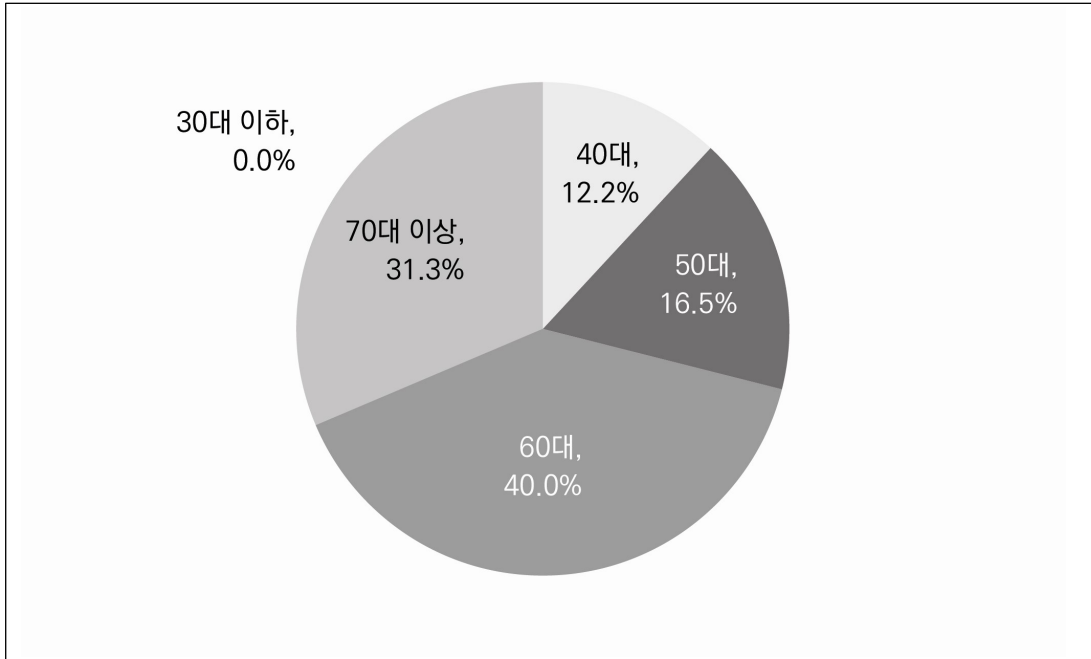
○ 2020년 말일 기준 농가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농가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 60세 이상이 7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고령화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음.

2) 2019년의 의료급여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월 682,803원, 2인 가구 월 1,162,611원, 3인 가구 월 1,504,013원, 4인 가구 월 1,845,414원, 5인 가구 월 2,186,816원, 6인 이상 가구 월 2,528,218원임(임소영 외, 2019, pp.51-52).

3) 류건식 외(2009, p.118)는 근로자의 적정 소득대체율이 64.9%인 것으로 추정하였음.

-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가운데 ‘일자리 및 소득 지원’을 꼽은 비율은 ‘질병치료서비스’(약 1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약 16%).⁴⁾

〈그림 2-1〉 빈곤 농가 연령별 구성(2020년 기준)



주 1) 농가처분가능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함.

2) 빈곤가구는 당해연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 해당. 단, 분석자료의 가구규모 최대 값인 ‘6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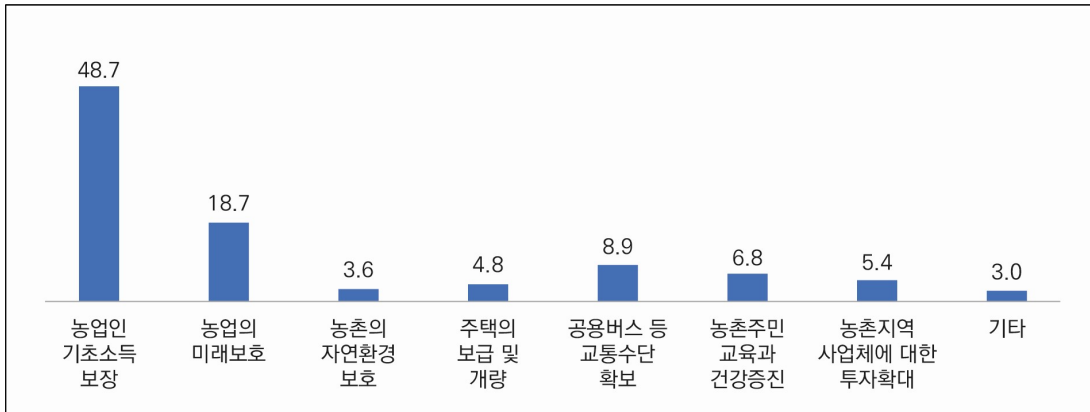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이같은 상황에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 결과, 농업인이 꼽은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으로 나타남.

⁴⁾ 통계청 웹사이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3&tblId=DT_11437036_2021&conn_path=I3). 검색일: 2022. 6. 26.

〈그림 2-2〉 농(어)가가 인지한 농촌 지역 우선 필요정책

단위: %



자료: 통계청 웹사이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3&tblId=DT_11430231_2021&conn_path=I3, 검색일: 2022. 6. 2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농업인의 노후 소득 관련 정책

○ 여기에서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관련 정책으로, 농지에 기초하여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농지연금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와 함께, 공공부조를 제외한 주요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농어업인 보험료지원사업’을 차례로 살펴봄.

〈그림 2-3〉 농업인 노후소득보장 관련 주요 정책 구조



자료: 저자 작성.

2.1. 농지연금제도⁵⁾

2.1.1. 제도 개요

- (목적) 농지연금제도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됨.
- (법적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
- (가입 조건) 영농경력자로서 만 60세 이상(2022년 2월 시행령 개정)인 자임.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 되어야 함.
 - (연금해지) 언제든지 채무 상환 후 약정 해지가 가능함. 단, 채무에는 월지급금액 총액과 함께 이자율 고정 2.0% 혹은 변동금리, 위험부담금 0.5%가 포함됨. 채무 미상환 시 담보 농지를 임의경매하며,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 회수 후 잔여금액을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함.
- (담보 농지)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담보농지평가율)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 90% 중 선택함.

⁵⁾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https://www.mafra.go.kr/>)와 농지은행·농지연금 웹사이트(<https://www.fbo.or.kr/>)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표 2-2〉 농지연금제도 담보농지 요건

구분	요건
담보 가능 농지	농지법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보유한 농지 ¹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¹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100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함.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담보 제외 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²

주 1) 상기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2)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통작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담보 가능함.

자료: 농지은행·농지연금 웹사이트(<https://www.fbo.or.kr/>, 검색일: 2022. 3. 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농지연금 종류) 총 5종류가 있으며,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구분됨.

〈표 2-3〉 농지연금제도 유형

구분	내용	대상자
종신형	종신정액형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 지급가능액의 30%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형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년형: 만 78세 이상 10년형: 만 73세 이상 15년형: 만 68세 이상
	경영이양형	지급 기간 종료 시, 담보 농지를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유형 만 60세 이상

자료: 농지은행·농지연금 웹사이트(<https://www.fbo.or.kr/>, 검색일: 2022. 5. 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월 지급금) 월 지급금 상한액은 3백만 원으로,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함. 단, 아래 사유 발생 시 연금지급을 정지함.

〈표 2-4〉 농지연금제도 연금지급 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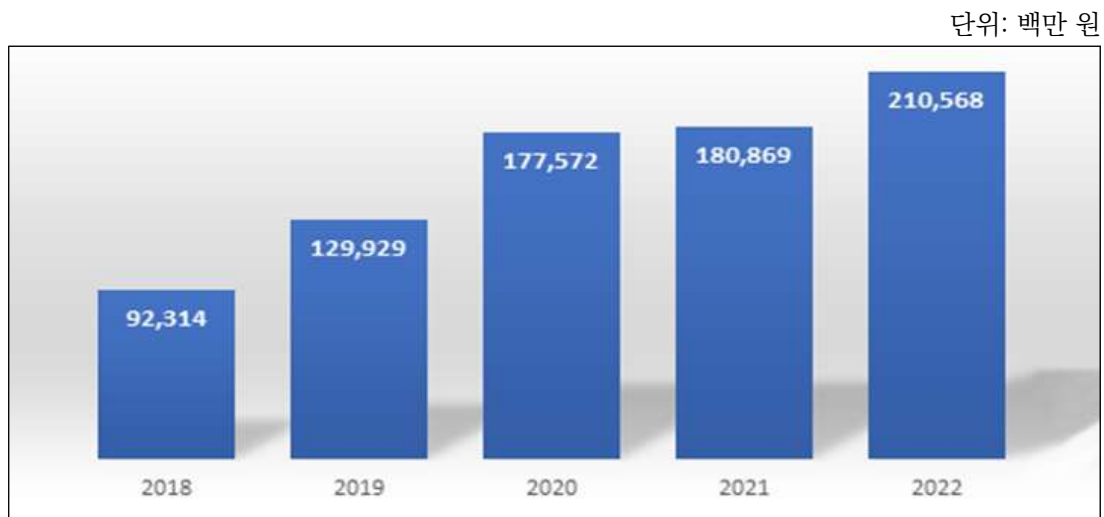
연금지급 정지 사유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로서,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자료: 농지은행·농지연금 웹사이트(<https://www.fbo.or.kr/>, 검색일: 2022. 5. 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재원) 국고(용자) 100%를 활용함.

- 예산은 증가추세이며, 2022년 기준 2,105억 6,800만 원임(전년도의 약 16.4% 수준).

〈그림 2-4〉 농지연금 예산 추이(2018~2022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추진체계) 농지연금 추진체계의 주요 주체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이 포함됨. 농어촌공사는 심사·승인·계약 체결·연금 지급 등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농지관리기금은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용자를 제공함(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7).

〈그림 2-5〉 농지연금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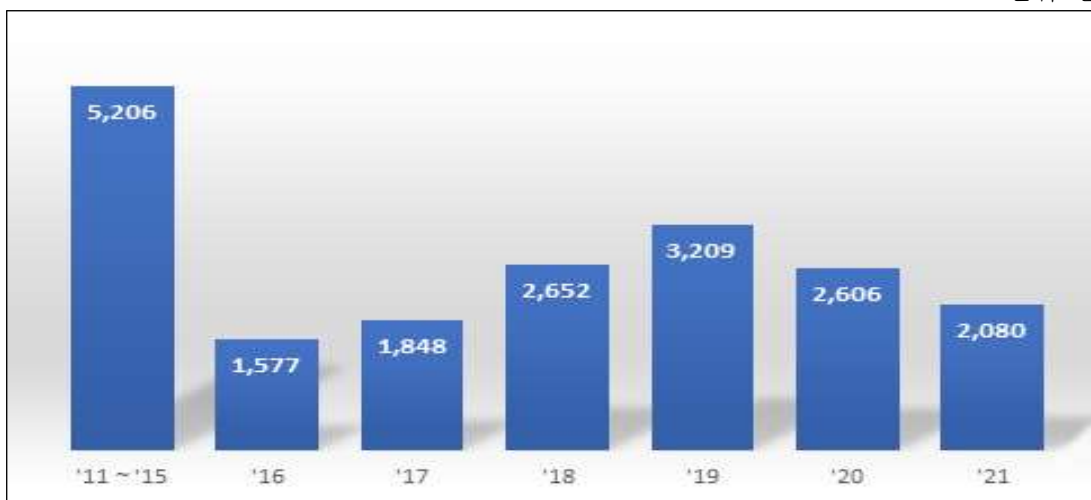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https://www.mafra.go.kr/mafra/1333/subview.do>). 검색일: 2022. 3. 17.

2.1.2. 운영 현황

○ (사업 실적)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총 19,178건임. 대체로 증가 추세가 이어져 2019년에 가장 많은 신규 가입 건수(3,209건)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2년 연속 소폭 감소함. 가장 최근인 2021년 기준 신규 가입 건수는 2,080건으로 나타남.

〈그림 2-6〉 농지연금제도 사업 실적(2011~2021년)

단위: 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https://www.mafra.go.kr/mafra/1333/subview.do>, 검색일: 2022. 3. 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가입 인원) 2011~2021년까지의 누적 가입인원은 16,678명임. 가입인원은 사업실적과 마찬가지로 2019년(2,312명)까지 증가하다 최근 2년 연속 감소함. 2021년 신규 가입인원은 1,909명임.

○ (지급액) 2011~2021년까지의 총 지급액은 약 8,495억 원(2021년 약 1,848억 원)이며, 일시인출금은 약 1,501억 원(2021년 약 383억 원)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신규가입 건에 대한 월평균 지급액은 약 122만원, 담보 농지 평균 가격은 2억 74백만 원, 담보 농지 평균 면적은 4,231㎡임.

〈표 2-5〉 농지연금제도 연도별 가입현황

단위: 명,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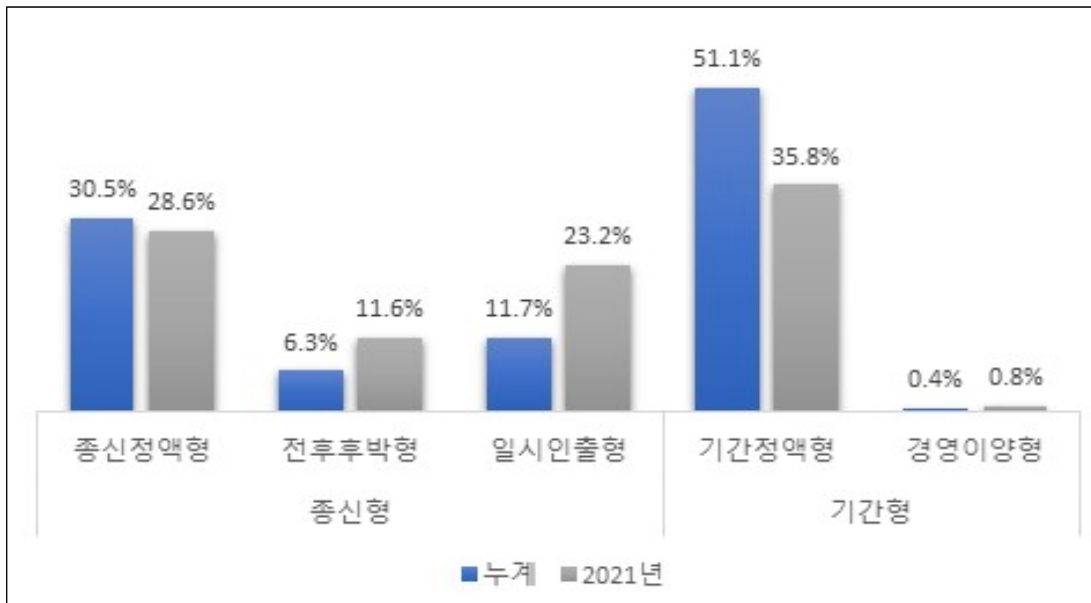
구분		2011~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입인원		3,782	1,222	1,518	1,749	1,963	2,312	2,223	1,909
(누적인원)		3,782	5,004	6,522	8,271	10,234	12,546	14,769	16,678
총 지급액 (백만원)		74,223	40,241	52,166	67,305	100,297	153,796	176,722	184,814
일시인출금 (백만원)		-	-	-	755	17,734	48,320	45,014	38,321
신규	월 평균 지 급액(천원)	913	1,028	1,037	1,032	1,107	1,250	1,264	1,223
	담보농지 평균 가격 (백만원)	154	198	191	192	230	261	272	274
	담보농지 평 균 면적(㎡)	4,426	4,170	4,286	4,375	4,361	4,430	4,262	4,2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https://www.mafra.go.kr/mafra/1333/subview.do>, 검색일: 2022. 3. 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유형별 실적) 2011~2021년 누적 가입건 수는 기간형(9,875건)이 종신행(9,303)에 비해 더 많음. 2021년 신규 가입의 경우, 종신행(63.4%)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함(기간형 36.6%).

- 하위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신규 가입은 기간정액형(35.8%)이었으며, 종신정액형(28.6%), 일시인출형(23.2%) 등의 순이었음. 이와 비교해 경영이양형은 가입률이 1% 미만으로 매우 저조함.

〈그림 2-7〉 농지연금제도 유형별 가입 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https://www.mafra.go.kr/mafra/1333/subview.do>, 검색일: 2022. 3. 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1.3. 성과 및 한계

가) 성과

-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고 농업소득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함.
 - 농촌주택은 담보가치가 낮아 주택연금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대상으로 연금상품을 제공함.
 - 시행 기간의 일천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함.

나) 한계

○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하고, 중도 해지율이 높음.

- 2011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고 중도 해지율(28% 수준)도 높은 편임. 특히 종신행(46.7%)과 경영이양형 상품의 실적이 저조하고 농지은행 등 농지정책과의 연계상품도 부족함(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3.).

○ 상속 동기가 농지연금 확산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함.

- 고령농업인들은 노화로 영농이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농지를 토대로 노후생활자금을 활용하는 것에 회의적이 경향이 있음. 과거부터 땅과 토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온 것은 물론 뿌리 깊은 상속 동기가 있기 때문임(정영숙, 조덕호, 2016, p.146). 이는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상속을 기대하는 자녀의 욕심과 맞물려 농지연금 가입을 저해함(최경환, 2012, p.48).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기에 수급액이 충분치 않고, 고령농업인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지연금을 수급하는 집단 중 과반수가 수급액에 불만족하며, 수급액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정기선, 이춘원, 2017, p.318).
- 농지연금의 연금액은 농지 면적 및 가액이 비례하여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농지자산 규모가 큰 농가에 유리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어 고령농업인 간 노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어려움(임소영 외, 2019, pp.99-100).

○ 농지의 소유권에서 기인한 성별 격차가 나타남.

- 현재 주로 농지의 소유권을 갖는 남성이 연금에 가입하여 수급하고, 배우자는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됨. 여성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부일 경우 연금 수급자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정기선, 이춘원, 2017, p.318).

2.2. 경영이양직접지불제

2.2.1. 제도 개요⁶⁾

○ (목적)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이하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를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고령농업인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은퇴를 유도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됨.

- 영농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 중 생계를 위한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영이양직불제는 구조개선형 농업정책인 동시에 사회보장정책임.

○ (법적 근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가입 조건)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⁷⁾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단,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⁶⁾ 농림축산식품부(2022b). 2022년 농식품 사업안내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 2020. 5. 1.)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⁷⁾ 즉,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도 인정됨).

- 매도 또는 임대(위탁) 대상⁸⁾에는 한국농어촌공사,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을 포함함.

○ (사업 대상) 2020년까지 경영이양직불을 신청하여 약정한⁹⁾ 농업인에 한하여 분할지급금을 지급하며, 2022년 현재 신규대상자를 별도로 모집할 계획은 없음.

- (약정 해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을 환수함. 단, 농업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과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 이율을 가산하여 환수함.
- 약정기간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과 영농은퇴 기간(약정자가 8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포함함.

○ (대상 농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밭·과수원

○ (보조금 지급 요건)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⁸⁾ 단, 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함.

⁹⁾ 약정에는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표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경영이양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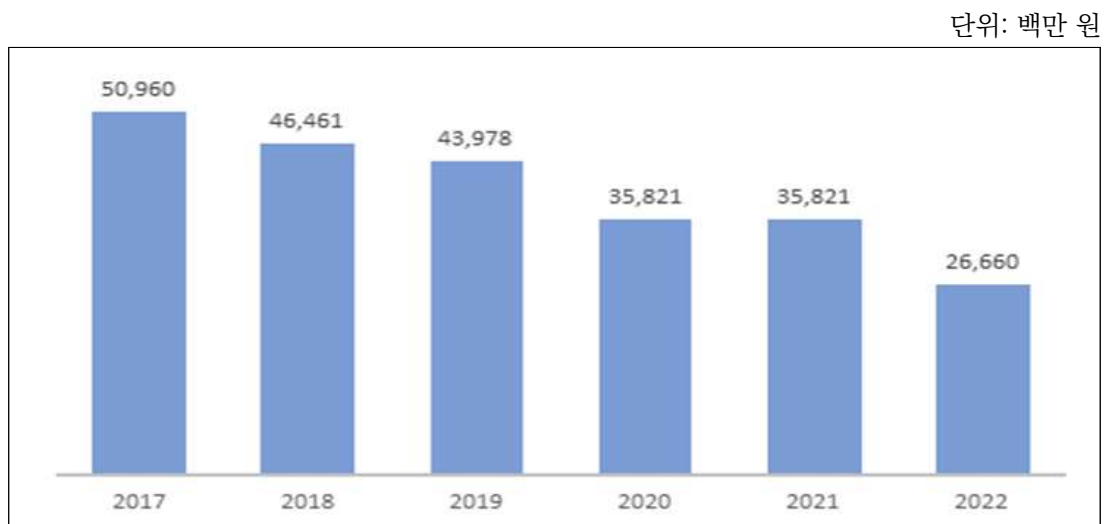
없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을 이양하여야 함.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3,000㎡ 이하의 농지. 또는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는 경영이양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 산정) 경영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에 경영이양 면적과 농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함(즉, 지급액=경영이양 면적(㎡)×지급 단가(원)×지급기간(년)).

- 경영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경영이양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 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정함.
- 최대 4ha까지 지원(매도 330만원/ha/년, 임대 250만원/ha/년)

〈그림 2-8〉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예산 추이(2017~2022년)



주: 2020년 이후 신규대상자는 모집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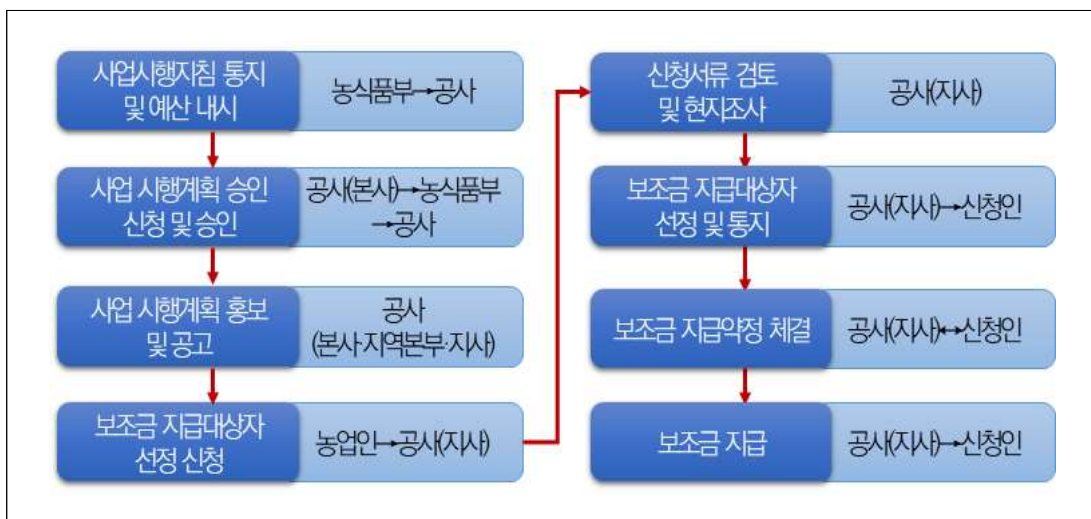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재원) 국고 100%로 운영됨.

- 예산은 꾸준한 감소추세이며, 2022년 현재 266억 6,000만 원 수준임(전 년도의 약 74.4% 수준).

○ (추진체계) 경영이양직불제의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방식임.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을 확정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홍보에서부터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보조금 지급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함.

〈그림 2-9〉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추진체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1).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2. 운영 현황¹⁰⁾

○ (연도별 실적) 연도별 신규 가입 인원과 토지 면적 모두 대체로 감소함.

- 매도형보다 임대형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짐. 임대에서 매도로 유도하기 위

¹⁰⁾ 임소영 외(2019).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하여 2018년부터 매도형과 임대형의 지급단가를 차등화해 매도형의 단가는 높이고 임대형의 단가를 낮추었으나, 매도형 단가의 인상폭이 작아 유인책이 되지 못하였고 애초에 수요가 높았던 임대형에 대한 수요마저 하락시킴(임소영 외, 2019, p.68).

〈그림 2-10〉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연도별 신규 가입현황(2016~2020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2)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6〉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연도별 가입현황(2016~2020년)

단위: 명, ha,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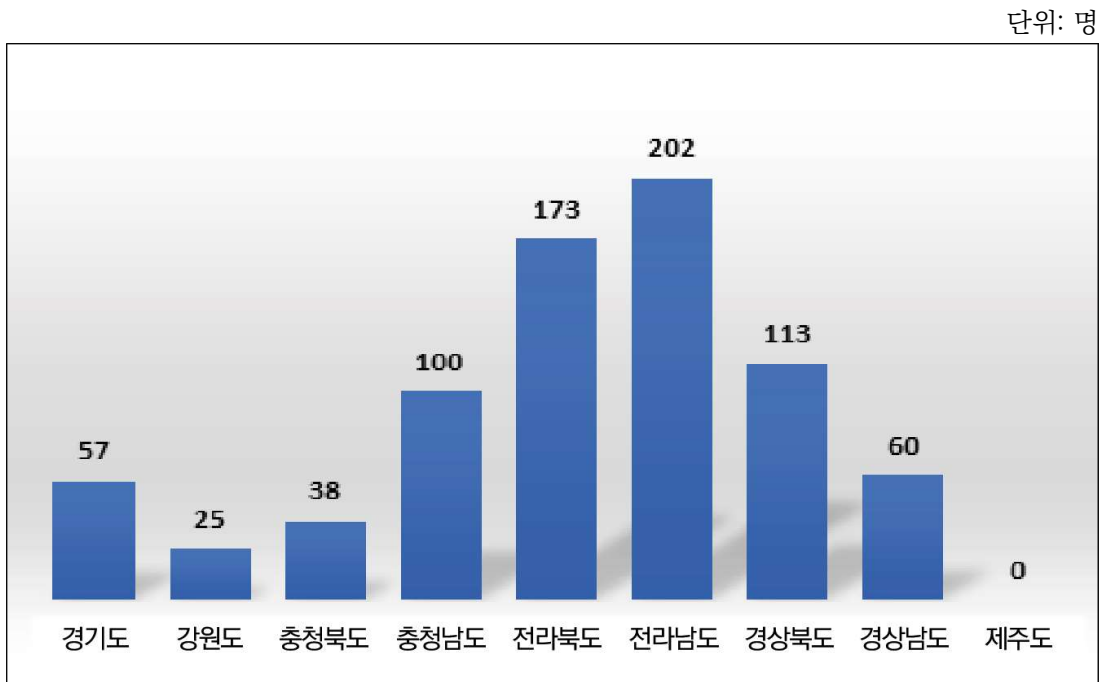
연도	구분	인원(명)	면적(ha)	금액(백만 원)
2016년	신규매도	188	140	221
	신규임대	1,022	1,110	2,259
2017년	신규매도	232	190	266
	신규임대	1,004	1,174	1,892
2018년	신규매도	242	170	199
	신규임대	671	751	934
2019년	신규매도	286	186	231
	신규임대	530	593	644
2020년	신규매도	326	208	231
	신규임대	442	580	692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2)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지역별 실적) 지역별 가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동 제도는 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함.

- 2020년 기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가입자 수는 각각 202명(26.3%), 173명(22.5%)으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113명, 14.7%), 충청남도(100명, 13.0%), 등의 순이었음. 이 같은 경향은 가입 토지면적과 지급액에서 역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단, 가입 토지 면적은 전라북도(247ha)가 전라남도(235ha)보다 더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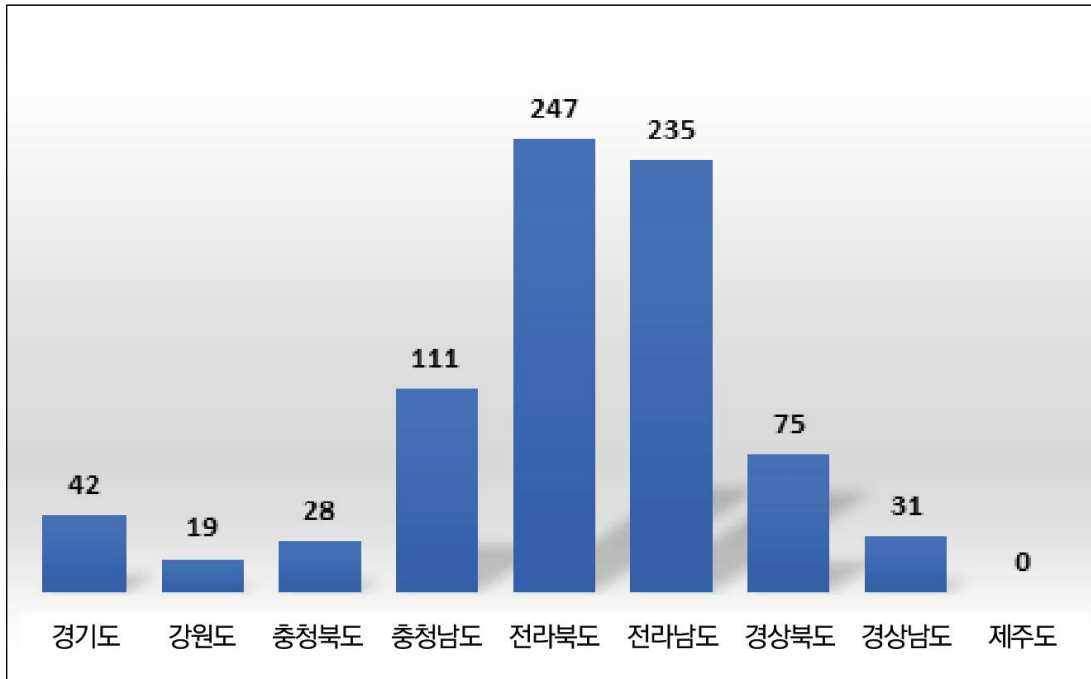
〈그림 2-11〉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지역별 가입자 현황(2020년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2)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2〉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지역별 가입 토지면적(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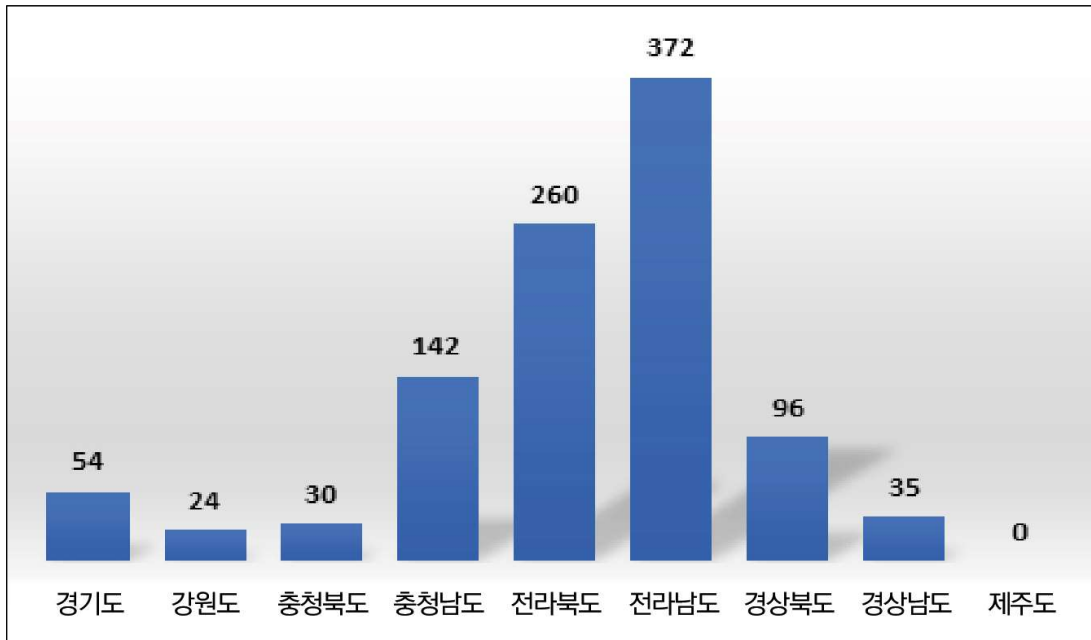
단위: ha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임소영 외(재인용). (2019). p.6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지역별 지급액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임소영 외(재인용). (2019). p.6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연령별 실적)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신규이양 연령별 실적을 살펴본 결과, 매도와 임대 모두 법정 노인 연령이 시작되는 65세(매도 57명, 임대 147명)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신규이양이 많은 연령은 매도와 임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65세를 제외하고 임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은 66세(66명), 58세(50명), 69세(49명) 등의 순이었으며, 매도의 경우 68세(47명), 66세(41명), 73세(31명) 등으로 나타남.
- 비교적 젊은 가입자 사이에서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한 신규이양이 더 빈번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표 2-7〉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신규이양 연령별 실적(2020년 기준)

단위: 명, ha, 백만 원

구분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71세	72세	73세	74세
계	인원	204	107	77	97	71	70	64	59	53	31
	면적	242	118	65	73	64	54	58	54	40	20
	금액	319	177	67	76	78	75	76	65	46	34
매도	인원	57	41	29	47	22	23	30	28	31	18
	면적	49	26	17	30	11	13	21	12	21	8
	금액	71	49	24	41	15	28	36	14	29	14
임대	인원	147	66	48	50	49	47	34	31	22	13
	면적	193	92	48	43	53	41	37	42	19	12
	금액	248	128	43	35	63	47	40	51	17	2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2)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지목별 현황) 경영이양직불제 지목별로 살펴보면, 매도와 임대 모두에서 논의 면적 비율이 각각 90%, 91.7%로 압도적임. 이는 영농경력 10년 이상이라는 가입요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임소영 외, 2019, p.69).

〈표 2-8〉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지목별 현황(2018년 신규 기준)

단위: 명, ha, 백만 원

구분	매도			임대		
	인원(명)	면적(ha)	금액(백만 원)	인원(명)	면적(ha)	금액(백만 원)
논	216	141	174	637	688	858
밭	12	12	7	108	51	60
과수원	20	18	18	15	11	16
합계	248	170	199	760	750	934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임소영 외(재인용). 2019. p.70. 일부 발췌.

2.2.3. 성과 및 한계

가) 성과

○ 경영이양직불제는 구조개선, 은퇴농가의 소득 보전, 농지이용 효율화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됨.

- 순수 경영이양 효과로 농가 기준 2.0~6.8%의 감소 효과(65~74세 농가 수 대비)가 나타났으며, 직불금 수령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 받는 농가 수 역시 증가함(매도이양 9.2%p, 임대이양 8.2%p)(김태훈, 박지연, 2018, p.49).
- 또한 전업농의 농지 규모화를 촉진하여 생산비를 6.1% 절감(22,587원/10a)하고, 생산성이 높은 젊은층으로의 농지양도를 촉진하여 단위면적당 부가가치를 상승시킴(김태훈, 박지연, 2018, p.49).

나) 한계

○ 경영이양직불제의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문제는 보조금 단가가 낮아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에 대한 동기부여나 인센티브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임(김정호 외, 2007, p.87).

- 쌀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금 수혜농가와 비수혜농가의 농가소득을 비교한 결과, 경영이양직불금을 수혜하지 않고 농업활동을 하는 농가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류재현, 안병일, 2017; 이소영, 김진진(재인용). 2020. p.29).
- 은퇴 이후의 안전장치가 미흡함에도 영구적인 은퇴를 전제하므로, 이후 생계보장이 막연한 상황임.

○ 낮은 직불단가로 인해 사업 신청자가 많지 않았으며 특히 최근에는 신청자가 감소하였음.

- 신규 신청인원은 2017년 1,174명에서 2020년 769명으로 감소함.
- 동 기간 연평균 신청인원은 889명인데, 신청가능 연령대에서 경지를 소유한 경영주의 0.27% 수준에 불과함.

○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촌의 인력을 인위적으로 정리함에 따라 사회적 손실이 야기되는 역기능의 우려도 존재함(강마야, 여민수, 2013, p.30).

2.3.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2.3.1. 사업 개요¹¹⁾

- (목적)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함.
- 1995년 도입 당시 2004년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¹¹⁾ 농림축산식품부(2022a). 2022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 (법적 근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 농업인이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¹²⁾ 규정에 해당하는 자임.
- 기존에는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하였음. 그러나 고소득·고액 자산가도 지원 혜택을 받음에 따라,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천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표 2-9〉 농업인 연금보험료의 농업인 요건

구분	대 상 자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임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주: 상기 항목 1개라도 해당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2022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에서 일부 수정.

¹²⁾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임.

〈표 2-10〉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연 6,000만 원) 이상인 사람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0억 원) 이상인 사람

자료: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지원 내용)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월 4만 5천 원(기준소득액 월 100만 원)을 지원함.¹³⁾
-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함.

〈표 2-11〉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및 최대 지원금액 추이(2017~2021년)

단위: 만 원,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소득금액(만 원)	91	91	97	97	100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원)	40,950	40,950	43,650	43,650	45,000

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소득금액을 꾸준히 상향 조정해왔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 1.). “농업인, '21년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 더 받는다”에서 발췌 및 수정.

○ (재원) 국비 10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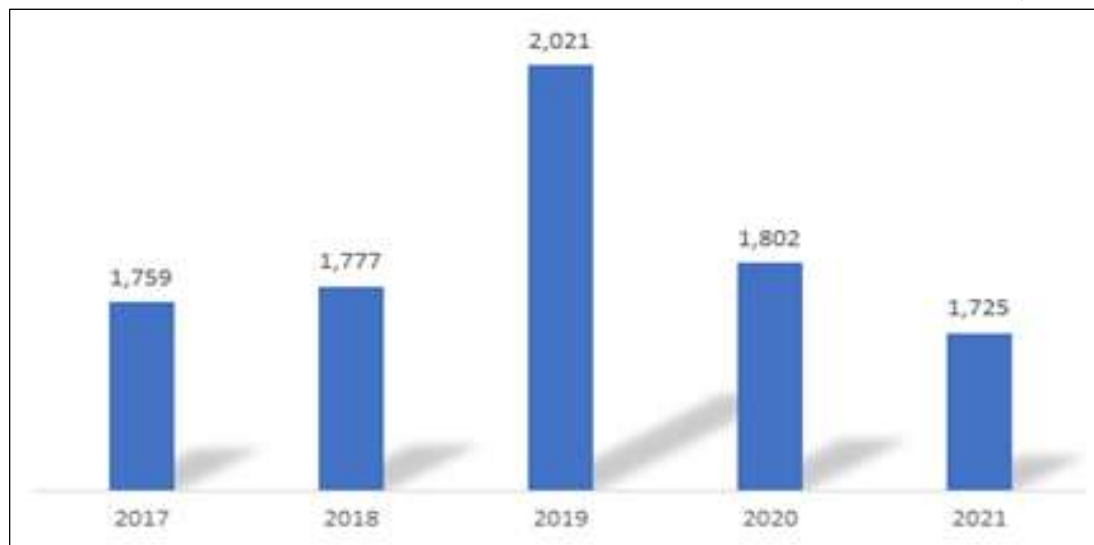
- 예산 규모는 2019년 2,02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0년에 어업인 연금보험료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등 점차 감소하여 2021년 기준 1,725억 원 수준임.

¹³⁾ 즉, 신고한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월 연금보험료인 9만 원(소득월액의 9%)의 절반인 4만 5천 원을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4만 5천 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음.

- 농림축산식품부¹⁴⁾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을 배정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농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 공제 및 고지, 사업비 정산결과 포함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등을 수행함.

〈그림 2-14〉 농업인 연금보험료 예산 추이(2017~2021년)

단위: 억 원



주: 2020년부터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2020년 64억 8,000만 원, 13,053명, 약 3.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 1.). “농업인, ’21년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 더 받는다”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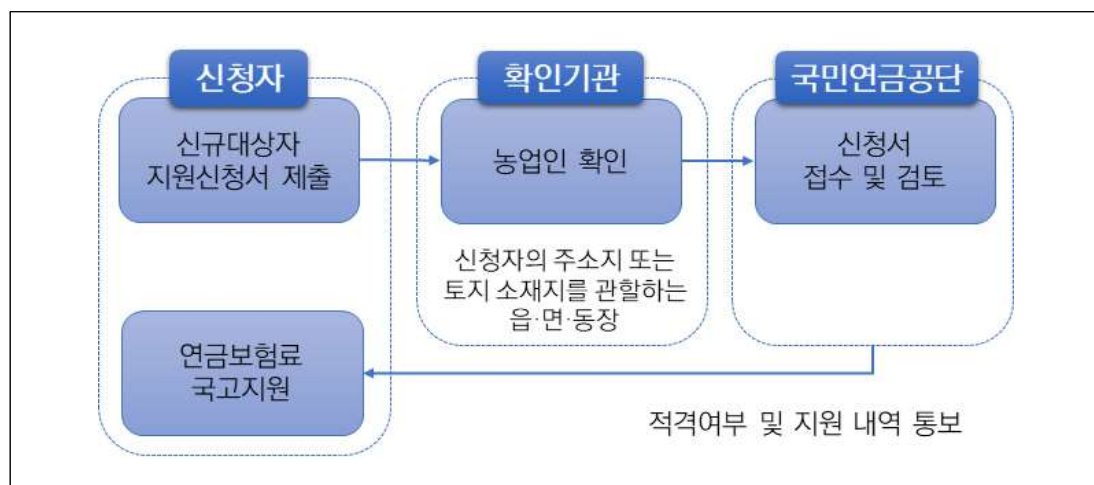
○ (추진체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신청자(농업인)의 지원신청과 확인기관(읍·면·동장)의 농업인 확인, 국민연금공단(지사)의 검토 및 적격 여부 판단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추진됨.

- (농업인 확인) 신청서 확인 요청 시 농업 종사 및 농업 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공적 자료(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

¹⁴⁾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됨.

- (적격 여부 통지 및 연금보험료 지원) 적격 여부 통지 시 부적격자는 사유를 명시하고,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 시점부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신청 직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자격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함.
-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및 부적격 대상자 제외를 위해 연 2회(4~6월, 10~12월) 지원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함.
- (이행점검)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월 1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¹⁵⁾을 실시하여 부당집행 사전 방지를 위해 노력함.

〈그림 2-15〉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추진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a). 2022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5) 자체 조사계획 수립 여부, 현지 확인 조사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을 포함함.

〈표 2-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일제조사 추진체계

구분		대 상 자
농림축산식품부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 확인)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국민연금공단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를 대조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한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사업 홍보 및 결과 보고
지자체	시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본부)에 통보
	시·군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읍·면·동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a). 2022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에서 일부 수정.

2.3.2. 운영 현황¹⁶⁾

○ (가입 및 수급 현황)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¹⁷⁾ 결과, 국민연금가입 비율은 71.8%이며, 국민연금 수급자는 30.6%로 조사됨.

- 이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읍·면부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 비율 17.9%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임(동부 22.2%)(이윤경 외, 2020, p.382).

○ (보험료 지원 현황) 월평균 지원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원 월액은 늘어남.

- (지원 인원) 2021년 기준 농업인 연금보험료 월 평균 지원인원은 33만 7,000명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음(단, 2020년에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
- ’20년 11월 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0,499명, 장애연금 3,637명, 유족연금 179,020명

¹⁶⁾ 현황 파악을 위한 가용 자료가 상이함에 따라, 각 자료의 최근 시점에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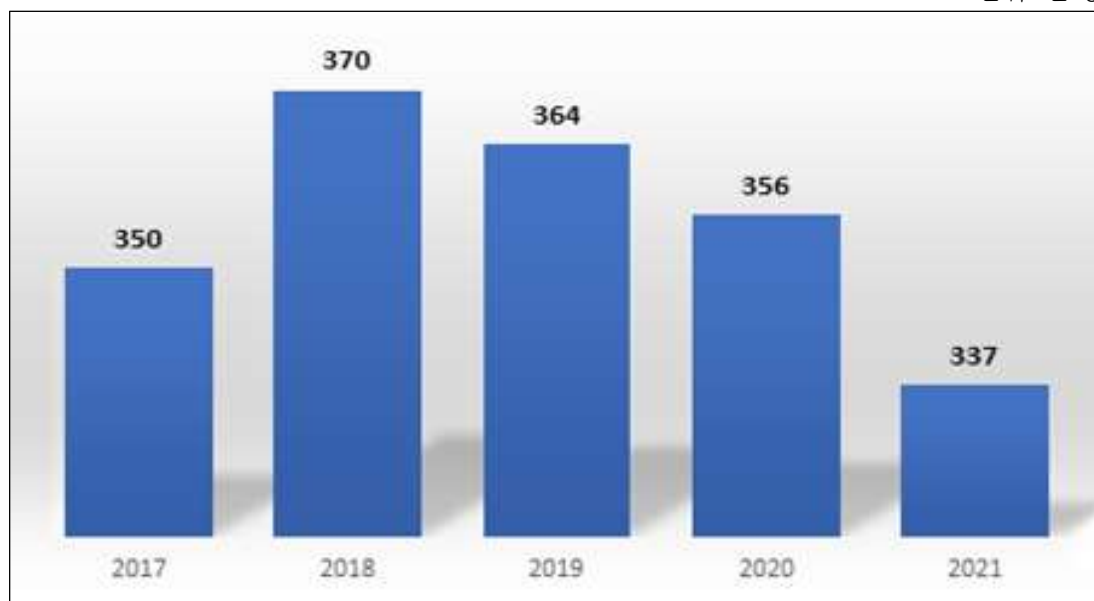
¹⁷⁾ 농촌진흥청 웹사이트(<https://www.rda.go.kr/>). 검색일: 2022. 4. 11.

으로 총 753,156명에 달함(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 1.).

- (지원 월액) 반면에 1인당 평균 지원 월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음.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던 2019년 기준 평균 지원 월액은 41,518원이었음. 이는 당시 기준소득금액이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이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됨.

〈그림 2-16〉 농업인 연금보험료 월평균 지원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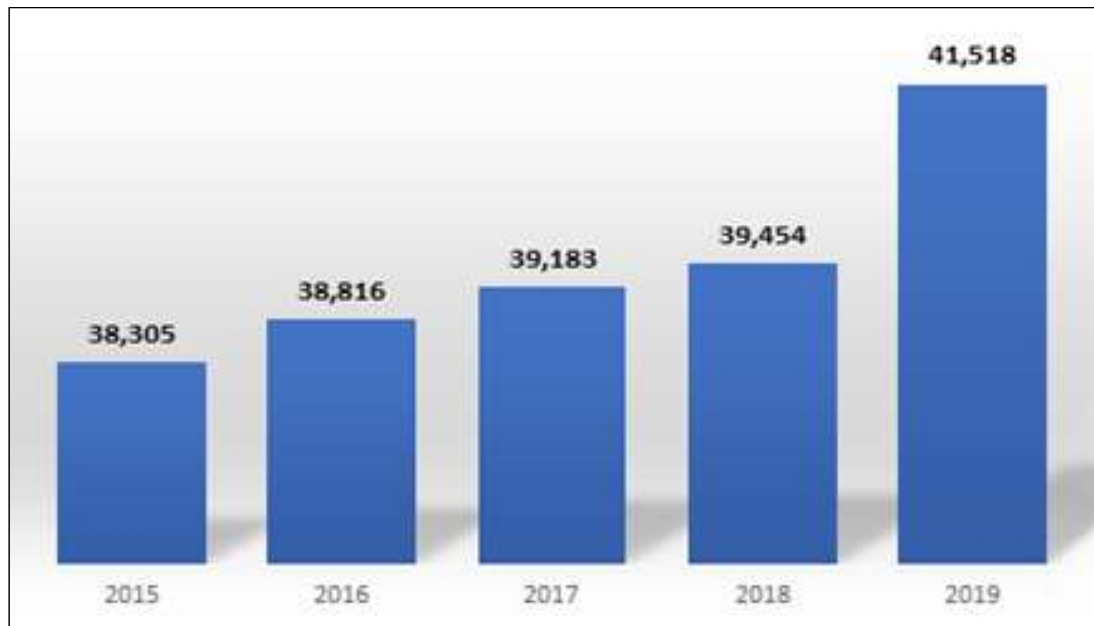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2020년부터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2020년 64억 8,000만 원, 13,053명, 약 3.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 1.). “농업인, ’21년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 더 받는다”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7〉 농업인 연금보험료 1인당 평균 지원월액 추이(2015~2019년)

단위: 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6. 10.).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3.3. 성과 및 한계

가) 성과

○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전에 기여) 국민연금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국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고령자가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농업인 역시 영농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동 제도에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상당함.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20, p.241)의 ‘2019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 결과, 노후준비를 하는 농어촌 응답자(67.5%) 가운데 약 절반(53.7%)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준비 수단이라 응답함. 이는 2007년의 39.7%(노후준비자 65.6%)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 (농업인의 사회보장제도 유입 촉진)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농업인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함.

- 2021년 농어업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서 공적연금 납부액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은 51.1%인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3%에 그침.
-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미가입과 연금보험료 체납 이유 모두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음(박대식 외, 2011, p.73).

○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저소득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소득액의 점진적 인상, 지원대상 제외 기준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함.

- 2021년 기준소득월액 인상(100만 원)으로 인해 전체 농업인 가입자 중 기존 기준소득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74.9%가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 1.).
- 동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게 고소득·재산을 가진 농업인의 보험료 지원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원 대상 제외 기준을 마련함.

나) 한계

○ (저조한 가입률) 아직까지도 농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적지 않음.

- 2019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의 규모는 약 3.8% 수준에 그침.

○ (낮은 보험료 지원 수준) 최근 기준소득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전체 농가 중 실제 보험료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임소영 외, 2019, p.101).

- 따라서 월소득이 100만 원을 상회하는 나머지 80%의 농업인은 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대 4만 5천 원의 정액을 지원받게 됨. 이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 수준(2019년 기준 정액 구간 지원금액은 95,660원임)과 비교하여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서의 한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대다수가 낮은 소득등급에 분포되어 있음. 낮은 소득등급에 가입하면 당장은 연금 보험료 부담이 적지만, 그만큼 장차 수령 할 수 있는 연금액 규모가 작아지므로 노후소득 대책으로서의 미흡할 것으로 우려됨(최경환, 2012, p.45).

- 2021년 12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전체 수급자의 평균 월액은 약 55만 6천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인 기준선(약 54만 8천 원) 수준이며 40만 원 미만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자의 비율이 56.8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국민연금공단, 2022), 농업인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상됨.

3. 소결

○ 은퇴 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는 도시 근로자와 달리 농업인은 근로기간 동안 자신의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국민연금과 농지 등 자산 축적에 한정되어 있음.

- 농지는 농업인의 생산수단이자 노후 생계를 위한 자산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정부는 농업인의 노후소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지를 기반으로 노후소득을 안정시키도록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을 운영하고 있음.
- 노후 생계비 조달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농지를 기반으로 한 소득안정제도, 기초연금 등의 공적부조가 농업인의 주요한 노후소득원이 됨.
-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수준의 생활비 조달은 쉽지 않음.
 - 국민 1인당 평균 연금액 578,892원(2022년 6월 기준)과 기초연금액 307,500원을 합치더라도 고령농업인의 필요소득에 미치지 못함.¹⁸⁾¹⁹⁾
 - 실제로 공적보조금은 70세 이상 농가의 전체 소득에서 40.5%를 차지하는데(통계청, 2022) 이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고령농업인의 영농활동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음.
 - 65세 이상 농업 경영주와 65세 미만 경영주의 농업의존도는 각각 27.27%와 27.06%로 거의 차이가 없음(통계청, 2022).

18) 국민연금공단(2022). 국민연금 공표통계(2022년 6월 말 기준). p.23

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2&cciNo=1&cnpClsNo=2>). 검색일: 2022. 7. 2.

- 65세 이상 농업인 161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 의사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 사망 시까지 현 규모로 농사를 짓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영이양 의사가 없는 농업인 중 40.1%는 영농으로 생계비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임소영 외, 2019, p.32).

○ 따라서 기존의 노후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노후 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영농은퇴를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지와 연계된 노후소득안정제도는 고령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며, 농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노후 소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음.

- 사후적 지원은 정부의 예산 제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타 연령대나 타 산업 종사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경영이양직불이나 농지연금은 농지를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농지가 가진 정서적 중요도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때 농업인이 쉽게 포기하기 어려움.
- 이는 기존 농지 연계 은퇴 프로그램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임.

○ 농지를 기반으로 한 소득안정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금 방식의 노후소득안정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이 노동 가능 연령대에 은퇴 계획을 미리 세우고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제3장

농업인 연금제도의 해외 사례



3

농업인 연금제도의 해외 사례

1. 프랑스 농업인 연금제도²⁰⁾

1.1. 프랑스 사회보장체제 내 농업인 연금의 위치와 배경

○ 프랑스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²¹⁾는 1945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나, 19세기 말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프랑스 연금제도의 최초 근거법 역시 1910년에 만들어졌음.

- 당시 상공업 및 농업분야의 피용자를 위해 육체노동자, 농민퇴직연금제도(임의가입 방식)를 법제화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한 채, 1928년에 이르러 농업부문 피용자를 위한 특별제도인 농민사회보험체제(Regime aricole)²²⁾

20) 이 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손동기 교수에게 위탁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21) 프랑스에서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는 사회보장, 실업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노대명 외, 2018, p.17).

22) 농민사회보험체제는 1928년 최초 실시되었으며 1930년에 개정됨. 농민사회보험체제에는 질병, 분만, 장애, 노령 및 사망 등 여러 분야의 사회보험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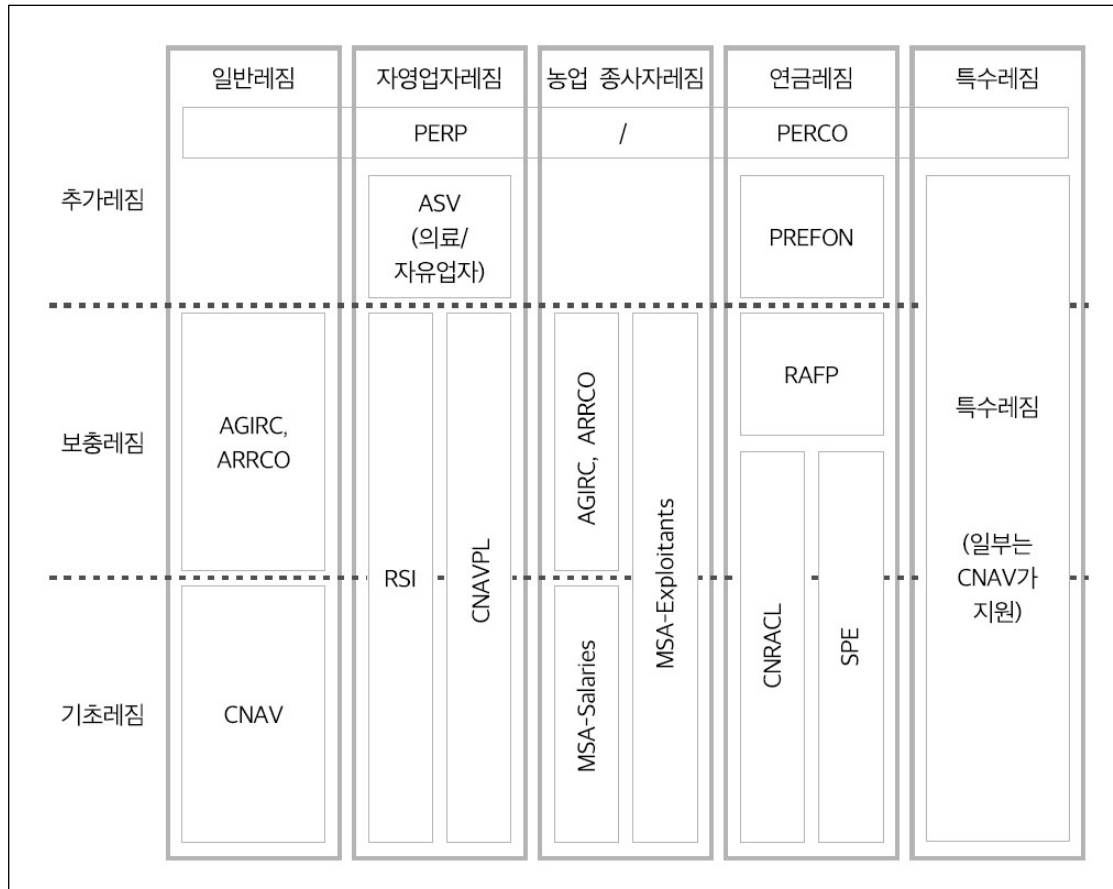
를 마련하고, 1930년에 일정 소득 미만 상공업 피용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함.

○ 프랑스 사회보험체제는 수평적으로 업종·직종·직업에 따라 일반, 특별, 농업, 자영업자 체제 등으로 구성되며, 수직적으로 이들 제도 안에 기초, 보충 추가 제도 등이 부가되는 모자이크식 구조임(주프랑스대사관, 2017, p.3).

- 프랑스는 노·사간 협의를 중시하는 자율적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문화를 갖고 있음. 즉 직업연대(solidarité professionnelle)에 기초해 사회보험체제가 직업 및 직종에 따라 분화되어 운영됨.
- 이 같은 직종별 특별체제를 일반체제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특별체제가 일반체제에 비해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기에 실현되지 못함. 따라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존 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문의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제도 간 기여 수준, 급여 수준 등의 격차로 이어짐.
- 사회보험체제의 재원은 전적으로 이해당사자의 보험료였으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²³⁾ 1991년부터 일반사회보장부담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해소하려는 조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율도 점차 인상됨.

23)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성장이 감소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해 사회보장기금이 적자로 돌아섬. 프랑스 사회보험의 재원은 노동자의 기여금이 주요하므로 임금과 고용률이 그 재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그림 3-1〉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기본구조



자료: 노대명 외(2018, p.212).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표 3-1〉 프랑스 사회보험체제 종류

구분	내용
일반체제(Regime general)	프랑스 인구의 80% 정도가 가입되어 있음. 가입 대상은 일반 임금 근로자이며 다른 제도의 기본모형이 됨.
특별체제(Regime special)	공무원, 철도, 전기, 가스, 선원, 광부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종사자를 위한 제도로써 직종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됨.
농민체제(Regime agricole)	농업종사자를 위한 제도이며, 임금농민과 자영농민(경영자)을 구분하고 있음.
자영업자체제(Regime non salaries non agricoles)	농업을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이며 일반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등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종을 대상으로 함.

주: 상기 기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보충, 추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함.

자료: 주프랑스대사관(2017, p.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프랑스의 연금체제 역시 상기한 사회보험체제의 구조를 따름.

- (1층) 의무가입이 원칙인 기초체제(regime de base)로, 일반, 특별, 농민, 자영자를 위한 체제들을 포함함.
- (2층) 의무가입이 원칙으로 기초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사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보충체제(regime complementaire)임. ‘보충퇴직연금체제’라고도 지칭하며,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에게 당연 적용됨. 관리직 대상의 AGIRC와 비관리직 대상 ARRCO로 구분됨.
- (3층) 개인별 임의가입을 통한 추가체제(regime supplementaire)로 적립식 분배체제를 가짐.

〈그림 3-2〉 프랑스 연금체제 기본 구조



주 1) 특별연금체제는 사회보장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사회보장체제로, 일반노동자 보장시스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연금체제로의 편입을 거부함.

2) 자영자는 소매상인, 기능공, 자유직종을 포함.

자료: 저자 작성.

○ 프랑스의 연금체제는 현재의 생산인구가 연금수급자의 연금재정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임.

-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노동인구가 감소하거나 퇴직자가 받는 혜택(보장)이 많으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봉착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74년 체제별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특별체제의 재정적자를 일반체제의 재정으로 보완하도록 함(주프랑스대사관, 2006, p.10).
- 이후 2010년에는 연금보험 관련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 정년(부분 퇴직연금 수령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늘리고, 퇴직연금 완전액 수령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였음. 또한 공무원과 일반 임금노동자와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공무원의 보험료를 7.85%에서 10.55%로 점진적으로 인상함.

○ 농민연금체제는 기존 공제조합제도를 사회보험형태로 개선한 제도로, 농민연금체제의 주요 변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00년에 자영농민을 위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의 존재가 인정되었고 농민공제보험(Assurances Mutuelles Agricoles: AMA)이 설립됨.
- 1910년 제정된 프랑스의 최초 사회보험인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퇴직연금(Retraites Ouvrières et Paysannes: ROP)’은 연간 3,000프랑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약 1,200만 명의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의무퇴직연금 시스템이었음.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고, 1912년에 수급 가능 연령이 60세로 하향되었음. 하지만 ROP는 농촌의 임시적인 노동형태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²⁴⁾

- 1928년에 농민사회보험체제가 도입되었고, 1930년에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농업인 피용자와 사용자가 의무가입대상이 되어 질병, 분만, 사망 및 노령사고를 보장받게 되었음.
- 1940년에 농민공제조합(Mutualité Sociales Agricole: MSA)이 농업부의 감독을 받는 직업 단체로 공인되어, 농민의 모든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게 되었음.
- 1946년에 기존 사회보험체제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노대명 외, 2018, p.34)개혁이 이루어졌으나 농업계는 그들의 특수성(불규칙한 수입, 임시직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하는 것(즉, 일반 체제로의 통합)을 거부하고 MSA에서 관리하는 것을 유지함.²⁵⁾
- 1952년 MSA에서 자영농민을 위한 의무노령보험(régime obligatoire d'assurance vieillesse)을 법률로 제정하고(김은경, 2013, p.11), 1961년에 '자영농민 제도(exploitants agricoles)',²⁶⁾ 1972년에 '임금농민 제도(salaires agricoles)'²⁷⁾를 차례로 도입함.
- 프랑스 농업 종사자 레짐(Régime des exploitants agricoles)은 1961년 '자영농민 레짐(le régime des non-salaires agricoles)'과 1972년에 도입된 '임금농민 레짐(le régime des salaires agricoles)'으로 구성됨.

24) 또한 1920년대에 예상된 참가자 1,200만 명과는 거리가 먼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하였는데, 가입자가 급감을 한 이유는 법원으로부터 '강제가입과 보험료의 의무납부 방식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고, 의무가입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서 발생함. 이로 인해 ROP는 실패한 제도가 되었음(미시간 전자도서관 웹사이트(<https://quod.lib.umich.edu/>, 검색일: 2022. 5. 2.)).

25) 프랑스 공공 라디오 웹사이트(<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2022. 4. 20.)

26) 자영농민이 보험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질병, 모성, 장애보험의 의무적인 자율적 제도가 제정되었음(김은경, 2013, p.12).

27) 산재에 대한 농업근로자의 의무적 보호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음(김은경, 2013, p.13)

1.2. 농민연금 운영 현황

□ 농민연금 구조

- 농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의무보충연금(Régime complémentaire obligatoire)으로 구성됨.
- 기초연금은 정액연금(pension forfaitaire)인 개인노령보험(AVI)과 비례연금(pension proportionnelle aux revenus)인 농민노령보험(AVA)으로 구분됨.²⁸⁾

〈표 3-2〉 프랑스 농민연금 유형

총위/지급방식	대상	
	자영농민	임금농민
기초연금	개인노령보험(AVI)	일반 임금노동자에 준함
	농민노령보험(AVA)	
의무보충연금	의무보충연금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의무보충연금(retraite complémentaire obligatoire: RCO)은 농민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사항임.²⁹⁾
 - 의무보충연금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 자영농민에게 최저임금의 75%를 보장하도록 2017년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21년 11월에는 Chassaigne 법에 의해 85%로 인상되었음.³⁰⁾

28) 프랑스 농업 상호보험회사 웹사이트(<https://manouvellevie.groupama.fr/>). 검색일: 2022. 4. 4.

29)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 가능한 추가연금(régime supplémentaire)의 3층 연금과 차이가 있음.

30) 프랑스 은퇴에 대한 정보 제공 민간 웹사이트(<https://www.la-retraite-en-clair.fr/>). 검색일: 2022. 6. 5.

□ 가입 대상

- 프랑스 농민연금의 대상은 농장주, 농업 관련 기업의 사용자 및 가족 종사자, 조합의 구성원, 그리고 농산업 분야에 고용된 피용자, 농업 관련 조직 노동자 등을 포함함.

〈표 3-3〉 프랑스 농민연금 적용 대상

자영농민	임금농민
· 농장주나 농업관련 기업의 사용자로 그 토지가 최소 규모일 것 · 위의 가족 종사자와 경영자 조합의 구성원(가족 구성원이 해당 활동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며 비피용자로서 종사할 것) ·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의 비피용자 회원	· 농업경영(일반농업, 포도재배업, 원예업 등), 재배업(양봉, 누에, 종마사육, 양어, 굴양식 등), 산림업(임업, 목재업 등) 분야에 고용된 자 · 농업관련 수공업(대장간, 수레제작소, 마구제도, 통 또는 털각이 제도) 분야의 2인 미만 근로자 · 농업관련조직(협동조합, 신용금고, 공제금고 등)의 근로자 · 정원사, 사냥경비원, 산림경비원으로 그 고용주가 농업활동을 하지 않은 자 · 자신 또는 가족과 함께 소작에 종사하는 자로 가족 수나 경작면적이 상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자

주: 농업은 성격상 농업활동(토지경작, 가축사육, 산림개발)과 법에 의한 농업활동(농업관련 가내공업 등 농업관련 활동,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관련 직업활동, 주조업 등 농업연장활동)을 모두 포함함.

자료: 국민연금공단(2005, p.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연금 가입 및 수령 요건

- 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최소 경작규모(surface minimale d'assujettissement: SMA) 이상 경영, 연간 최소 농업활동(activité minimale d'assujettissement: AMA) 1,200시간 이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0배(2022년 기준 8,456유로)에 해당하는 농업소득 수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³¹⁾

³¹⁾ 최소 경작규모(surface minimale d'assujettissement: SMA)는 장관령으로 정해지며 작물의 종류와 해당 작업지역에 따라 수정 또는 조정됨. 지역(département)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Deux-Sèvres 지역은 20헥타르(hectares), la Vienne라는 지역 내에는 12.5헥타르와 17헥타르임. 지역에 따라 1 또는 3헥타르인 경우도 있음.

- 최저임금의 800배에 해당하는 소득보다 낮으면 연금 가입이 되지 않고 기초노령연금(일종의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에 해당)의 대상이 됨.

○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법정 퇴직연령과 일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을 충족해야 함.

- 법정 퇴직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며 법정 퇴직연령 이후 5년 뒤에 완전연금수령이 가능함.
- 납입기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163분기~172분기로 차등 적용됨.

〈표 3-4〉 법정 퇴직연령 및 완전연금 수령연령

출생연도	퇴직연령	완전연금 수령연령
1951년 7월 1일 이전	60년	65세
1951년 1월 7일부터	60년 4개월	65세 4개월
1952년 1월 1일부터	60년 9개월	65세 9개월
1953년 1월 1일부터	61세 2개월	66세 2개월
1954년 1월 1일부터	61세 7개월	66세 7개월
1955년 1월 1일부터	62세	67세

자료: 프랑스 사회보장 국제 및 유럽연합 연락 센터 웹사이트(<https://www.cleiss.fr/>). 검색일: 2022. 4. 2.

〈표 3-5〉 출생연도에 따른 완전퇴직 보험 기간

출생연도	완전퇴직 보험 기간
1951년	163분기
1952년	164분기
1953~1954년	165분기
1955~1956~1957년	166분기
1958~1959~1960년	167분기
1961~1962~1963년	168분기
1964~1965~1966년	169분기
1967~1968~1969년	170분기
1970~1971~1972년	171분기
1973년	172분기

자료: 프랑스 사회보장 국제 및 유럽연합 연락 센터 웹사이트(<https://www.cleiss.fr/>). 검색일: 2022. 4. 2.

○ 또한 농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이양을 수급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활동의 완전한 중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활동을 다시 시작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됨.

- 다만 2015년부터는 최소 의무면적의 2/5 이내로 생계농업을 하거나, 농민 연금을 보완하는 수준의 농업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 연금액 산정

○ 연금액 산식은 다음과 같음.

- (개인노령보험) 매년 고정되는 기초연금³²⁾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산식은 ‘매년 고정되는 기초연금액×(근로연수/출생연도에 따른 필요 보험기간)’임.³³⁾
- (농민노령보험) 비례기초연금은 농민 개인의 기여금 적립을 통해 쌓이는 포인트를 기반으로 하는 퇴직금임. 획득한 포인트 수에 포인트 가치(2021년 기준 4.024유로)를 곱한 다음, 계수 37.5/필요한 최소 납입기간(년)을 곱하여 계산함.

□ 연금 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은 개인의 연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사회보장 한도를 기준으로 한 소득 구간과 보험지급방식에 따라 요율이 달라짐.

- 개인노령보험은 소득 중 사회보장한도 미만분에 대하여 3.32%를 적용하며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지 않음.

³²⁾ 연 3,461.72유로 또는 월 288.47유로(2022년 1월 1일 기준).

³³⁾ 예를 들어, 1957년 6월생 A가 2019년 7월에 은퇴하길 원해 해당 날짜까지 110분기를 납부 한다고 해도, 1957년 세대에 적용되는 전액 납입기간이 166분기이므로 일시금 연금 전액을 수령 할 수는 없음. 대신에 ‘정액 연금 전액*(110/116)’과 같은 방식으로 월정액 연금 금액이 비례 배분됨.

- 농민노령보험은 소득 중 사회보장한도 미만분에 대하여 13.79%, 초과분에 대하여 2.24%를 적용함.
- 기초연금(개인노령보험과 농민노령보험)의 납입금은 연간 사회보장한도 (Plafond de la sécurité sociale: PSS)³⁴⁾의 절반으로 제한됨.
- 의무보충연금의 보험료는 소득의 4%이며 보험료를 포인트로 환산함. 가입자의 소득이 최소 연간 소득을 초과할 경우 추가 포인트를 받게 됨.

〈표 3-6〉 사회보장한도 미만/초과에 따른 기여율(2022년 기준)

구분	사회보장한도 미만 소득	사회보장한도 초과 소득
개인노령보험(AVI)	3.32%	0%
농민노령보험(AVA)	13.79%	2.24%

주: 사회보장한도란 특정 사회기여금 및 특정 면제, 특히 기여금 및 연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참조 금액. 이 상한액은 급여의 변화에 따라 매년 재평가 됨. 이 기준에 따라 기여금이 공제액이 결정됨.

자료: 프랑스 은퇴에 대한 정보 제공 민간 웹사이트(<https://www.la-retraite-en-clair.fr/>). 검색일: 2022. 6. 5.

□ 농민연금 운영 기관 및 재정

○ 농업 종사자 레짐에 포함된 의료보험, 가족수당 등과 함께 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MSA임.

- MSA는 지역마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이사회는 보험 가입자인 농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 MSA는 농업부(ministère en charge de l'agriculture), 경제재정부총부(ministè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보건부(ministère chargé de la santé)의 공동 감독하에 있음.

³⁴⁾ 사회보장에 필요한 보험료의 최대치를 정한 것으로, 매년 임금에 따라 재평가됨. 2022년 기준 PSS는 연간 41,136유로(월 3,428유로).

○ 임금농민의 의무보충연금은 AGIRC-ARRCO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연금은 MSA에서 관리함.

- AGIRC-ARRCO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임금노동자의 의무보충연금을 담당함.

〈표 3-7〉 MSA의 재정 수입(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자영농민 레짐	임금농민 레짐	합계	비율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	2,467.7	5,435.2	7,903.0	23.4%
사회보험료(Cotisation sociales)	583.7	1,368.8	1,952.6	5.8%
국가분담금(Cotisations prises en charges par l'Etat)	45.2	566.0	611.2	1.8%
사회보장목적세(Impôt et taxes affectés)	4,518.6	12.2	4,530.8	13.4%
일반레짐분담금(Contribution du Régime Général)	5,369.4	2,866.0	8,235.3	24.4%
다른 사회보장으로부터 이전(Autre transferts entre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et assimilées)	4,371.5	4,190.4	8,562.0	25.4%
기타(autres produits)	1,082.1	866.5	1,948.6	5.8%
합계	18,438.3	15,305.1	33,743.4	100.0%

자료: 프랑스 농민공제조합 통계 웹사이트(<https://statistiques.msa.fr/>). 검색일: 2022. 5. 2.

○ MSA의 2020년 총 수입은 337억 유로, 총 지출은 274억 유로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함.³⁵⁾

- 수입은 임금농민 레짐에서 153억 유로, 자영농민 레짐에서 184억 유로가 발생함.
- 주요 재원은 다른 사회보장으로부터의 이전, 일반레짐분담금, 일반사회보장부담금이며 사회보험료는 총수입의 5.8%에 불과함.

³⁵⁾ 프랑스 농민공제조합 통계 웹사이트(<https://statistiques.msa.fr/>). 검색일: 2022. 5. 2.

- 임금농민과 자영농민에게 각각 125억 유로, 149억 유로를 지급하여 총지출은 274억 유로이며 그 중 퇴직 관련 지출은 49.9%를 차지함.

〈표 3-8〉 농업 종사자 레짐 사회수당 항목별 지출(2020년)

단위: 백만 유로

항목	금액	비율
의료	11,943	43.6%
산재	679	2.5%
가족 및 주거	1,097	4.0%
퇴직 및 미망인(Retraite et veuvage)	12,948	47.2%
퇴직보충수당(Retraite complémentaire obligatoire)	727	2.7%
합계	27,395	100%

자료: 프랑스 농민공제조합 통계 웹사이트(<https://statistiques.msa.fr/>). 검색일: 2022. 5. 2.

○ 프랑스 정부는 농업예산을 통해 농업 부문의 사회보장 적자 문제를 해결해 오다가 최근에는 일반사회보장부담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을 이용하여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

- 프랑스는 농업부문의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 종사자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통한 재정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690년 ‘농업 사회적 혜택을 위한 추가 예산(Budget Annex des Prestations Sociales Agricoles: BAPSA)’을 창설해 운영해왔고, 2005년부터 농업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재정기금(Fonds de Financement des Prestations Sociales Agricoles: FFIPSA)’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음.
- FFIPSA는 공공행정기관으로서 자영농민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FFIPSA가 BAPSA를 대체하면서 퇴직연금의 적자를 CSG로 보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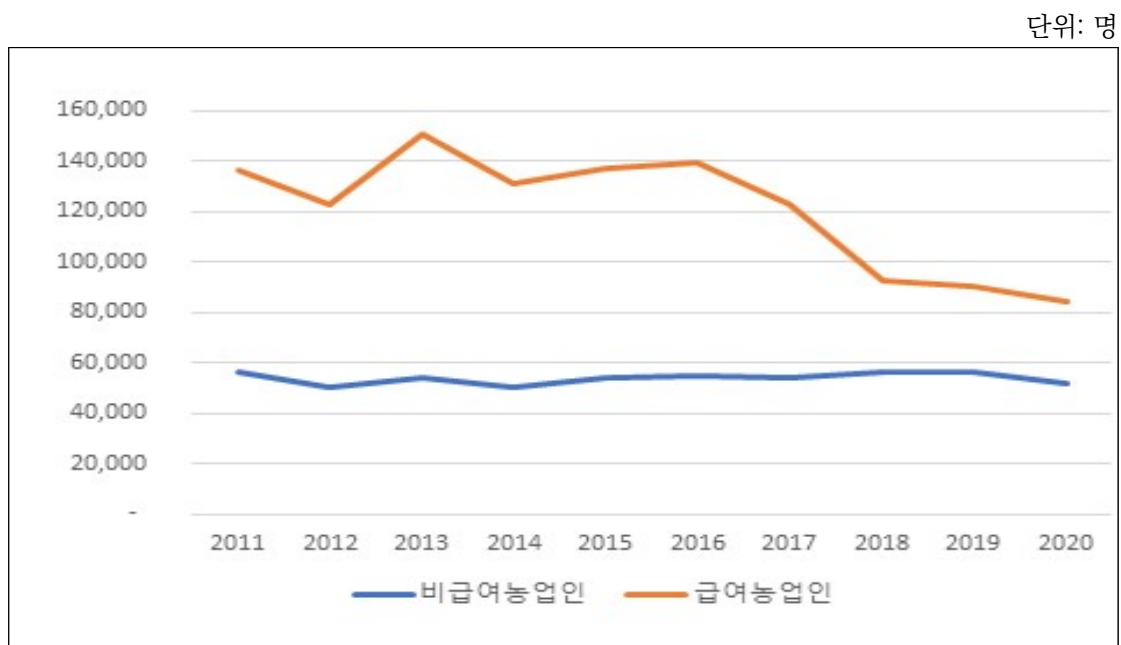
□ 농민연금 가입 실적

○ MSA에 따르면 ‘임금농민 레짐(régime des salariés agricoles)’을 통한 연금 수령자는 240만 명으로 150분기를 마친 후 연간 13,533유로, 월 1,128유로를 받음(2020년 말 기준).

○ ‘자영농민 레짐(régime de retraite de base des non-salariés agricoles)’하에서의 연금수령자는 130만 명이며, 150분기를 마친 후 연간 9,342유로, 월 779유로를 받고 있음.

- 의무보충연금을 받는 자영농민은 2020년 말 기준 65만 8,000명으로서 연 14,655유로(월 1,221유로)의 연금을 받고 있음.
- 자영농민인 농민연금 수령권자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꾸준히 감소한 반면 임금농민은 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3-3〉 2011~2020년 농민연금 수령권자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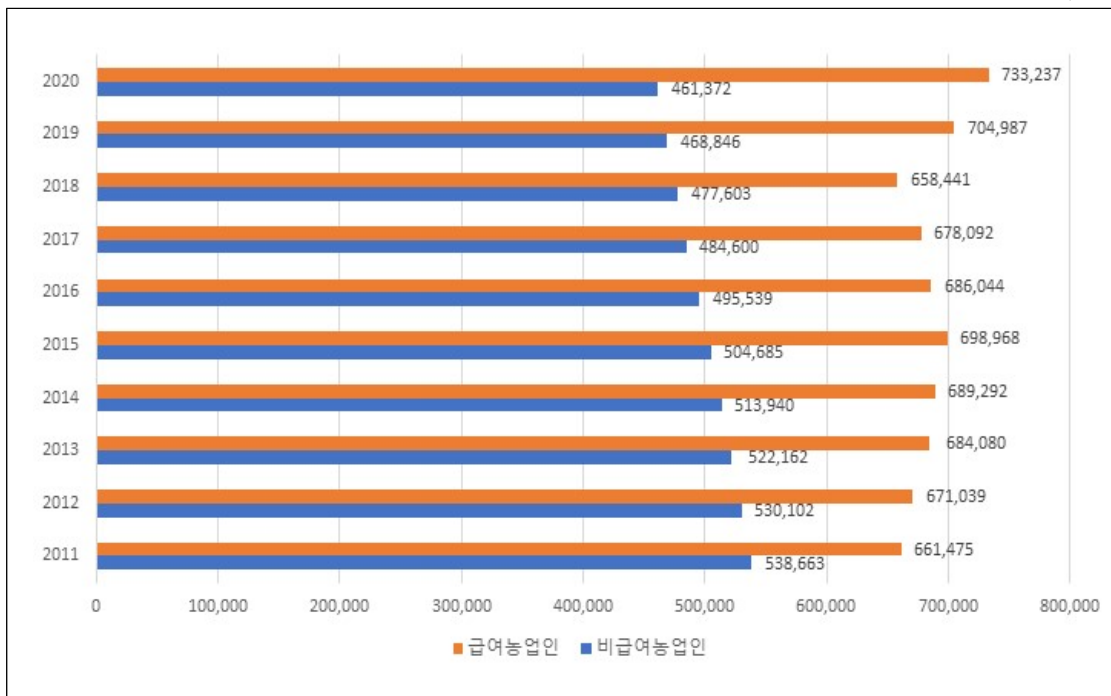
자료: 프랑스 농민공제조합 통계 웹사이트(<https://statistiques.msa.fr/>). 검색일: 2022. 5. 2.

○ 2020년 기준 농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며 활동하는 농업인은 약 120만 명으로서 자영농민은 461,372명, 임금농민(Salariés)은 733,237명임.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영농민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임금농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농장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형 농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4〉 프랑스의 경제활동 중인 농업인 수 변화

단위: 명



자료: 프랑스 농민공제조합 통계 웹사이트(<https://statistiques.msa.fr/>). 검색일: 2022. 5. 2.

□ 점진적 은퇴제도(La retraite progressive)

○ 프랑스 정부는 농업인의 부족한 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5년 이후 은퇴 연령 이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함.

- 점진적 은퇴제도는 최소 150분기를 납입한 농업 종사자가 연금 일부를 받으며 경제활동을 줄이는 것으로 임금농민과 자영농민 모두 가능함.

- 농업인은 최소 60세부터 퇴직금 일부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³⁶⁾
- 그러나 자영농민 레짐에 포함되는 농장주 가족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농장주의 경우 경제활동을 연간 1,200시간 미만으로 줄어야 하며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점진적으로 매각해야 함.
- 임금농민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연금지급 비율이 달라짐.
- 점진적 은퇴는 단계적 은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전일제 경제활동을 재개하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시간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중지됨.

〈표 3-9〉 임금농민의 점진적 은퇴: 감축 노동시간과 연금 지급 비율

감축 노동시간	연금 지급 비율
40% 미만	70%
40-59.99%	50%
60-80%	30%

자료: 프랑스 농림수산부 웹사이트(<https://agriculture.gouv.fr/>). 검색일: 2022. 5. 2.

○ 농업인의 점진적 은퇴는 경제활동을 점차 중단하면서 농장이나 농업사업체의 장으로서 60세부터 퇴직연금 일부를 시간제 보수로 일시적으로 적립할 수 있음.

- 즉,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기여를 통해서 연금수령을 더 할 수 있음.³⁷⁾

□ 최근의 연금 수령액 인상을 위한 제도 개선

○ 은퇴 자영농민은 평균적인 프랑스 임금노동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월평균 800유로 미만을 수령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la loi Chassaigne 법을 시행하여 연금을 최저임금의 85%로 인상함.

³⁶⁾ 프랑스 농민공제조합 웹사이트(<https://www.msa.fr/>). 검색일: 2022. 4. 2.

³⁷⁾ 프랑스 농민공제조합 웹사이트(<https://www.msa.fr/>). 검색일: 2022. 4. 2.

- 연금인상 이후 농민연금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도 개선으로 약 227,0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이며 특히 여성 배우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됨.³⁸⁾
- 동 법의 시행으로 최저임금의 85%에 도달하지 못하는 퇴직 농부들에 한해 공공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간 약 2억 5,500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농민연금의 재정 악화

- 현재 프랑스 농민연금은 한 명의 젊은 농업인이 3.5명의 농업 은퇴자를 위한 재원에 기여하고 있는데 농민의 은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³⁹⁾
- 프랑스 농민의 약 절반이 10년 안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됨.

2. 독일 농업인 연금제도 운영 현황과 체계⁴⁰⁾

2.1. 농업인 연금제도 체계

2.1.1. 가입 조건과 의무

- 창업하는 (영농)사업체가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업

³⁸⁾ 프랑스 공공 라디오 웹사이트(<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2022. 4. 20.

³⁹⁾ 프랑스 공공 라디오 웹사이트(<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2022. 4. 20.

⁴⁰⁾ 해당 절은 김수석 KREI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에게 위탁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됨.

관련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보험 중 하나로 농업인노령보험에 가입하게 됨.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즉 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노령보험 가입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제라 할 수 있음.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면, 세무관청(국세청)이 인정하는 사업체가 되지 못하고 단순한 취미농으로 간주됨.

○ 농업인노령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최소영농규모 이상의 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업체는 농업인노령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이 결과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없음.
- 최소영농규모를 갖추지 못한 사업체는 취미농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지만,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⁴¹⁾

○ 농업인노령보험의 가입조건으로서 최소영농규모(Mindestgröß)에 대한 규정은 농업인 노후보장법(ALG) 제1조 제5항에 나타나 있지만, 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농업노령보험공단(Landwirtschaftliche Alterskasse: LAK)⁴²⁾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놓았음.⁴³⁾

41) 최소영농규모에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취미농으로 영농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체는 농업노령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

42) LAK는 농업인노령보험을 관리하는 보험공단인데, 실제적인 조직은 2013년 이전에는 지역별 농업 사회보험공단(LSV)의 노령보험 담당부서로서, 2013년 이후에는 농림원예업 사회보험공단(SVLFG)의 노령보험 담당부서로 나타나지만, 법적으로는 농업인노령보험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표현됨. 그래서 농업인노령보험을 전담하는 기구에 대해 농업인 노후보장법(ALG)은 전담기구가 SVLFG이지만 이 법에 따른 실행기구를 LAK로 표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ALG 제49조).

43) 다만, 양봉업과 내수면어업의 최소규모 그리고 방목하는 양의 최소규모에 대해서는 법(ALG)에서 규정해 두고 있음. 양봉업은 100개의 벌통, 내수면어업은 연간 120일의 노동소요를 최소규모로, 양 야생사육은 큰 양 240마리를 최소영농규모로 함.

- 농업노령보험공단(LAK)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었던 시기에는 최소영농규모에 대한 규정이 주별로 약간 차이가 났지만, 2013년 지역별 농업사회보험공단(LSV)이 농림원예업 사회보험공단(SVLFG)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연방차원에서 동일한 최소영농규모가 적용됨<표 3-10>.

〈표 3-10〉 농업인노령보험의 최소영농규모 기준

생산방식	최소규모	생산방식	최소규모
농림업:		원예업:	
- 경종농업	농경지 8ha	높은 유리온실, 화훼	농경지 0.03ha
- 방목 축산	농경지(초지) 16ha	높은 유리온실, 채소	농경지 0.05ha
- 산림업	산지 75ha	낮은 유리온실, 화훼	농경지 0.05ha
- 특작	농경지 2.2ha	낮은 유리온실, 채소	농경지 0.08ha
- 크리스마스 트리	농경지 2.5ha	노지 화훼	농경지 0.25ha
- 포도주 생산	농경지 2.0ha	묘목 생산	농경지 0.3ha
- 포도 재배	농경지 0.5ha	버섯 재배	농경지 0.03ha
법적 규정:		어업 및 양식업:	
- 내수면어업	120일 노동일 수	송어	120일 노동일 수
- 양봉업	벌통(봉군) 100개	잉어 및 기타 어류	10ha 저수지 면적
- 양 유목 사육	큰 가축 240 마리	어류 양식업	120일 노동일 수

자료: SVLFG(2014), Mindestgrößenbeschluss der landwirtschaftlichen Alterskasse.

- 농업노령보험 가입의 인적 조건은 가입의무 대상자로 농업인과 해당 농업경영체에 공동으로 종사하는 가족구성원이 됨(ALG 제1조 제1항).
- 농업인은 경영주와 그 배우자가 되는데, 배우자는 지속적인 별거 상태나 완전한 취업능력제한 상태에 놓여있지 않아야 함(ALG 제1조 제3항).
 - 공동으로 종사하는 가족구성원은 3촌 이내의 친족 혹은 2촌 이내의 척족 관계에 있거나 돌보는 자녀(양자) 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업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이 됨(ALG 제1조 제8항).

- 보험가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대상자가 아직 만 18세 미만이거나

표준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예컨대 67세)를 초과한 경우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연금 수령의 최소기간(취업능력제한연금 5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됨(ALG 제2조).

○ 보험가입의 의무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임.

- 농림업 부문에서의 노동소득을 제외한 정규적인 취업소득이 연간 4,8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ALG 제3조 제1항 제1호)
- 실업수당의 대상이 되고 실업수당 대상자가 되기 전에 농업인노령보험과 관련한 가입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ALG 제3조 제1항 제1a호)
- 자녀 양육, 요양대상자에 대한 요양 혹은 군(대체)복무 완료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법적 연금보험(GRV)의 가입의무자가 된 경우(ALG 제3조 제1항 2-4호)
- 표준노령연금 수령시까지 노령연금 수령에 요구되는 15년간의 (최소)대기기간을 충족할 수 없게 될 때(ALG 제3조. 제3항)

2.1.2. 보험료 산정 및 보조

○ 농업인노령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확정된 금액으로 제시되는데, 2022년 현재 서독지역 270유로, 동독지역 260유로로 정해짐<표 3-11>.

- 경영주와 배우자는 동일한 농업인 신분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고, 가족구성원은 경영주 보험료의 1/2을 납부함.
- 보험료는 연차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음.⁴⁴⁾

⁴⁴⁾ 독일 연방농식품부(BMEL)에 따르면, 2025년부터 독일 전역에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게 할 계획임(독일 연방농식품부 웹사이트. <https://www.bmel.de/>. 검색일 2022. 4. 1.).

〈표 3-11〉 농업인노령보험의 월 보험료 크기

단위: 유로

연도	서독지역	동독지역
2011년	219	192
2012년	224	191
2013년	222	189
2014년	227	192
2015년	232	199
2016년	236	206
2017년	241	216
2018년	246	219
2019년	253	234
2020년	261	244
2021년	258	245
2022년	270	260

자료: 독일농민총연맹(Deutscher Bauernverband) 웹사이트(<https://www.bauernverband.de/>). 검색
일: 2022. 4. 3.

○ 보험료가 확정액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 낮은 소득 수준이라는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 보조가 이루어짐.

○ 보험료 보조방식은 농업인 가입자의 연간소득이 근거기준(Bezugsgröße, reference)으로 정해진 소득의 60% 미만이 될 때 지원함(ALG 제32조 제1항).

- 구체적으로는 연간소득이 근거기준의 30% 이하일 때 보험료의 60%를 지원하고, 30% 초과 60% 미만일 때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보조액이 결정됨(ALG 제33조 제1항).⁴⁵⁾

45) 이러한 보험료 보조방식은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방식인데, 이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 크기의 상한을 15,500유로로 정해 놓고, 이하 소득에 대해 15개의 구간을 정해 구간별로 보조액을 늘려나가는 방식이었음(8,220유로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60% 보조).

$$- \text{보험료 보조액} = \text{보험료} \times \left(1.2 - \frac{2 \times \text{연간소득}}{\text{근거기준액}}\right)$$

- 근거기준액은 서독지역 39,480유로, 동독지역 37,380유로임(2022년 기준).

○ 보험자의 연간 소득 산출은 경영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1/2로 나누는 방식을 따름(ALG 제32조 제2항).

-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든 형태의 소득이 합산됨.⁴⁶⁾

- 부기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업의 근로소득을 연관가치(Beziehungswert)로 도출해 내는데, 경작하는 농지의 수익가치인 경영가치(Wirtschaftswert)와 통계상으로 산출된 표본경영체의 최근 5년간의 평균수익을 합하는 방식을 택함(ALG 제32조 제6항).

○ 가족구성원의 보험료 보조액은 농업인 보조의 1/2이 됨(ALG 제33조 제2항).

2.1.3. 보험상품(연금)의 종류

○ 농업인노령보험의 보험상품은 이 보험에만 속한 특별상품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법전 제6권(Sozialgesetzbuch Sechstes Buch: SGB VI)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적 보험(GRV)의 상품과 동일함.

가. 표준노령연금

○ 표준노령연금(Regalaltersrente)은 표준이 되는 노령연금으로서 최소 15년

⁴⁶⁾ 여기서 비농림업 소득이 연간 4,800유로를 초과하면 농업인노령보험 대상에서 제외됨.

간의 대기기간(Wartezeit)⁴⁷⁾을 채우고 정상적 연금수령 연령인 67세에 도달하면 받게 되는 연금임(ALG 제11조).

- 표준노령연금의 연금수령 연령은 2012년에 65세에서 67세로 바뀌게 됨. 이에 따라 연금수령 연령을 보험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즉, 1947년 이전에 출생한 자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고, 1947년생 이후로는 개시 시기가 1개월씩 늘어나다가 1958년생부터는 2개월씩 늘어나 1964년생부터는 모두 67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됨(ALG 제87a조).

○ 독일에서는 2018년 이전까지 연금 수령요건으로서 경영이양이 의무였으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경영이양 의무가 폐지됨.

- 농업인은 경영이양에 대한 증거로서 매매계약서, 농장이양계약서(Hofübergabevertrag) 등을 제출해야 했음.
- 농장이양계약은 농업경영주가 자녀와 친지 등 영농후계자와 맺는 계약으로 농장을 이양하는 대신에 노후분(Altenteil) 등 노후생계 보장을 후계자로부터 받는 계약을 말함.

나. 조기연금

○ 조기연금(Vorzeitige Altersrente)은 35년의 대기기간을 채우면 65세부터 앞당겨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ALG 제12조 제2항).⁴⁸⁾

- 또 다른 조기연금은 배우자(부부의 한쪽)가 이미 표준노령연금이나 조기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이 15년 간의 대기기간을 충족한다면, 표

47) 대기기간에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의무보험이 면제되는 기간, 즉 법적 연금보험(GRV)에 가입한 기간이 포함됨.

48) 조기연금 신청 대상에는 가족구성원도 해당됨.

준노령연금 수령시기보다 최대 10년까지 앞당겨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음
(ALG 제12조 제1항).

○ 조기연금에서는 앞당기는 기간만큼 연금삭감이 이루어짐(ALG 제23조 제8항).

- 일반적으로 조기연금에서 연금삭감은 앞당기는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월 0.3%씩 삭감이 이루어짐.
- 65세때부터 받는 조기연금에서는 추가적인 옵션으로 총 대기기간이 45년이 된 경우에 한해 연금삭감을 면제하고 있음.
- 최대 10년까지 앞당기는 조기연금에서는 65세까지는 연금삭감을 하지 않고 65세 미만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 삭감함.

○ 표준노령연금의 수령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변화함에 따라 조기연금의 수령시기도 출생연도에 따라 63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춰짐.

- 조기연금에서는 1953년 이전에 출생한 자는 63세에 연금을 수령하고, 1954년생 이후로는 출생연도별로 개시 시기가 2개월씩 늘어나 1964년생 부터는 모두 65세에 조기연금을 수령하게 됨(ALG 제87c조).
- 실제적인 연금삭감도 이러한 보험자별 조기연금 개시 시기와 연동되어 실시되고 있음.

○ 조기연금의 경우, 표준노령연금 개시 이전 기간에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의 삭감이 이루어짐.

- <표 3-12>에서처럼 제시된 기간에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1회(1개월)의 연금이 삭감됨.⁴⁹⁾

⁴⁹⁾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2022년 기간 동안 조기연금에서 추가소득에 의한 삭감을 중단함.

〈표 3-12〉 조기연금의 연금 삭감 기준(2022. 1. 1.~2022. 6. 30. 기간)

단위: 유로

수령연금 크기	추가소득(서독지역)	추가소득(동독지역)
연금 전액	0.01~450.00	0.01~450.00
연금의 2/3	450.01~1,283.10	450.01~1,253.85
연금의 1/2	1,283.11~1,875.30	1,253.86~1,832.54
연금의 1/3	1,875.31~2,467.50	1,832.55~2,411.24
연금 없음	2,467.51 이상	2,411.25 이상

자료: SVLFG(2022),. Aktuelle Hinzuverdienstgrenzen der LAK.

다. 취업능력감소연금

○ 취업능력감소연금(Renten wegen Erwerbsminderung)은 표준노령연금 개시 이전에 노동능력상의 장애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복원 내지 재활의 기회가 필요할 때 노동시간의 단축을 전제로 지급하는 연금임.

○ 취업능력감소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한 취업능력감소연금(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적 취업능력감소연금(Rente wegen teilweiser Erwerbsminderung)임.

- 여기서 완전한 취업능력감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하루의 노동능력이 3시간 미만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부분적 취업능력감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하루의 노동능력이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함(ALG 제13조 제1항).

○ 취업능력의 장애를 가진 자가 취업능력감소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① 최소 5년의 대기기간과 ② 연금 신청 전 최근 5년 중 의무보험료 납입기간 3년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⁵⁰⁾

⁵⁰⁾ ALG 제13조 제1항 참조.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음.

- 취업능력감소연금은 ‘연금에 앞서 재활(Rehabilitation vor Rente)’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취업활동 중 갑자기 다가온 노동능력 장애로 연금 수령자가 되면 보험가입 기간이 적어서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시된 사회적 지원시스템의 하나임.
- 취업능력감소연금에서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연금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기간(보험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 포함)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미래 특정 시점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삽입해 연금액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취업능력감소연금에서 보험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Zurechnungszeit)은 최근에 크게 늘어났는데, 2014년 중반까지 60세였던 추산기준이 2014년 7월 1일부터 62세로 늘어났다가, 2019년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2019년도에 65세 8개월이 적용되고 그 뒤부터 해마다 1개월씩 늘어나 2031년에 67세가 되는 것으로 정해짐.⁵¹⁾
 - 예를 들면, 2020년 현재 20년 동안 농업인노령보험에 가입했던 50세의 농업인 A가 노동능력에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함.
 - 그 하나는 특별해약을 통해 노령연금을 받는 것인데, 이때 연금 산정에 계산되는 주된 것은 보험료를 납입했던 지난 20년의 보험기간임.
 - 다른 하나는 취업능력감소연금을 받는 것인데, 이 연금 산정에는 보험기간 20년에다가 65세 9개월까지 취업한 것으로 간주한 15.75년이 더해져서 35.75년에 근거한 연금이 산출됨.

⁵¹⁾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웹사이트(<https://www.bmas.de/>). 검색일: 2022. 4. 3. 이는 결과적으로 1964년생이 2031년에 67세로 표준노령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것과 일치시킨 것임.

-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한 취업능력감소연금은 표준노령연금과 동일한 가중치, 부분적 취업능력연금은 표준노령연금의 1/2 가중치를 적용함(ALG 제23조 제6항).
- 취업능력감소연금은 기본적으로 3년간 지급되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 최대 9년까지 지급될 수 있음(사회법전 제6권 제102조 제2항).⁵²⁾
- 취업능력감소연금도 표준노령연금의 개시 시기보다 연금수령을 앞당기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연금삭감이 이루어짐.
 - 연금삭감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월 0.3%씩 삭감이 이루어지지만, 삭감률이 최대 10.8%를 초과하지 않게 함(ALG 제23조 제8항).
- 또한 취업능력감소연금에서도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의 삭감이 이루어 지는데, <표 3-13>과 <표 3-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시된 기간에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1회(1개월)의 연금이 삭감됨.

〈표 3-13〉 완전한 취업능력감소연금의 연금 삭감 기준(2022. 1. 1.~2022. 6. 30. 기간)

단위: 유로

수령연금 크기	추가소득(서독지역)	추가소득(동독지역)
연금 전액	0.01~450.00	0.01~450.00
연금의 3/4	450.01~1,677.90	450.01~1,639.64
연금의 1/2	1,677.91~2,270.10	1,639.65~2,218.34
연금의 1/4	2,270.11~2,763.60	2,218.36~2,700.59
연금 없음	2,763.61 이상	2,700.60 이상

자료: SVLFG(2022). Aktuelle Hinzuverdienstgrenzen der LAK.

⁵²⁾ Sozialgesetzbuch (SGB) Sechstes Buch(VI), 제102조 제2항 참조. 다시 건강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계속 지급될 수 있음.

〈표 3-14〉 부분적 취업능력감소연금의 연금 삭감 기준(2022. 1. 1.~2022. 6. 30. 기간)

단위: 유로

수령연금 크기	추가소득(서독지역)	추가소득(동독지역)
연금 전액	0.01~2,270.10	0.01~2,218.34
연금의 1/2	2,270.11~2,763.60	2,218.35~2,700.59
연금 없음	2,763.61 이상	2,700.60 이상

자료: SVLFG(2022). Aktuelle Hinzuverdienstgrenzen der LAK.

라. 미망인 연금

○ 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받게 유족연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망인연금(Witwenrente)임.

○ 미망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ALG 제14조 제1항).

- 사망한 보험자가 농업인노령보험에서 5년의 대기기간을 가짐.
- 재혼하지 않아야 함.
- 미망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① 18세 미만의 자녀(본인이나 사망한 보험자의 자녀)⁵³⁾을 양육함.
 - ② 만 47세에 도달함.⁵⁴⁾
 - ③ 사회법전 제6권(SGB VI)에서 규정한 취업능력감소 상태에 있음.

○ 미망인연금의 크기는 사망한 보험자가 받을 (또는 받던) 연금의 55%가 됨(ALG 제23조 제6항).⁵⁵⁾

⁵³⁾ 여기서 자녀는 사회법전 제6권(SGB VI) 제46조 제2a항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함께 가계생활을 해 온 의붓자녀와 위탁아동이 포함되고, 함께 생활하거나 주된 지원을 받았던 손자와 형제자매도 포함 됨(ALG 제14조 제1항).

⁵⁴⁾ 47세 규정도 2012년 45세에서 47세로 변경되었는데, 이의 적용도 점진적으로 하고 있음. 즉 사망 연도가 2012년 이전이면 45세로 하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개월씩 늘어나고 2023년부터 2개월씩 늘어나 2029년에 47세를 완성함(독일 농림원예업 사회보험공단 웹사이트. <https://www.svlfg.de/>. 검색일: 2022. 4. 4.).

- 다만 보험자의 사망 후 이어지는 초기 3개월에는 적응기간으로서 사망자 연금의 100%를 받게 함.

마. 후손연금

○ 후손연금(Waisenrente)은 보험자의 유족 중 18세 이하⁵⁶⁾의 자녀가 받게 되는 유족연금임.

- 여기서 자녀는 ① 사망자의 친자녀와 입양자녀, ② 사망자의 가계에서 생활한 의붓자녀와 위탁아동, ③ 사망자의 가계에서 생활했거나 주된 지원을 받았던 손자와 형제자매가 해당됨(SGB VI 제48조 제3항).
- 일반적 자격요건은 사망자가 농업인노령보험에서 5년의 대기기간을 갖고 있어야 함.

○ 후손연금은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함으로써 받게 되는 반쪽 후손연금(Halbweisenrente)과 부모 모두가 사망함으로써 받게 되는 온전한 후손연금(Vollweisenrente)으로 구분됨.

- 반쪽 후손연금의 크기는 사망한 보험자가 받을 (또는 받던) 연금의 10%이고, 온전한 후손연금은 사망자 연금의 20%가 됨(SGB VI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⁵⁵⁾ 일반적인 법적 연금보험(GRV)에서는 구법의 경과규정을 이어받아 2002년 이전에 결혼했거나 1962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난 미망인은 보험자 연금의 60%를 받게 하고 있음.

⁵⁶⁾ 하지만 27세까지로 후손연금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녀가 ①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 중에 있거나, ② 자발적 사회복무(Freiwilligendienst)를 하거나, ③ 장애로 인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울 때 등임(SGB VI 제48조 제4항).

2.1.4. 연금액 산정 방식

○ 농업인노령보험에서 월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곱하여 산출함(ALG 제23조 제1항).

- 가입 1개월당 승률(Steigerungszahl)
- 연금유형 요소(Rentenartfaktor)
- 보편 연금가치(allgemeiner Rentenwert)

○ 가입 1개월당 승률은 개인별 연금액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① 보험납부기간(Beitragszeiten)과 ② 취업능력감소연금 산정 때 사용하는 추산기간(Zurechnungszeit)을 개월 수로 나타낸 것에다 가중치(0.0833 또는 0.417)를 곱하여 산출함.⁵⁷⁾⁵⁸⁾

○ 연금유형 요소는 연금유형이 연금크기가 관계되는 정도를 보여줌.

- ALG 제23조 제6항은 이를 <표 3-15>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3-15> 연금유형별 상관지수

연금유형	상관 지수
○ 노령연금(표준노령연금, 조기연금)	1.0
○ 완전한 취업능력감소연금	1.0
○ 부분적 취업능력감소연금	0.5
○ 보험자 사망후 초기 3개월 미망인연금	1.0
- 이어지는 미망인연금	0.55
○ 후손연금	0.2

자료: ALG 제23조 제6항.

57) 증강 수 계산에서 가중치가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은 농업인노령보험의 보험료가 개인 간의 격차 없이 동일하게 정해지기 때문임.

58) 0.0833은 1년을 1로 봤을 때, 이를 12로 나누어 1개월 단위로 환산한 것임. 0.0417는 1년을 0.5로 봤을 때 도출되는 수치로 보험료를 절반만 내는 가족구성원의 증강 수를 산출할 때 사용함. 예를 들어, 농업인(경영주) A의 보험납부기간이 25년 6개월이면 증강수는 25.398(=0.083×306)이 됨.

○ 보험료를 연금액으로 변환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연금가치인데, 농업인노령보험(AdL)에서는 보편 연금가치를 사용하고, 법적 연금보험(GRV)에서는 실제 연금가치(aktueller Rentenwert)를 사용함.

- 연금가치는 매년 7월 1일 새로 정해지는데,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편 연금가치는 서독지역 15.79유로, 동독지역 15.43유로임.⁵⁹⁾

○ 월 연금액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곱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도출됨.

- 월 연금액 = 개인별 증강수 × 연금 유형별 상관값 × 보편 연금가치

2.1.5. 농업인노령보험 운영 주체 및 재정 현황

○ 농업인노령보험을 포함한 농림업 관련 4대 보험을 연방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는 ‘농림원예업을 위한 사회보험공단(SVLFG)’임.⁶⁰⁾

- 기존에는 9개의 농업사회보험공단(Landwirtschaftliche Sozialversicherung, LSV)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3년에 연방 차원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조직 즉, 농림원예업을 위한 사회보험공단(Sozialversicherung für Landwirtschaft, Forsten und Gartenbau, SVLFG)이 됨.

○ SVLFG의 예산 규모는 <표 3-16>과 같이 나타남.

- 전체 예산의 약 60%는 연방 지원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SVLFG의 사업 중에서 연방 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농업인노령보험인데, 노령보험은 사업예산의 81%를 연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⁵⁹⁾ 2021년 실제 연금가치는 서독지역 34.19유로, 동독지역 33.47유로임(독일 바이에른주 가족노동 사회부 웹사이트. <https://www.stmas.bayern.de/>. 검색일: 2022. 3. 26.).

⁶⁰⁾ 취미농이 아닌 농업경영체가 법적으로 농업경영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농업 관련 4대 보험은 산재보험, 농업연금보험, 농업의료보험 및 요양 보험임.

〈표 3-16〉 SVLFG의 사업 규모 및 재정 구성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9년			2020년		
	총수입	연방 지원	지원 비율	총수입	연방 지원	지원 비율
산재보험	1,007	177	17.6	1,040	177	17.0
노령보험	2,903	2,359	81.3	2,876	2,335	81.2
의료보험	2,686	1,413	52.6	2,617	1,363	52.1
요양보험	740	(578)*	(78.1)	773	(581)*	(75.2)
구조개선사회사업	13	13	100.0	11	11	100.0
합계	7,349	3,962 (4,540)	53.9 (61.8)	7,317	3,886 (4,467)	53.1 (61.0)

주: 요양보험의 지원은 연방예산이 아니라 요양보험 대체기금에서 지원함.

자료: SVLFG(2021, p.5).

○ 최근 5년간의 농업인노령보험 지출내역을 보면, 표준노령연금에 대한 지출은 조금 늘어났지만, 조기연금 지출은 크게 증가함.

- 이는 63세부터의 조기연금에 대해 조기인출에 의한 연금삭감을 면제해주는 선택적 방안이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음(ALG 제87c조).

〈표 3-17〉 농업인노령보험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수입	2,798.4	2,818.6	2,815.8	2,903.2	2,875.6
- 보험료	574.5	561.8	550.6	535.8	536.2
- 연방 지원	2,221.3	2,251.8	2,260.4	2,359.2	2,334.7
- 기타 수입	2.6	1.6	1.4	1.4	1.3
- 전년도 이월	0.0	3.4	3.4	6.8	3.4
총지출	2,798.4	2,818.6	2,815.8	2,903.2	2,875.6
- 표준노령연금	1,421.0	1,414.9	1,393.5	1,446.9	1,480.0
- 조기연금	349.0	390.7	432.7	497.9	528.5
- 취업능력감소연금	205.2	192.8	180.6	159.6	81.7
- 미망인 연금	683.1	678.8	667.0	664.5	658.3
- 후손연금	3.3	3.2	3.1	3.1	3.0
- 전환기 보조	0.0	0.0	0.0	0.0	0.0
- 재활 지원	12.7	13.2	13.5	12.7	10.2
- 사업장 및 가계 지원	11.4	11.1	10.5	9.9	9.3
- 보험료 보조 지원	33.9	36.0	35.1	28.9	23.4
- 행정비용	77.9	76.2	78.8	79.0	79.5
- 기타	0.9	1.7	1.0	0.7	1.7

자료: Deutscher Bundestag(2021, p.9).

○ 반면, 취업능력감소연금은 줄어들다가 특히 2020년에는 전년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 농장이양규정(Hofabgabeklausel)의 폐지로 취업능력감소연금 수령자가 표준노령연금 수령자 나이가 될 때 표준노령연금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Deutscher Bundestag, 2021, p.4).

○ 낮은 소득자에게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지원의 근거가 되는 소득 기준이 2002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고, 2021년 관련 기준들이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Deutscher Bundestag, 2021, p.9).

2.2. 농업인 연금제도 가입 현황

○ 농업인노령보험의 보험자 수는 <표 3-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21년 기간에 14.9%가 줄어들었음.⁶¹⁾

- 반면에 보험의무면제자 수는 2017년에 비해 2021년 약 11,000명이 늘어남. 여기서 면제의 주된 사유는 비농업 부문의 소득 및 수입에 있음.⁶²⁾

<표 3-18> 농업인노령보험 보험자 현황

단위: 명

연도	보험자				보험료 지원 대상자	보험의무 면제자
	전체	경영주	배우자	가족구성원		
2017년	200,038	140,834	51,453	7,751	27,539	235,504
2018년	192,465	136,529	48,182	7,754	25,845	237,118
2019년	183,351	131,361	44,300	7,690	20,323	241,519
2020년	176,768	127,402	41,583	7,783	15,532	244,130
2021년	170,298	123,334	39,209	7,755	18,186	246,493

자료: Deutscher Bundestag(2021, p.4).

61) 2021년은 6월 30일 기준임.

62) 비농업부문의 수입이 월 400유로, 연간 4,800유로를 초과하면 농업인노령보험 의무에서 벗어남.

○ 2020년 농업인노령보험 가입자의 연령 구성을 보면, 45세 이상이 약 73%를 차지하고, 35세 미만은 11%에 불과함<표 3-19>.

- 한편, 65세 이상 보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65세 이상 경영주의 수가 2020년 말에 2,227명이지만, 2016년 말에는 1,468명에 불과하였음 (Deutscher Bundestag, 2021, p.4).
- 이는 연금보험의 개시 시기가 65세에서 67세로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임.⁶³⁾

〈표 3-19〉 농업인노령보험 보험자 연령 구성(2020. 12. 31. 기준)

단위: 명

연령층	경영주	배우자	가족구성원	합계	비율(%)
25세 미만	1,093	25	1,834	2,952	1.7
25~29세	4,272	196	2,016	6,484	3.7
30~34세	7,294	808	1,369	9,471	5.4
35~39세	9,060	2,127	662	11,849	6.8
40~44세	11,342	4,141	332	15,815	9.1
45~49세	14,611	6,439	205	21,255	12.2
50~54세	23,447	10,299	257	34,003	19.5
55~59세	28,875	10,539	383	39,797	22.9
60~64세	23,602	5,624	601	29,827	17.1
65세 이상	2,227	240	53	2,520	1.4

자료: Deutscher Bundestag(2021, p.4).

○ 농업인노령보험의 연금 수령자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연금수령자 수가 줄어드는 반면⁶⁴⁾ 조기연금수령자는 증가하고 있음<표 3-20>.

- 2021년의 경우, 약 56만 명의 수령 건수 중 약 40만 건이 보험자 연금을 수령하고, 약 16만 건은 유족연금에 해당함<표 3-20>.

⁶³⁾ 2018년 5월의 농장이양규정(Hofabgabeklausel) 폐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

⁶⁴⁾ 이러한 추세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함. 2007년까지는 연금수령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음. Deutscher Bundestag(2021, p.4). 참조.

- <표 3-18>의 보험자 수와 <표 3-20>의 연금수령자 수를 비교해보면, 연금수령자가 보험자의 3배 이상임.

〈표 3-20〉 농업인노령보험 연금수령자 현황

단위: 명

연도	보험자연금			유족연금		합계
	표준노령연금	조기연금	취업능력감소연금	미망인연금	후손연금	
2017년	287,406	92,243	37,719	169,125	3,357	589,850
2018년	279,173	98,699	34,691	165,674	3,165	581,402
2019년	276,997	107,162	31,852	162,571	3,019	581,601
2020년	282,061	111,136	16,661	159,589	2,859	572,305
2021년	273,406	115,605	12,396	156,148	2,721	560,276

자료: Deutscher Bundestag(2021, p.6).

○ 농업인노령보험의 연금유형별 평균 연금액을 보면, 만 67세(대개는 65~67세 사이)부터 받게 되는 표준노령연금은 2021년에 월 440유로 수준인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함<표 3-21>.

- 표준노령연금보다 2년 앞당겨 받게 되는 조기연금은 월 400유로 수준인데, 표준연금액과의 격차가 감소함.
- 취업능력감소연금은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산정해줘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게 하는 연금유형인데, 2021년 월 연금액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음.
- 유족연금은 미망인에게 보험자 연금의 55%(일부 60%),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 10%(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또는 20%(양쪽 부모 모두 사망했을 때)를 지급하는 것인데, 미망인 연금의 평균치는 같은 시기에 보험자 연금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의 60%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던(즉, 보험기간이 길었던) 보험연금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표 3-21〉 농업인노령보험 연금유형별 월평균 연금액

단위: 유로

연도	보험자연금			유족연금		합계
	표준노령연금	조기연금	취업능력감소연금	미망인연금	후손연금	
2017년	404	343	422	325	76	371
2018년	407	354	425	325	78	374
2019년	418	371	432	329	80	384
2020년	429	386	389	331	84	391
2021년	440	403	365	336	87	400

자료: Deutscher Bundestag(2021, p.6).

○ 〈표 3-22〉는 농업인노령보험에 따른 연금 중 유족연금을 제외한 보험자연금의 수령자 구성 현황을 보여줌.

- 조기연금의 경우, 경영주보다 배우자의 구성비가 2배 이상 높음. 이는 경영주가 은퇴하여 연금을 받게 되면 통상 배우자도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같이 은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⁶⁵⁾

〈표 3-22〉 보험자연금의 수령자 세부 구성

단위: 명

연도	표준노령연금			조기연금			취업능력제한연금		
	경영주	배우자	가족구성원	경영주	배우자	그 외 가구원	경영주	배우자	그 외 가구원
2017년	188,090	97,403	1,913	22,350	69,754	139	29,492	6,835	1,392
2018년	180,279	97,052	1,842	25,374	73,160	165	26,933	6,495	1,263
2019년	178,559	96,647	1,791	29,661	77,318	183	24,505	6,212	1,136
2020년	183,209	97,055	1,797	31,662	79,267	206	11,283	4,445	933
2021년	176,528	95,139	1,739	34,283	81,088	234	7,726	3,823	847

자료: Deutscher Bundestag(2021, p.7).

○ 연금 수령자 구성에서 경영주와 배우자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데(2021년의 경우 약 4만 명 차이, 경영주는 22만 배우자는 18만), 이는 최근 들어 배우

⁶⁵⁾ 부부 중 한 쪽이 표준노령연금이나 조기연금으로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다른 쪽은 최대 10년까지 앞당겨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농업인 노후 보장법(ALG) 제12조 참조.

자의 농업인노령보험 가입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점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배우자가 경영주보다 빈번히 보험의무면제자로 빠졌다가 다시 보험의무자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배우자는 육아기간(3년) 동안 농업업노령연금 의무에서 면제되지만, 이 기간이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법적 연금보험(GRV)에서는 3년간 가입한 것과 같이 보장이 이루어지고, 또한 농외소득 발생으로 농업인노령연금에서 의무 면제와 연금보험(GRV)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경영주보다 자주 갖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표준노령연금 수령자의 남녀 분포는 <표 3-23>에 제시됨.

<표 3-23> 표준노령연금의 수령자 구성별 남녀 분포

단위: 명

연도	경영주		배우자		가족구성원	
	남	여	남	여	남	여
2017년	175,438	12,652	1,810	95,593	797	1,116
2018년	167,835	12,444	1,831	95,221	775	1,067
2019년	165,865	12,694	1,828	94,819	764	1,027
2020년	169,708	13,501	1,877	95,178	768	1,029
2021년	163,046	13,482	1,853	93,286	754	985

자료: Deutscher Bundestag(2021, p.7).

○ 표준노령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연금액보조기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연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월 보험료가 동일한 노령보험의 특성상 표준연금의 배우자보다 조기 연금의 배우자가 (평균적으로) 납입기간이 더 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표준노령연금의 배우자가 조기연금자보다 더 길게 보험의무를 면제 받는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음.

〈표 3-24〉 보험자연금의 수령자 구성별 월평균 연금액

단위: 유로

연도	표준노령연금			조기연금			취업능력제한연금		
	경영주	배우자	가족 구성원	경영주	배우자	그 외 가구원	경영주	배우자	그 외 가구원
2017년	476	270	184	442	312	200	455	326	177
2018년	479	276	184	452	320	193	460	329	178
2019년	492	287	188	468	335	185	468	335	182
2020년	502	297	191	485	347	185	422	348	179
2021년	514	308	192	504	361	182	390	357	181

자료: Deutscher Bundestag(2021, p.7).

3. 일본 농업자연금⁶⁶⁾

3.1. 공적연금에서 농업자연금의 위치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장래 리스크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에 의해 고령 세대의 연금급부를 조달하는 부과방식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음.⁶⁷⁾

- 임금이나 물가의 변화를 연금액에 반영시키면서 생애에 걸쳐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필요한 때에 급부를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기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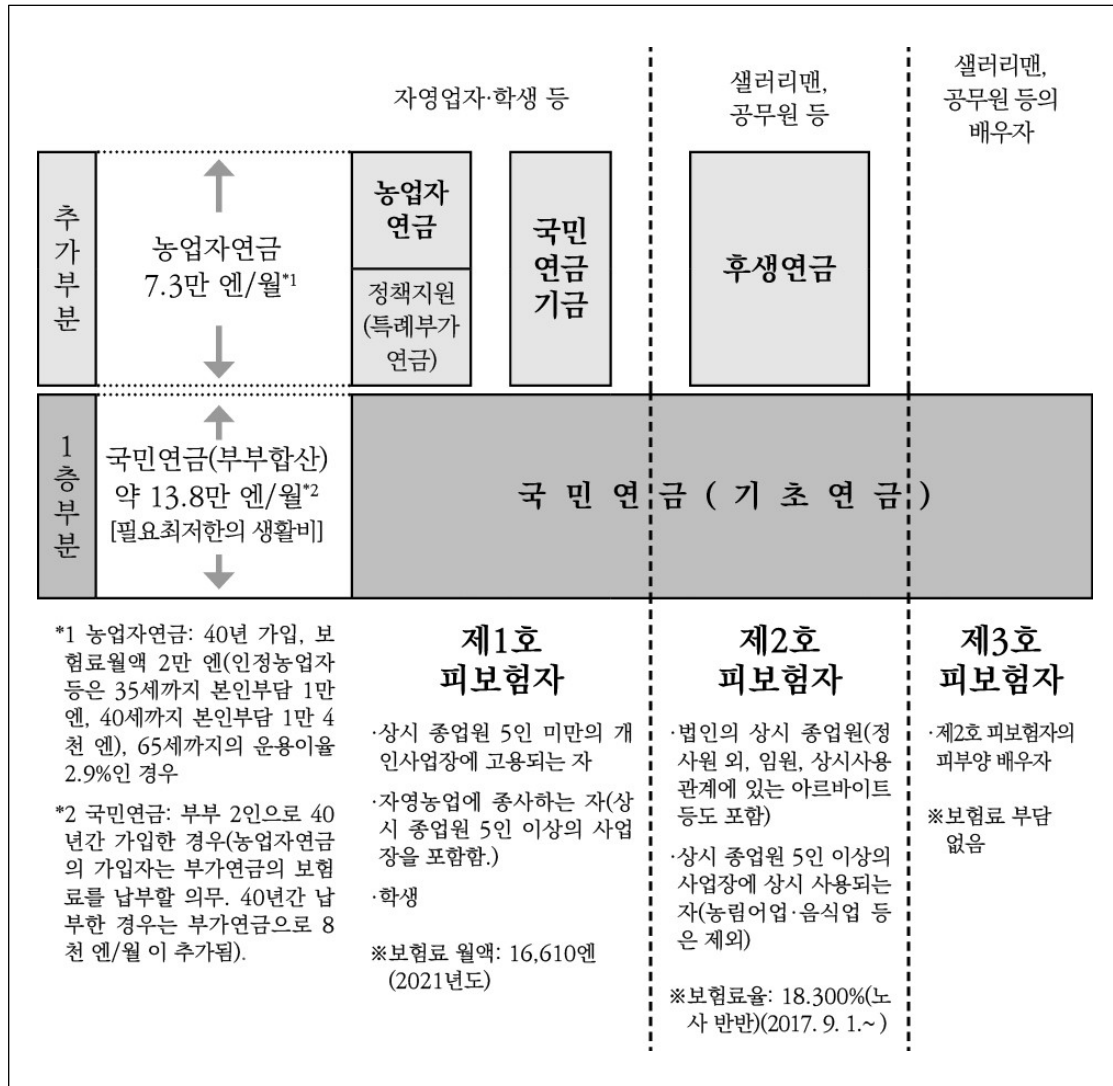
○ 일본의 공적연금은 2층 구조이며 농업자연금은 농업인에게 공적연금구조 2층에 해당함.

⁶⁶⁾ 해당 절은 임소영 외(2019)의 pp.130-141과 최경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에게 위탁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⁶⁷⁾ 후생노동성. (2021.7.). 厚生労働白書(2021年版)(2020年度 厚生労働行政年次報告):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社会保障. p.299.

- 모든 국민이 기초연금인 국민연금(1층)에 가입하고, 직역에 따라 부가연금이나 후생연금 및 공제연금 등 추가(부가)적인 연금(2층)에 가입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하고 있음.
- 농업자연금은 가산연금으로서 연간 6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60세 미만의 자영농업자인 개인이 임의로 가입 가능함.
- 농업법인 종사자는 농업자연금에는 가입 불가, 농업법인 임직원은 후생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함.
- 농업경영을 법인화하고 그 법인의 임원, 사원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샐러리맨의 추가연금인 후생연금에 강제가입함(농업자연금의 대상 외).
- 농업자연금 보험료 수령 예
- 농업자연금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만 엔을 40년간 납부하고 65세까지 운용이율이 2.9%라고 할 경우 65세 이후에 월 7.3만 엔을 농업자연금으로 받게 됨.
 - 한편, 국민연금에 부부가 40년간 가입한 경우 65세부터 월 약 13.8만 엔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됨(농업자연금 가입으로 부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월 8천 엔이 국민연금에 추가).
 - 결국 농업자는 국민연금(13.8만 엔 + 8천 엔) + 농업자연금(7.3만 엔)을 통해 노후소득(14.6만 엔 + 7.3만 엔 = 21.9만 엔)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는 하나의 사례를 시산한 것이며, 실제로는 각자가 부담(납부)한 보험료(국민연금, 농업자연금)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

〈그림 3-5〉 농업자연금제도의 위치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2022. 1., p.1).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농업자연금제도에 대해). (令和4年(2022年) 1月現在).

3.2. 농업자연금제도 개혁

○ 일본의 농업자연금제도는 1971년에 시작되어 약 30년간 운영되다가 2002년에 고령화와 연금 재정 문제로 인해 신제도로 개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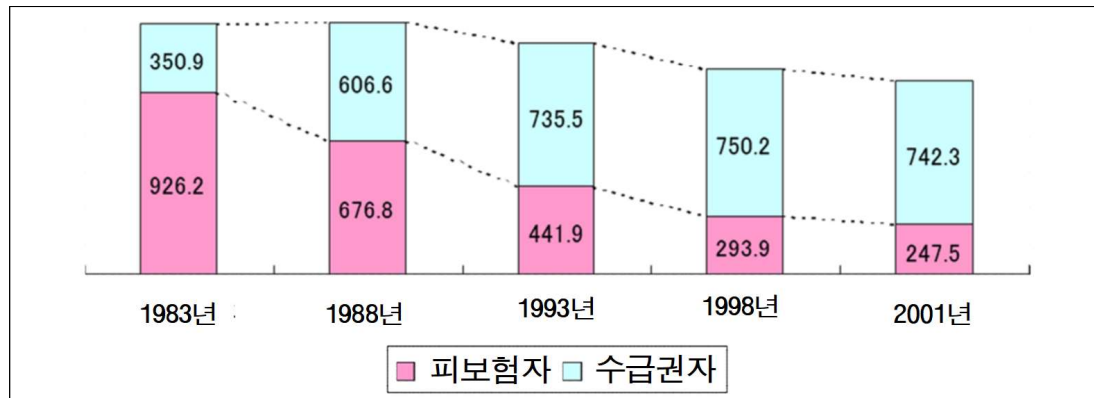
3.2.1. 2001년 제도 개혁의 배경

-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자연금의 수급자는 74만 명인데 비해 가입자(피보험자)는 25만 명으로 가입자 1명 대비 수급자가 약 3명이 됨.
- 농업자연금의 재정(財政)방식은 1971년 제도 발족 당시에는 적립방식이었지만, 물가 슬라이드의 도입 등에 의한 부과방식(현역 세대가 고령자 세대를 지원하는 구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현역 세대의 부담이 현저하게 커지는 어려운 재정상황이 되었음.
 - 은퇴 세대의 연금급부를 현역 세대(가입자)가 지원하는 ‘부과방식’을 채용하고 있던 구제도는 농촌의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가입자 1명이 수급자 3명을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 재정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웠음.⁶⁸⁾
 - 이에 노후에 수령할 연금의 재원을 자신이 각출한 보험료로 조달하는 ‘적립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수정을 함으로써 연금재정이 가입자 수·수급자 수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되도록 함.
- 농정상으로도 농업인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중·고 연령자를 포함한 폭넓은 농업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음.
- 이 때문에 ① 농정의 관점, ② 연금재정의 관점, ③ 농업자의 신뢰 확보의 관점에서 2년 남짓 엄격한 검토와 국회 심의를 거쳐 2001년에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음.

⁶⁸⁾ 일본 농림수산성. (2022. 1.).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令和4年(2022年) 1月 現在). p.3.

〈그림 3-6〉 구제도의 농업자연금 피보험자와 수급권자

단위: 천 명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旧制度の抜本的制度改革(<https://www.nounen.go.jp/nounen/seido/data/seidokaikaku.pdf>). 검색일: 2022. 4. 15.

3.2.2. 제도 개혁에 따른 조치

○ 2001년의 제도개혁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조정이 이루어졌음.

- 수급자를 포함해 연금액을 평균 9.8% 인하함.
- 가입자·대기자의 경영이양연금에 대해서는 45세 이상(2002년 1월 1일 현재)인 자는 구 농업자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지급정지요건 등을 적용함.
- 농업자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어떤 세대에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특례배우자가입에 대해서는 보험료납부완료기간의 80%의 특례탈퇴일시금을 지급함(특례탈퇴일시금 수급자 누계는 18.4만 명, 약 3,200억 엔(1명당 평균 176만 엔)을 지급).

3.2.3. 신·구제도의 비교

○ 2001년의 제도 개혁에 따른 구제도와 신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 3-25〉와 같음.

- 부과방식·확정급부형에서 적립방식·확정각출형으로 변경됨.
-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변경됨.
- 보험료는 정액에서 가입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됨.
- 구제도에서는 국가가 경영이양연금 급부비를 지원하였으나 신제도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

〈표 3-25〉 농업자연금의 신·구제도 비교

	구제도(1971~2001)	신제도(2002~)
구조	부과방식(물가 슬라이드 있음), 확정급부형	적립방식(물가 슬라이드 없음), 확정각출형
목적	농업경영의 근대화 및 농지보유의 합리화 (경영주의 저연령화와 규모 확대)	농업자의 확보
가입	강제가입(농지 등의 권리가 50a 이상인 농업경영자) (※ 30~50a 미만의 경영자나 후계자 등은 임의가입)	임의가입(농업종사자)
보험료	정액[월액 21,660엔(2001. 1. ~3월의 법정액)]	가입자가 결정 [하한 20,000엔(2022. 1. 1.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10,000엔) 및 상한 67,000엔만을 법령에 규정]
급부	· 65세까지 경영이양을 한 자에게는 국고지원에 의해 증액된 연금(=경영이양연금)을 지급 · 경영이양하지 않고 65세가 된 자에게는 보험료를 급부재원으로 하는 연금(=농업자노령연금)을 지급	·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농업자노령연금을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지급 · 정책지원을 받은 자가 농업을 폐지한 때는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국고보조와 그 운용 수익을 원자(原資)로 하는 특례부가연금을 지급
정책 지원 (국고 지원)	경영이양연금의 급부비 지원	보험료 각출 지원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2, 1. p.4).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令和4年(2022年) 1月 現在).

3.3. 농업자 연금의 개요

3.3.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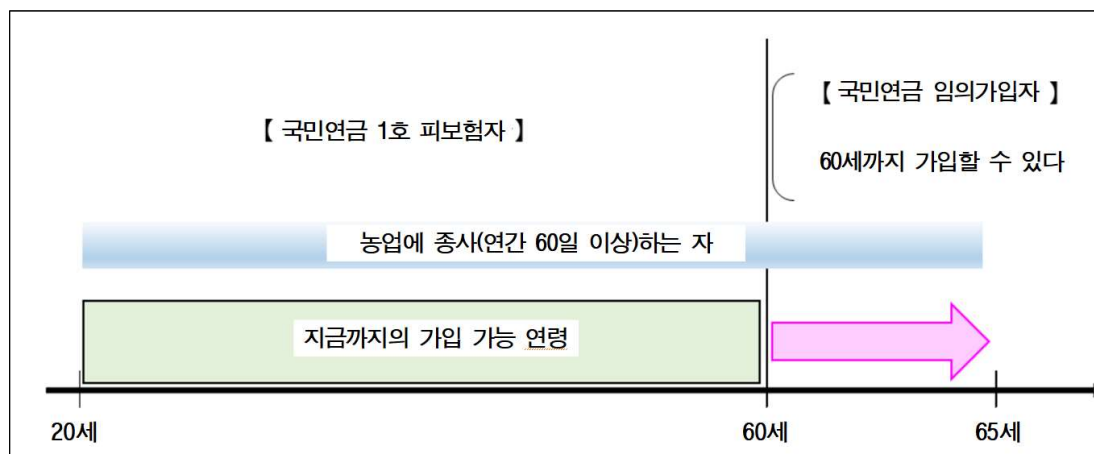
○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농업인의 확보

3.3.2. 피보험자

○ 농업에 종사(연간 60일 이상)하는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1호 피보험자(2022. 5. 1.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한해 65세까지 가입 가능).

- 다만, 60세 이후 농업자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통상가입만이 가능하며, 계속 농업자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농업자연금의 가입수속이 필요하고, 국민연금의 부가연금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음.

〈그림 3-7〉 농업자연금 가입연령 연장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https://www.nounen.go.jp/nounen/seidokaisei>, 검색일: 2022. 4. 15.).
農業者年金制度の改正について.

3.3.3.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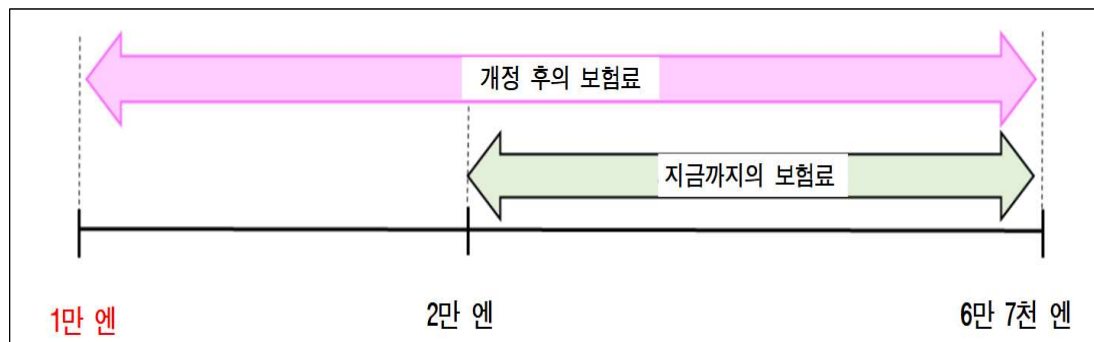
○ 월액 2만~6만 7천 엔의 범위에서 천 엔 단위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납부액을 결정함(가입 후에 변경 가능).

- 따라서 연금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지 않음.

○ 35세 미만으로 인정농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1만 엔부터(상한 6만 7천 엔)라도 통상가입할 수 있게 됨(2022년부터).

- 보험료의 납부하한액이 2만 엔에서 1만 엔으로 인하됨.

〈그림 3-8〉 35세 미만인 자의 통상가입 보험료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https://www.nounen.go.jp/nounen/seidokaisei>, 검색일: 2022. 4. 15.).
農業者年金制度の改正について.

○ 보험료 인하(보험료 1만 엔 이상) 대상자는 다음의 ①~⑤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함.

① 인정농업자이면서 청색신고자

② 인정취농자이면서 청색신고자

③ ① 또는 ②의 자와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④ 인정농업자 또는 청색신고자

⑤ ① 또는 ② 이외의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농업에 상시종사하는 후계자

○ 통상가입으로 2만 엔 미만의 보험료를 선택하고 있는 자가 35세가 되었거나 또는 인정농업자로 되는 등 위의 ①~⑤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가입의 보험료를 2만 엔 이상으로 변경 또는 정책지원 가입의 수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3.3.4. 정책지원

○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보험료 각출을 국가가 보조하여 해당 보조를 원자(原資)로 특례부가연금을 지급

○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인정농업자 또는 인정신규취농자로 청색신고자(이들의 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 및 후계자도 대상)
- 39세까지 가입
- 농업소득이 900만 엔 이하
- 지원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함(〈표 3-26〉 참조).

○ 특례보험료 적용(보험료 각출에 대한 보조)

- 월액 보험료의 하한액(2만 엔)에 대해 5~2할 할인 보험료(1만~1만 6천 엔)를 적용하여 그 차액(1만~4천 엔)을 국고보조함.
- 지원기간은 최장 20년분(그중 35세 이상의 기간은 10년분이 상한)

〈표 3-26〉 보험료의 국고보조 대상자와 보조액

구분	보험료액/월	
	35세 미만	35세 이상
1. 인정농업자이면서 청색신고자인 경영주	피보험자 부담 10,000엔	피보험자 부담 14,000엔
2. 인정취농자이면서 청색신고자인 경영주		
3.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와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	국고보조 10,000엔	국고보조액 6,000엔
4. 인정농업자가 청색신고자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경영자로 3년 이내에 양쪽을 충족하는 것을 약속한 자	피보험자 부담 14,000엔	피보험자 부담 16,000엔
5.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의 직계비속이며, 아울러 35세 미만의 후계자로 35세까지(25세 미만인 자는 10년 이내)에 1의 자로 되는 것을 약속한 자	국고보조 6,000엔	국고보조 4,000엔
		-

주 1) 35세 미만으로 가입한 자는 35세부터 자동적으로 35세 이상의 금액을 변경됨.

2) 구분1의 인정농업자는 농업법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함.

3) 구분3 및 구분5의 가입자는 연간 농업종사일수가 150일 이상일 필요가 있음.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https://www.nounen.go.jp/nounen/seido/gaiyou/point6.html>, 검색일: 2022. 4. 15.).

〈그림 3-9〉 보험료 부담 예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웹사이트(<https://www.maff.go.jp/>, 검색일: 2022. 3. 8.).

○ 특례부가연금 지급

- 보험료 보조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등의 합계가 20년 이상이고 경영승계 등에 의해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경우 65세 이후 종신 급부함(60세까지 소급 수급도 가능).
- 연금액은 보험료 보조의 적립 및 그 운용수익에 근거하여 결정함.

3.3.5. 연금의 종류(적립방식·확정각출형)⁶⁹⁾

☐ 농업자노령연금

- 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와 그 운용수입을 기초로 65세가 되면 누구나 종신수급할 수 있음(60세까지 소급하여 수급 가능).

☐ 특례부가연금

- 보험료의 국고보조액과 그 운용수입을 기초로 종신수급할 수 있지만, 수급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으로부터 은퇴(경영승계)할 필요가 있음.
- 경영승계 시기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으므로 65세부터 농업자노령연금을 수급하면서 농업을 계속하고, 본인의 체력 등에 따라 특례부가연금의 수급 시기를 결정할(지연시킬) 수 있음.

☐ 사망일시금

- 가입자(수급자를 포함)가 80세 전에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익월부터 80세에 달하는 월(月)까지 농업자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 지불되게 되는 연금을 지불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른 금리로 할인한 금액(농업자노령연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망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됨.
- 가입한 연령과 사망한 연령이나 그때까지의 운용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은 불입된 보험료를 밑돌 수 있음.

⁶⁹⁾ 농업자연금기금 웹사이트(<https://www.nounen.go.jp/soshiki/gaiyou/data/gaiyou.pdf>, 검색일: 2022. 4. 15.); 농업자연기금 웹사이트. 給付の種類(<https://www.nounen.go.jp/nounen/seido/data/kyufushurui.pdf>, 검색일: 2022. 4. 15.)

3.3.6. 연금 수급⁷⁰⁾

○ 신제도(농업자노령연금·특례부가연금)의 농업자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text{연금액} = \frac{\text{연금원자(原資)(적립금 + 운용수익)}}{\text{연금현가율⁷¹⁾}}$$

○ 구제도(농업자노령연금·경영이양연금)의 농업자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경영이양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1957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자이며, 이 이후는 농업자노령연금으로 일체(단일)화함. 더욱이 기본액에 대해서는 이미 농업자노령연금과 동액.
- 가산부 경영이양연금은 50a 이상의 경영농지를 소유하는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 등 구제도 하의 가입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피보험자 상당자)나 법인등에 경영이양한 경우에 지급.

$$\text{연금액} = \text{연금단가} \times \text{보험료납부완료월수}$$

○ 연금단가(65세 지급 개시의 경우)

⁷⁰⁾ 농림수산성. (2022. 1.).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令和4年(2022年) 1月 現在). p.11.

⁷¹⁾ ‘연금현가율’이란 어느 기간에 걸쳐 연금을 매년 지불하기 위해 미리 필요한 자금(연금원자)이 연금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계수임. 연금현가는 연금의 지불기간 중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각 연도의 연금액의 현재가치(예정이율로 나눈 금액)의 총합이 됨. 종신연금의 경우 예정이율 외에 몇 세까지 연금을 지불하게 되는가에 대해 예정사망률을 이용함.

〈표 3-27〉 연금단가(65세 지급 개시의 경우)

단위: 세, 엔

출생연도	연령 (2021년도말)	경영이양연금		농업자노령연금
		가산부	기본액	
1956년※	65세	1,318엔	1,301엔	1,301엔
1957년	64세	-	-	1,360엔
1958년	63세	-	-	1,421엔
1959년	62세	-	-	1,482엔
1960년	61세	-	-	1,545엔

주 1) 35세 미만으로 가입한 자는 35세부터 자동적으로 35세 이상의 금액으로 변경됨.

2) 구분1의 인정농업자는 농업법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함.

3) 구분3 및 구분5의 가입자는 연간 농업종사일 수가 150일 이상일 필요가 있음.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https://www.nounen.go.jp/nounen/seido/gaiyou/point6.html>, 검색
일: 2022. 4. 15.).

○ 농업자연금은 3개월분씩 연 4회(2월, 5월, 8월, 11월)로 나누어 JA 등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됨.⁷²⁾⁷³⁾

- 단, 신농업자노령연금의 연액(특례부가연금도 있는 자는 그 합계액)이 12만 엔 미만인 경우는 연 1회 11월에 지불됨.

〈표 3-28〉 연금 지급

이체 월(月)(연 4회)	3개월분씩 지급
2월 이체	전년의 11, 12월, 당해의 1월분
5월 이체	2, 3, 4월분
8월 이체	5, 6, 7월분
11월 이체	8, 9, 10월분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2022. 4., p.5.) 農業者年金を受給するには: 新制度(農業者老齡年金・特例付加年金)と旧制度(農業者老齡年金).

○ 농업자연금은 소득세법상의 공적연금 등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지

⁷²⁾ 농업자연금기금. (2022. 4.) 農業者年金を受給するには: 新制度(農業者老齡年金・特例付加年金)と旧制度(農業者老齡年金). p.5.

⁷³⁾ 구제도의 경우는 연간 연금액이 12만 엔 미만이라도 4회에 걸쳐 지불됨.

만, 농업자노령연금등의 연간 지급액이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농업자연금기금에서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농업자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는 <표 3-29>와 같음.

<표 3-29> 농업자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

구분	지급 개시 시기
60~64세(소급 청구)	청구가 있던 날(JA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65~74세	
65세 도달 후	7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2022. 4., p.6.) 農業者年金を受給するには: 新制度(農業者老齡年金・特例付加年金)と旧制度(農業者老齡年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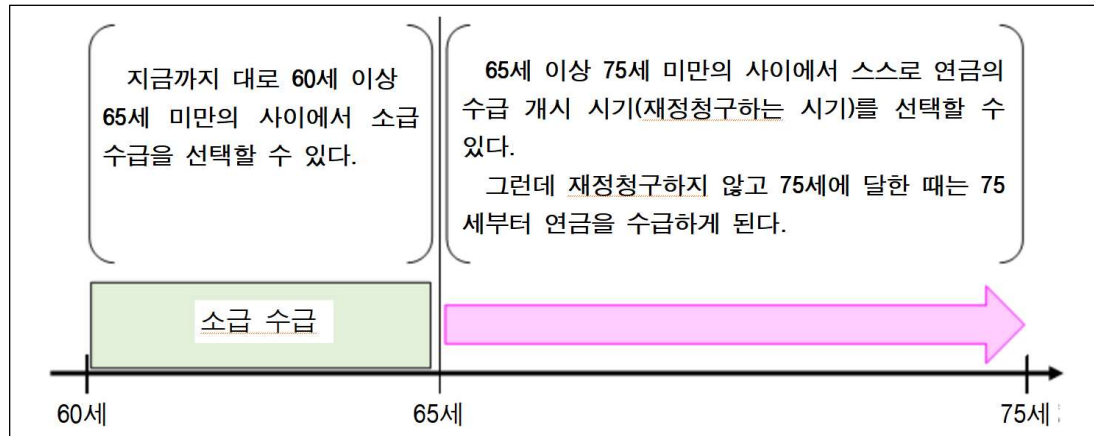
○ 제도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농업자연금 수급 개시 시기의 선택지가 넓어짐.

- 농업자노령연금(1957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65세 이상 75세 미만 사이에서 수급 개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음.
- 특례부가급부(1957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특례부가연금(정책지원 가입된 자)에 대해서는 특례부가연금의 수급요건⁷⁴⁾을 만족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수급 개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음.

⁷⁴⁾ 특례부가연금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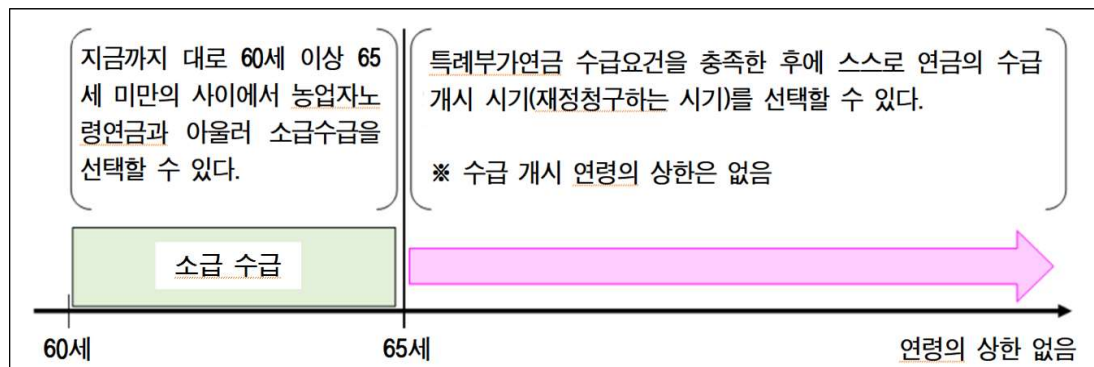
1. 60세에 달한 날의 전일에 20년 이상 보험료납부완료기간 등을 갖고 있을 것
2.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것(경영승계를 완료하고 있을 것)
3. 65세 이상일 것

〈그림 3-10〉 농업자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 소급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https://www.nounen.go.jp/nounen/seidokaisei>, 검색일: 2022. 4. 15.). 農業者年金制度の改正について.

〈그림 3-11〉 특례부가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 소급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https://www.nounen.go.jp/nounen/seidokaisei>, 검색일: 2022. 4. 15.). 農業者年金制度の改正について.

○ 농업자노령연금의 지급권자는 매년 6월 말일까지 농업위원회에 본인이 서명한 현황계를 제출함.

○ 특례부가연금은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함.

- 60세까지의 보험료 납부 기간과 카라기간⁷⁵⁾ 등을 합산하여 20년(240개월) 이상인 사람

- 원칙적으로 65세가 된 사람. 단, 경영 승계를 65세 이후에 한 경우는 특례 부가연금은 경영승계 이후부터 수급하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나이에 경영 승계를 한 경우는 65세 이전에 특례부가연금을 조기 청구할 수 있음.
- 경영승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양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경영승계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영농하는 것이 허용됨.

3.4. 농업자연금과 경영승계⁷⁶⁾⁷⁷⁾

○ 경영승계란 다음의 네 가지 경우별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임.

- 농지·채초방목지 또는 특정 농업용시설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에 근거해 농업을 영위하는 자: 농지 및 특정 농업용시설의 전부에 대해 적격한 제3자 또는 후계자에 대해 권리이전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으로부터 은퇴하여야 함.
- 일반농업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는 ②에 의한 처분도 필요함. 단, 제3자에게 경영승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자류지(自留地)가 인정됨.⁷⁸⁾⁷⁹⁾

⁷⁵⁾ 농업자연금의 피보험자는 국민연금 제2호 피보험자가 되거나 국민연금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경우, 농업자연금을 탈퇴(피보험자 자격을 상실) 할 수 있음. 그러나 피고용자 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일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액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농업자연금 정책 지원 가입 요건 및 특례 부가 연금의 지급 요건 기간에 합산될 수 있음. 이러한 기간을 ‘카라기간’이라 함.

⁷⁶⁾ 일본 농업자연금기금(2022. 4.). 農業者年金を受給するには: 新制度(農業者老齡年金・特例付加年金)と旧制度(農業者老齡年金). p.8.

⁷⁷⁾ 일본 농업자연금기금(2022. 4.). 農業者年金を受給するには: 新制度(農業者老齡年金・特例付加年金)と旧制度(農業者老齡年金). p.11.

- 농지등의 권리를 갖지 않고, 일반농업생산시설만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에 근거해 농업을 영위하는 자: 일반농업생산시설의 권리이전 또는, 그 시설에 대해 공용(供用) 폐지, 용도변경 등의 처분을 하여 농업경영으로부터 은퇴하여야 함.⁸⁰⁾
- 가족경영협정에 의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자, 후계자: 가족경영협정서에 열거하는 약정 중 경영 관련 부분의 협정을 파기하거나, 또는 경영관련 부분에서 제외되도록 협정을 명확화하는 등 농업경영으로부터 은퇴하여야 함.
- 법인 구성원: 법인의 상시 종사자인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

○ 경영승계 과정에서 농지 및 농업용시설의 양수는 다음의 대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농지 및 특정 농업용시설: 60세 미만의 농업경영자, 60세 미만의 신규취농자로 통산 3년 또는 최근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농지중간관리기구,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 JA, 농협연(農協連), 농사조합법인, 지방공공단체 등 제3자(복수의 상대도 가능),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1인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통산 3년 또는 최근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
- 일반농업생산시설: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 이외에 요건은 없음.

78) 특정농업용시설: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날의 1개월 전의 날(기준일이라고 함)에서 농업에 제공하고 있던 잔존내용년 수 10년 이상의 축사 또는 온실임.

79) 특례부가연금의 수급 요건은 농업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농가나 농지중간관리기구 등 제3자에게 처분할 때에 한해 10a당(道南을 제외한 북해도는 20a) 또는 기준일에 농업에 제공하고 있던 농지 등의 1/3의 면적 어느 것 중 작은 면적 이내의 자류지(自留地)를 남길 수 있음.

80) 일반농업생산시설: 기준일에서 또는 기준일 후 경영승계하기까지의 사이에 취득·반환을 받아 농업에 제공하고 있던 잔존내용년 수 10년 미만의 축사 또는 온실, 잠실, 버섯재배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임.

○ 경영이양 농업인은 소유지, 차지(借地) 등 본인명의로의 농지 및 농업생산시설의 전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해야 함.

- 소유지(및 소유시설)는 경영승계의 상대방이 양도하거나(소유권의 이전) 또는 대출함(사용수익권의 설정).
- 차입지(및 차입시설)는 경영승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거나(사용수익권의 이전) 또는 전대하든가, 대주(貸主)에게 반환함(사용수익권의 소멸).
- 기준일 후 1개월 이내에 토지수용법의 수용이 있던 경우 등은 적격한 경영승계로 봄.

○ 경영승계는 단지 농지 등의 권리명의를 변경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체를 동반해야 함.

○ 농업인은 승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농업경영주 지위를 이전해야 함.

- (후계자에게 경영승계 한 경우) ① 농업경영을 주재하는 것과 손익의 귀속처를 후계자에게로 이전, ② 후계자가 원칙적으로 중요한 농작업을 담당할 것, ③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공제, 경영소득안정대책등교부금, 농업소득에 관련된 납세신고 등 세 가지의 명의를 후계자로 변경할 것
- (제3자에게 경영승계 한 경우) ① 농지 등의 권리의 이전·설정계약의 완전이행이 확보될 것, ②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농지 및 시설 등에 관련하여 농업공제의 가입 명의, 경영소득안정대책등교부금의 신청 명의를 수급권자가 갖고 있지 않을 것

○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승계를 확인하여야 함.

- (경영승계 시) 경영이양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서류와 함께 농업위원회에 제출함.

- (현황계 제출 시) 현황계 제출 시에 자류지의 범위를 초과한 농지의 취득이 없다는 것과 제 명의가 변경된 상태로 경영승계된 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자기 체크를 함.⁸¹⁾

3.5. 운영 실적

〈표 3-30〉 농업자연금 피보험자 수 및 수급권자 수

단위: 명

제도	구분	전체	정책지원 대상자 수
신제도 (2020년도)	신규가입자 수	2,626명	663명(특례보험료 적용)
	피보험자 수	45,862명	10,478명(특례보험료 적용)
	수급권자 수	50,484명	7,071명(특례부가연금 수급권자 수)
	60세 도달자 수	32,977명	-
	가입자 누계	129,323명	-
구제도 (2020년도)	수급권자 수	268,448명	184,76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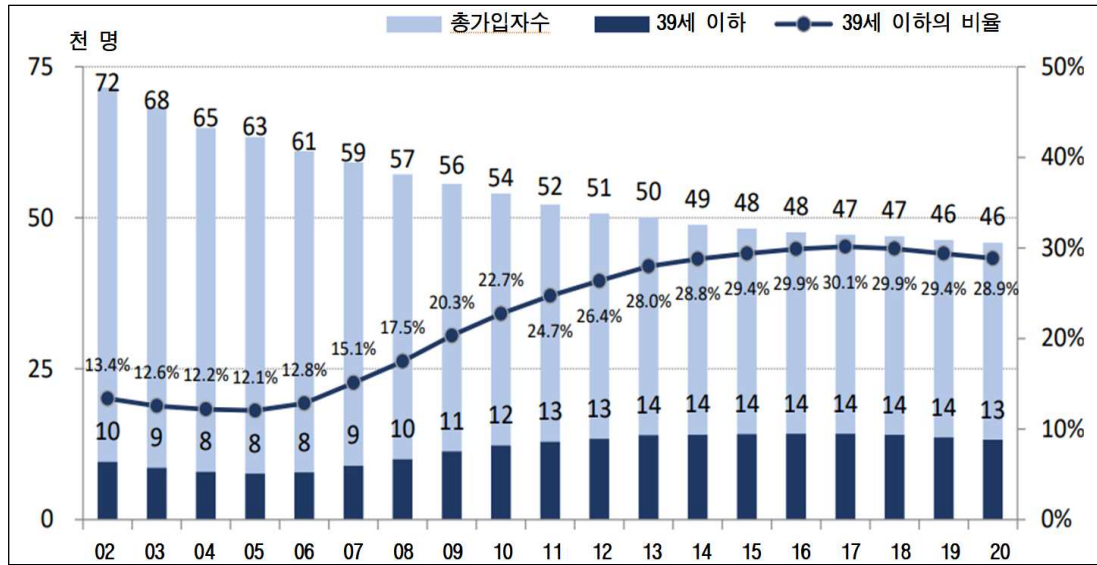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2022. 1, p.3).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令和4年 1月 現在).

2020년도 현재 농업자연금 관련 피보험자 수 및 수급권자 수는 〈표 3-30〉과 같음.

○ 총가입자 수는 신제도 실시 이후 계속 감소추세이나, 그중 39세 이하는 3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⁸¹⁾ 현황계는 연금수급권자의 생존 확인, 농업경영의 재개 유무, 제 명의변경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수급권자에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

〈그림 3-12〉 피보험자 수 추이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2. 1, p.3).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令和4年(2022年) 1月 現在).

○ 보험료 납부금액별 피보험자 수 분포를 보면 2만 엔대가 50.8%로 가장 많고 1.6만 엔대가 가장 적음.

〈표 3-31〉 보험료 납부금액별 피보험자 수

단위: 명, %

보험료 납부금액별	1만 엔	1.4만엔	1.6만엔	2만엔대	3만엔대	4만엔대	5만엔대	6만엔대
피보험자 수(명)	2,967	7,458	53	23,174	3,502	1,483	1,682	5,289
비율(%)	6.5	16.4	0.1	50.8	7.7	3.3	3.7	11.6
비고	정책지원 대상자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2. 1, p.3).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令和4年(2022年) 1月 現在).

〈표 3-32〉 연금종류별 수급권자 수 및 연금액

단위: 명, 천 엔

연도	농업자노령연금			특례부가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수	연금액	평균 연금액	수급권자 수	연금액	평균 연금액	건수	연금액	평균 연금액
2016	37,585	2,867,290	76	5,077	122,799	24	536	686,387	1,281
2017	41,459	3,381,287	82	5,763	147,217	26	626	723,502	1,156
2018	44,871	3,892,431	87	6,287	166,825	27	577	697,429	1,209
2019	47,914	4,376,481	91	6,736	184,443	27	611	705,955	1,155
2020	50,484	4,799,094	95	7,071	197,564	28	743	834,137	1,123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2022, pp.11-13). 数字で見るのうねん(2020年度).

3.6. 연금 자산 운용⁸²⁾

3.6.1. 운영 주체

○ 농업자연금기금은 독립행정법인 농업자연금기금법(2002년 법률 제127호)에 근거해 농업자의 노령에 대해 필요한 연금 등의 급부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급부와 더불어 농업자의 노후 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농업자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행정법인임.

- 1970년 10월 1일 농업자연금기금(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10월 1일 독립행정법인 농업자연금기금으로 이행됨.
- 2022년 1월 1일 현재 임원 5명(이사장 1명, 이사 2명, 감사 2명(그중 비상근 1명)), 직원 74명임.⁸³⁾

○ 기금은 농업자연금사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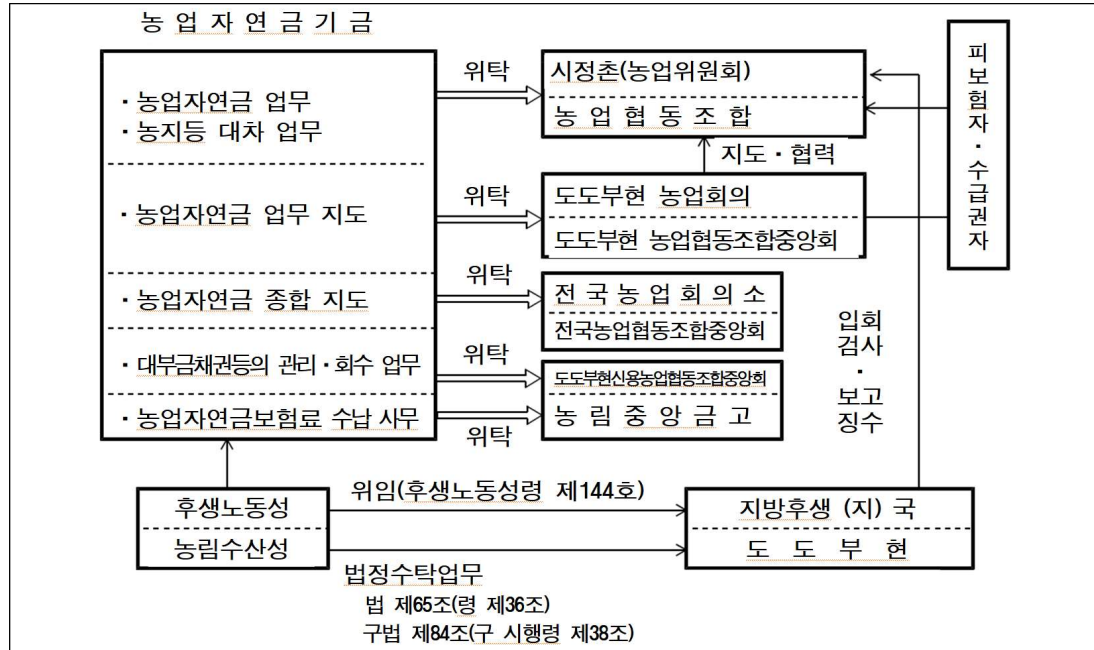
- 농업자연금 가입 신청자의 가입자격의 심사·결정
- 피보험자 기록 및 대기자 기록의 관리
- 보험료의 징수
- 보험료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는 국고지원금 운용
- 급부금(농업자노령연금, 특례부가연금 및 사망일시금)을 수급하도록 하는 자의 수급요건의 심사·결정·지급
- 연금수급권자 기록의 관리 등의 업무

⁸²⁾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獨立行政法人 農業者年金基金の概要(<https://www.nounen.go.jp/soshiki/gaiyou/data/gaiyou.pdf>). 검색일: 2022. 4. 15.

⁸³⁾ 일본 농림수산성. (2022. 1.)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令和4年(2022年) 1月 現在). p.6.

○ 기금은 농업자연금사업 업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 및 시구정촌(농업위원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그림 3-13>.

<그림 3-13> 농업자연금(기금) 업무 추진 체계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獨立行政法人 農業者年金基金の概要(<https://www.nounen.go.jp/soshiki/gaiyoyou/data/gaiyou.pdf>). 검색일: 2022. 4. 15.

○ 업무위탁처별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은 <표 3-33>과 같음.

<표 3-33> 농업자연금 사업 위탁업무 개요

위탁처	위탁업무
시구정촌(市區町村) (농업위원회)	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송부 받은 농업자연금사업 제 신고 등의 접수·점검, 기재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기금으로의 송부 ② 농지 대차 업무에 대해 희망자에 대한 대응 및 대부·임차신청서 등의 수리(受理), 기재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기금으로의 송부 ③ 가입 대상자에 대한 제도의 주지(周知)·보급 ④ 가입 대상자의 파악, 가입추진명부의 작성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 등
농업협동조합	① 농업자연금사업 제 서류의 수리·점검 및 농업위원회(또는 기금)에 송부 ② 보험료의 수납 및 위탁자제로의 송부 ③ 가입 대상자에 대한 제도의 주지(周知)·보급 ④ 가입 대상자의 파악, 가입추진명부의 작성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 등

(계속)

위탁처	위탁업무
도도부현농업회의	① 농업자연금사업의 보급 ② 시구정촌(농업위원회)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 대해 농업위원회에 협력하는 것 ③ 피보험자, 수급권자 등으로부터의 상담에 대한 응답 등 ④ 종합지도원에 의한 조언, 순회상담활동 등 ⑤ 시구정촌(농업위원회)의 가입추진활동에 대한 지원, 자재(資材)의 제공
도도부현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① 농업자연금사업의 보급 ②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 ③ 피보험자, 수급권자 등으로부터의 상담에 대한 응답 등 ④ 종합지도원에 의한 조언, 순회상담활동 등 ⑤ 농업협동조합의 가입추진활동에 대한 지원, 자재(資材)의 제공
전국농업회의소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① 가입추진의 특별활동에 대한 조언·지도, 정보 제공 ② 각 계통조직의 농업자연금 종합지도원의 활동에 대한 조언·지도, 정보 제공 ③ 각종의 회의·연수회, 현지검토회 등에서의 조언·지도 ④ 제도의 보급에 기여하는 계발자료 등의 작성·제공 등
도도부현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대부금채권등의 관리·회수
농림중앙금고	① 피보험자가 신청한 JA예금계좌로부터의 자동이체에 의한 농업자연금보험료 수납 사무 ② 대부금채권등의 관리·회수

자료: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獨立行政法人 農業者年金基金の概要(<https://www.nounen.go.jp/soshiki/gaiyou/data/gaiyou.pdf>). 검색일: 2022. 4. 15.

3.6.2. 농업자연금기금의 업무 및 자금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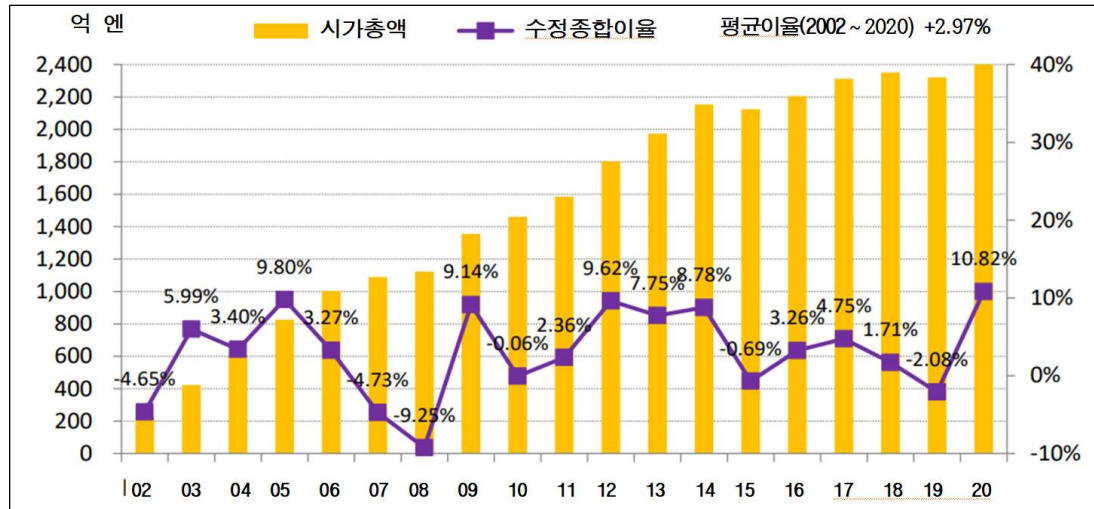
- 농업자연금기금은 농림수산성으로부터 국고를 교부금으로 받아 신제도 및 구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가는 기금에 운영비교부금, 농업자연금급부비등부담금 및 특례부가연금지원보조금을 교부하며, 기금은 이를 집행함<그림3-14>.
- 2021년도 전체 수입 예산 1,910억 1,900만 엔 중 구제도의 농업자연금급부비등부담금(1,166억 1,400만 엔)이 차지하는 비율은 61%나 차지하여 과거 제도의 청산을 위한 국가부담이 큼을 알 수 있음.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financial structure of agricultural insurance. At the top, a green box labeled '농림수산성'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versees three main funding sources: '운영비 교부금 4,529(3,410)백만 엔' (Operating Expenses Subsidy), '농업자연금금부비등부담금 116,614(118,109)백만 엔' (Agricultural Pension Fund Contribution), and '특별부가연금지원보조금 1,007(1,038)백만 엔' (Special Additional Pension Support Subsidy). These funds flow into a central yellow box labeled '농업자연금기금' (Agricultural Pension Fund). Within this fund, there are four sub-accounts: '각 계정 업무비' (Account Administrative Expenses), '구 연금계정' (Old Pension Account), '농지매매대차등 계정' (Land Buy/Sell/Lease/etc. Account), and '특별부가연금 계정' (Special Additional Pension Account). The '구 연금계정' is linked to a '금융기관' (Financial Institution) via '장기차입금' (Long-term Borrowing) and '상환금이자' (Repayment Interest). It also receives '사무수수료' (Administrative Fees) and provides '(대부)' (Loan) to the '농지매매대차등 계정'. The '농지매매대차등 계정' provides '(대부)' (Loan) to the '특별부가연금 계정' and '상환금이자' (Repayment Interest). The '특별부가연금 계정' provides '연금금부' (Pension Fund) to the '농업자노령연금등 계정' (Agricultural Elderly Pension, etc.). The '농업자노령연금등 계정' provides '연금금부' (Pension Fund) and '보혐료' (Insurance Fee) to the '사망일시금 급부' (Death Benefit Payout). Finally, all these flows lead to a blue box at the bottom labeled '피보험자 · 연금수급권자 등' (Insured Persons, Pension Beneficiaries, etc.).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2. 1., p.12).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令和4年(2022年) 1月 現在).

- 농업인 연금제도의 해외 사례 ■ 113

〈그림 3-15〉 연금자산의 운용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2. 1., p.3).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令和4年(2022年) 1月 現在).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 독일, 프랑스, 일본의 농업인 연금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연금과는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자영농민을 대상으로는 농민연금과 임금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일부를 MSA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의 농업인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반적 법적 연금보험(GRV)과 분리된 독자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일본의 농업자 연금은 공적연금체계의 2층에 해당하는 가산연금으로서 농업자연금기금이 농업자 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의 농업인 연금은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 뿐만 아니라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장치로서도 활용되어 왔음.

- 2018년 이전까지 독일의 농업인은 연금을 받기 위해 농장을 이양해야만 했으며 일본도 특례부가연금제도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노후 소득 확보와 경영이양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유럽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의 가입 범위는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관계된 인구까지 포함하고 있음.

- 프랑스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가족, 농업 종사 임금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농민과 임금농민을 구분하여 연금을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의 농업인노령보험은 농업경영주와 배우자,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일본 농업자 연금은 가입 대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농가 내 농업종사자가 모두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단, 농업법인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는 농업자 연금이 아닌 후생연금의 가입 대상임.

○ 가입 방식에 있어 독일과 프랑스는 의무가입인 반면 일본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차이와 무관치 않음.

- 일본은 국민연금으로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하고 있는 구조이므로 농업자 연금이 가산연금으로서 의무가입의 필요성이 낮음.
- 반면, 유럽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독자적인 연금 체계로 운영되고 농업인의 자격 요건으로서 연금 가입 여부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의무가입의 필요성이 높음.

○ 농업인 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예산으로 농업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재정기금을 지원함.
- 독일에서는 연간 소득이 기준 소득의 60% 미만일 때 최대 보험료의 60% 까지 지원함.
- 2020년 현재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예산의 경우 약 60%가 구제도의 연금 지급에 소요되고 있으며, 신제도에서는 농업자연금 보험료의 정책지원에 한정하고 있음.

○ 농업인 연금은 노후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노후필요 소득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연금액이 낮음.

- 프랑스에서는 낮은 연금액에 대한 농민단체의 불만이 커지자 최저임금의 70%에 불과한 자영농민의 농민연금액을 85%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을 시행함.
- 독일 농업인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생계의 일부를 담당하는 부분연금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부분연금하에서 연금 개시의 조건으로 영농은퇴를 의무화해 왔음.
- 2018년 농장이양 의무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는데, 위헌 판결의 요지는 부분연금에 해당하는 농업인 연금이 생계 보충 수단이 되는 영농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것임.
- 일본의 농업자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산연금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업인에 한해 노후 소득원 중 하나가 됨.
- 외국 사례는 농업인 연금이 유일한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 수단이 될 수 없고 다른 방법의 노후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외국의 농업인 연금의 주된 목적을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에 두고 있으나 은

퇴와 연계시킴으로써 경영이양 촉진 효과를 누림.

- 프랑스의 농민연금 수급은 은퇴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경영이양과 연계된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이양과 연금의 연계성을 높였음.
- 일본은 농업자 연금 신제도에서 연금수급자의 연금수급을 지원하기보다는 농업자연금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지원을 집중하고 있어 농업자 연금의 목표를 ①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및 ②농업인 확보의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으나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됨.
- 독일은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2018년 이후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됨.

○ 연금 재원 확보방식에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있으며 각국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프랑스는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양세대가 피부양세대의 1/3 수준인 구조 탓에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음,
- 일본은 2001년까지 부과방식을 적용하다가 부양세대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해 적립방식으로 변경함.

○ 농업인의 노후 소득 확충을 위한 제도 신설 또는 개선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함.

- 일본의 농업자연금제도는 1960년대 후반 농림수산성과 후생성이 검토를 시작한 것이 발단이지만,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350만 명의 서명, 농업인 대표 1만여 명의 요청대회 개최 등)가 제도 신설의 큰 힘이 된 것으로 판단됨.

- 농정 관련 정책(제도) 개발 시에는 관련 농업인들의 수요와 참여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제도의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일본 농업자연금의 경우 당초 적립방식으로 출발하였다가 경영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확정각출형 적립방식으로 근본적인 수정(개혁)을 하게 되었음.
- 일본은 농업자연금 보험료 정책지원을 통해 농업인 확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있으나 재정 효율성을 고려해 지원 범위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
- 정책지원의 보험료 수준을 본인부담 2만 엔 이하로 한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농가의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함.
 - 보험료 정책지원의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한정함으로써 가능한 젊고 영세 규모의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구조임.
- 일본은 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업무의 상당 부분을 관련 농업기관 및 행정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농업자연금사업 업무의 일부를 농협 또는 농업위원회 등에 위탁함.
 - 기금 운용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자가운용), 기금의 상당부분을 전문적인 자산운용기관에 위탁(외부운용)하고 있음.

제4장

국내 농업인 연금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



4

국내 농업인 연금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

1. 농업인 연금 도입의 쟁점

1.1.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농업인 연금의 역할과 위상

- 농업인 연금은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의 연관성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연금이 직역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농업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추가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에 가입하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실정임.

〈그림 4-1〉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



자료: 이용하(2011, p.4).

○ 공적연금으로서 농업인 연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에 더한 가산연금으로서 도입할 것인지, 국민연금의 대체재로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농업인 연금이 가산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영업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민간근로자의 퇴직금/퇴직연금에 준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됨.

○ 다시 말해, 운영체제나 노후소득보장체계상 위치에 따라 농업인 연금을 유럽형과 일본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체제를 가진 농업인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국민연금을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은 국민연금의 가산연금으로서 농업자 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유럽형과 같이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것은 국내 상황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운영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야 하는 부담, 재원 조달 및 운영방안, 국민연금 중심의 통합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신규 도입된 농업인 연금을 국민연금의 대체재로서 도입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움.
- 프랑스와 독일은 직별 연금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특수직역에 한해 별도 연금이 존재하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운영하는 형태이므로 국내와는 상황이 다름.
- 또한 외국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속에 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4대 보험조차도 각기 다른 기금과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황과는 더욱 맞지 않음.

○ 따라서 국내의 농업인 연금은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을 농업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초로 정하고 농업인 연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제도 변화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다음으로는 운영체계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일본과 같이 농업인 연금을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기금과 기관에 의해 운영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일부로서 농업인 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있음.

○ 운영체계에 관한 두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안) 국민연금 체계 내에서 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기금 운용과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는 방안
- (2안)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기관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

〈표 4-1〉 농업인 연금 도입방안 정리

구분	(1안) 국민연금과 연계	(2안) 별도 운영
유사사례	일본 특례부가연금 사례	프랑스·독일 사례
운영체계	농업인 계정을 만들어 가입자 별도 관리	별도의 주체가 운영
운영주체	국민연금공단	NH농협생명 등 민간 보험사
가입방식	임의/의무가입	임의/의무가입
경영이양 연계	연금보험료 지원 시 경영이양 약정, 약정자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여 은퇴 시 부가 연금 지급	좌동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적용, 정부 보험료 지원(최대 50%) 및 경영이양 약정 보험료 지원(선택)	보험료 별도 책정, 정부 보험료 지원 및 경영이양 약정 보험료 지원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각 안의 장단점은 〈표 4-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안의 경우, 별도의 기금 조성이나 운용, 기관 설립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비용 면에서 유리하며 국민연금기금 운용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됨.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함. 또한 농업인 연금을 경영이양 지원 수단으로서 활용하거나 농업노동활동 패턴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연금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이 농업인 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음.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인하여 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업인 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농업인 연금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기 어려움.
- 2안의 장점은 첫째, 농업인 노후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며 둘째, 향후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영농활동 개시와 은퇴에 따른 연금 가입 및 연금 수령연계가

가능하며 셋째, 농지연금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로 경영이양을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부분연금인 농업인 연금을 별도의 체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직역연금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농업 분야에 한정한 새로운 연금 도입은 설득력이 낮음.⁸⁴⁾

〈표 4-2〉 농업인 연금 도입방안별 장단점

	(1안) 국민연금과 연계	(2안) 별도 운영
장점	추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음 국민연금공단의 적립금 운용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	농업인 노후 보장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상품 개발, 연금 수령연령 조정 등 유연한 운영 가능
단점	국민연금공단의 협조 필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위험으로부터의 영향 경영이양의 수행 여부에 대한 검증능력 부족	별도 운영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운영 관련 비용 발생→민간 보험사에 대한 운영비 지원 보험금 적립 규모 적음 적립금 운용 성과의 불확실성 존재

자료: 저자 직접 작성.

1.2. 방안별 검토사항

○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방안별로 농업인 연금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을 검토함.

⁸⁴⁾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연금개혁안은 지난 대선에서 일부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며 주목 받음. 주된 이유는 공적 연금 간 연금액의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특수직역연금은 '귀족연금',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으로 대변됨. 군인연금은 1973년에, 공무원 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 고갈, 즉 적자로 일반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역시 현재 통합 논의의 근거로 거론됨. 연금액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반면 연금 간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이 상이하므로 단순 통합은 적절치 않으며, 국민연금으로 통합시 저부담-저급여 체계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는 등 학계의 논의는 분분한 상황임.

1.2.1. 가입 방식

- 가입방식은 크게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눌 수 있음.
- 임의가입방식은 농업인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가능한 연령대의 수요자가 적어 기금 규모가 매우 적어질 수 있음.
 - 특히 농업인 연금이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체계로 운영된다고 하는 경우, 기금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아짐.
-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 여력이 있는 농가가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반면 의무가입방식은 농업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농업인 연금이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수단이라면 의무가입이 타당하지만 보충적 수단이라면 가입을 강제하기 어려움.
- 다만 부분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자체는 자발적으로 하되 탈퇴는 금지하도록 하는 중도적 형태의 운영방식도 적용할 수 있음.
 - 독일의 국민연금(GRV)에서 자영업자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신청에 의한 의무가입방식이 이에 해당함.

1.2.2. 운영주체

- 1안을 선택하는 경우, 농업인 연금의 운영은 국민연금공단이 맡게 됨.

- 2안과 같이 독자적 체제로서 농업인 연금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 운영기관이 필요함.
 - 운영주체는 공적 기금 운용 주체를 신규로 설립하거나 민간 보험사에서 연금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금운용을 위해 신규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운영비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근거법 및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재정 운용의 독립성, 책임성, 정책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기관이 농업인 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법·제도 개편, 인력 및 시설 조달 등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민간보험사에서 정책보험으로서 연금보험 상품을 운용하게 된다면 인력 및 운영비의 부담이 별도 조직 운영에 비해 큰 폭으로 절감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정책보험이 가진 한계 즉, 보험사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 정책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단점임.

1.2.3. 연금 재원확보

- 농업인 연금의 재정 운영을 적립방식으로 할 것인지, 부과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연금의 도입 초기에는 연금수령자가 나오지 않고 최소 납입의무기간

이 경과한 세대가 연금수령기간에 도달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지출이 발생하므로 우선은 적립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금수령기간에 도달한 가입자가 발생할 시점에서 연금은 납입한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적립액의 운용수익을 합한 총액을 재원으로 지급함.

○ 농업인이 다수이고 신규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상황에서는 현 세대가 은퇴세대를 지원하는 부과방식이 적절할 수 있지만, 신규 농업인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부과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음.

- 부과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현 세대의 부양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고령농업인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됨.
- 65세 이상 농가의 비율은 1990년 18.3%에서 2020년 55.9%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농가의 비율은 14.6%에서 1.2%로 감소하였음.

○ 적립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운용 수익에 따라 기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사례를 볼 때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려움.

○ 어떤 경우든 보험료만으로는 재정운용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농업인구의 감소 때문임.

- 농가인구는 2000년 약 403만 명에서 2020년 약 230만 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정규모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임.

1.2.4.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요건

- 농업인 연금의 수령요건으로서 가입 가능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결정해야 함.
- 농업인 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대, 최소가입기간, 수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의 성인이 가입할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임.
- 농업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할 경우, 최소가입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연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농업인 연금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과 같이 모든 가입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음.
- 예컨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에 비해 농업인의 평균 은퇴희망연령을 고려할 때 다소 이른 감이 있어 만 6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개시하도록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음.
 - 임소영 외(20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은 6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에 걸쳐 있으며 건강 문제가 없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하겠다는 비율도 14.3%에 이름.

○ 국민연금의 운영체계 내에서 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상의 혼란이 예상된다.

- 농업인 연금 보험료의 수납과 연금 지급, 연금 재원 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서 담당하게 되었을 때, 국민연금과 농업인 연금에 동시에 가입한 농업인에게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업무담당자와 가입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 가입 및 수급 요건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별도의 운영체제로 농업인 연금이 운영된다면 가입 및 수급요건을 국민연금과 연동하지 않더라도 행정상의 혼란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연금 수급 요건으로서 은퇴 연령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연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경영이양(은퇴)을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경영이양을 조건으로 한다면, 구체적인 경영이양의 확인과 증빙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처럼 농업위원회 등에 경영이양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명의변경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함.

○ 경영이양을 연금 수급 요건에 포함할 것인가는 농업인 연금의 정책목표 중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짐.

- 농업인의 노후소득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경영이양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반면 경영이양에 보다 중점을 둔다면, 농업인의 노후소득보장을 경영이양과 완전히 연계하여 은퇴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 농업인 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연금이라면 경영이양을 연금수급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농업인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반대로 농업인 연금이 임의 가입방식이라면 경영이양을 연금수급 요건으로 할 때 연금가입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경영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업인 연금이 역할을 해야 한다면 일본과 같이 경영이양 연계 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이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단, 이 경우 경영이양의 기준과 이행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함.

2. 농업인 노후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국내 농업인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농업인의 빈곤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동시에 새로운 농업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함.
- 정부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을 운영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고령농업인이 농업소득에 의지하고 있음.
 -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대한 거부감, 평생 직업으로서 농업에 계속 종사하려는 관성 등도 경영이양을 지연시키는 요소이지만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야 한다는 경제적 요인이 경영이양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임.

- 따라서 농업인의 노후소득안정과 경영이양 촉진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농업인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영이양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연금을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농업인 연금 도입에 따르는 쟁점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외국의 농업인 연금 사례를 살펴본 결과, 농업인 연금이 노후 가계비 전체를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주요한 소득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업인 연금 외에도 국민연금이나 개인이 축적한 자산 및 소득 등이 노후의 소득원이 될 수 있음.
- 농업인 연금 도입 방식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기존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한 농업인 연금 확충 방식과 별도 독립체계 운영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1안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을 운영주체로 하고 가산하는 형태의 농업인 연금을 제시하였으며 2안으로서 민간보험사를 운영주체로 하여 별도의 기금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각 방안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쟁점은 가입방식, 운영주체, 연금재원확보,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요건으로 분류됨.
 - 가입방식은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에 대한 결정임.
 - 운영주체는 농업인연금의 보험료 수납, 재정운용, 연금 지급 등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것임.
 - 연금재원확보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간의 선택의 문제임.

-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요건은 농업인 연금의 최소의무가입기간의 설정 여부, 연금 수급 시작 연령, 가입 요건으로서 경영이양 이행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임.
- 이러한 쟁점들은 농업인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관련부처의 입장, 재원확보 가능성, 농업경영환경 등과 밀접하게 연관됨.
- 외국의 사례는 국내와는 연금제도의 발전과정이나 특성의 차이가 있어 외국의 방식을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유럽의 경우, 농업인 연금 관리 기관이 연금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위한 여타 사회보험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과 연계되어 있음.
-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가산연금으로서 농업인 연금을 도입하되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됨.
 - 일본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일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내의 노후소득체계와 보다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벤치마킹이 용이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일본의 농업자 연금은 별도의 운영기관과 기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만 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입하기 어려움.
 - 별도의 기관 및 기금 설치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방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국내에서 그런 정도의 현장 수요가 확인되지는 않음.
- 따라서 국민연금의 일부로서 농업인 연금을 운영하는 1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농업인 연금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응과 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농업인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을 촉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받쳐 주는 체계가 되어야 농업인의 노후 소득 확보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율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연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하되 보험료를 정부가 추가 지원함으로써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연금이 노후생계를 완전하게 보장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어렵고, 독일처럼 부분연금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농업인 연금제도가 경영이양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경영이양을 도울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농업인 연금제도가 부분연금이기 때문에 경영이양을 연금 수령의 조건으로 부과하기 어려움.
- 일본의 특례부가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경영이양을 전제로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과 통합하여 노후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제도로 구상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경영이양직불과 농지연금은 모두 노후소득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전자는 구조조정에, 후자는 노후소득안정에 더 방점을 두고 있음.
- 두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낮고 사업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농지 이양과 연계된 노후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농업인 연금과는 달리 두 제도는 경영이양을 사전에 준비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 연금과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즉, 소득 중심의 농업인 연금과 자산 중심의 노후소득안전망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되 경영이양의 정의, 요건,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상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노후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독일의 법적 연금보험(GRV)

- 법적 연금보험(GRV)의 대상자는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임.
 - 보험가입의무 대상자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는 의무가입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됨.⁸⁵⁾
- GRV에서 보험료의 크기는 2021년의 경우 노동보수(세전 소득)의 18.6%로 정해져 있는데,⁸⁶⁾ 노동자의 경우 이 중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함.⁸⁷⁾
 - 보험료 크기 결정과 관련된 노동보수에도 상한을 두고 있는데, 2021년에 서독지역은 월보수 7,100유로, 동독지역은 월보수 6,700유로로 상한이 주어져 이보다 높은 소득자는 상한액 크기의 보수로 보험료를 계산함(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2021a, p.50).
- 법적 연금보험(GRV)의 운영주체는 2005년 전까지 직무나 업종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운영주체들로 나누어져 있다가 2005년 10월 1일 ‘독일연금보험(Deutsche Rentenversicherung: DRV)’이라는 공공기관으로 통합됨.
 - DRV는 2개의 연방 단위 기구와 14개의 지역 단위 기구로 구성
 - 연방단위 기구로는 ‘독일연금보험 연방(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와 ‘독일연금보험 광산-철도-해양’이 있음.

85) 자영업자의 법적 연금보험의 조건 및 방식에 대해서는 후술함.

86) 보험료율은 매년 7월 1일 갱신되는데, 2018년부터는 18.6%를 유지하고 있음.

87) 자영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 GRV의 재정은 보험료 수입과 연방지원액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AdL의 재정 구성과 비교하면 <부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AdL의 연간 예산규모는 GRV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예산구성상으로는 GRV는 보험료 수입 76.7%, 연방지원 23.3%로 구성됨.
- 반면에 AdL은 보험료 수입 18.8%, 연방지원 81.2%로 구성됨.

<부표 1> 2020년도 GRV와 AdL의 수입예산 구성

단위: 10억 유로, %

구분	GRV		AdL	
	액수	비율	액수	비율
보험료 수입	252.20	76.7	0.54	18.8
연방 지원	76.60	23.3	2.34	81.2
합계	328.80	100.0	2.88	100.0

자료: Deutscher Bundestag(2021);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21c).

○ 2020년에 독일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기간으로 표현되는 보험기간에 있어서 농업인노령보험(AdL)은 2019년 기준으로 평균 29.9년인 반면, 법적 연금보험(GRV)은 38.0년으로 나타남(Deutscher Bundestag, 2020, p.4).

- 평균적으로 노령연금을 개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GRV는 2019년에 64.3세로 나타났는데, AdL는 2018년에 66.6세이던 것이 2019년에 70.6세로 크게 늘어났음. 이것은 2018년에 이루어진 농장이양의무규정(Hofabgabeklausel)의 폐지와 관련된다고 분석함(Deutscher Bundestag, 2020, p.5).⁸⁸⁾

⁸⁸⁾ 농장이양의무 폐지 이전에는 법적 연금보험(GRV)에서처럼 AdL에서도 표준노령연금의 개시 시기(65~67세)를 늦추면 늦춘 만큼 연금액이 증가했는데(증액 요율 월 단위로 0.5%), 농장이양의무 폐지로 이 규정의 적용을 2019년 3월 31일 신청까지로 한정하고 그 이후는 이 규정(0.5% 증액 규정)의 적용을 폐지함. 이에 따라 2019년에 표준노령연금을 신청한 수령자격 보험자가 한꺼번에 늘어났음. SVLFG의 Mr. Reinecke와의 이메일 Q/A(2022. 4. 14.) 참조.

○ 연금 수령의 조건인 대기기간 규정에서 GRV에서는 이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AdL에서는 15년으로 정함.

- AdL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 중에는 AdL의 대기기간에는 GRV의 의무보험기간을 인정해주는데, GRV에서는 AdL의 의무보험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요인이 있기 때문임(Deutscher Bundestag, 2020, p.5).

○ GRV에서 월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 곱하여 산출함(SGB VI 제64조).

- ① 개인적 보수점수(Entgeltpunkte)
- ② 연금유형 요소(Rentenartfaktor)
- ③ 실제 연금가치(aktueller Rentenwert)

○ 개인적 보수점수 도출은 특정연도의 소득분포상 평균값의 연간소득을 갖는 연금자가 1년의 보수점수로 갖는 값을 1로 보고, 이보다 높은 소득은 1보다 늘어나고 이보다 낮은 소득은 1보다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개인별 보수점수는 연도별 보수점수를 보험기간 동안 합한 값이 됨.

○ 연금유형 요소는 연금유형이 연금크기가 관계되는 정도를 보여줌. SGB VI 제67조는 이를 <부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부표 2〉 연금유형별 상관지수

연금유형	상관지수
○ 노령연금(표준노령연금, 조기연금)	1.0
○ 완전한 취업능력감소연금	1.0
○ 부분적 취업능력감소연금	0.5
○ 부양연금	1.0
○ 보험자 사망 후 초기 3개월 미망인연금	1.0
- 이어지는 작은 미망인 연금	0.25
- 이어지는 큰 미망인연금	0.55
○ 반쪽 후손연금	0.1
○ 온전한 후손연금	0.2

자료: SGB VI 제67조.

○ 법적 연금보험(GRV)에서 사용하는 실제 연금가치(aktueller Rentenwert)는 2021년의 경우 서독지역 34.19유로 동독지역 33.47유로임.⁸⁹⁾

○ 월 연금액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곱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도출됨.

- 월 연금액 = 개인별 보수점수 × 연금 유형별 상관값 × 실제 연금가치

○ 125년의 역사를 가진 법적 연금보험(GRV)의 운영주체는 2005년 전까지 직 무나 업종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운영주체들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2005년 10월 1일 ‘독일연금보험(Deutsche Rentenversicherung: DRV)’이라는 공공기관으로 통합됨.

- DRV는 2개의 연방 단위 기구와 14개의 지역 단위 기구로 구성

- 연방단위 기구로는 ‘독일연금보험 연방(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과 ‘독일연금보험 광산-철도-해양’이 있음.

⁸⁹⁾ 독일 바이에른주 가족노동사회부 웹사이트(<https://www.stmas.bayern.de>). 검색일: 2022. 3. 26.

○ DRV의 이사회는 보험가입자 대표자와 고용주 대표자가 50:50으로 구성되고, 국가의 감독을 받음.

- 연금지출액 크기를 보면, 2017년 말 지출총액이 2,560만 유로인데, 이 중 ‘독일연금보험 연방’의 지출액이 약 1,000만 유로이고, ‘독일연금보험 광산-철도-해양’의 지출액 170만 유로이며, 나머지는 14개 지역 기구가 나누어 지출함.

○ GRV에서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됨.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음.

- 허가의무가 동반되는 업종에서 일하는 수공업자(약사, 제빵사 등)
- 예술가, 출판업자(최소 연간 수입 3,900유로 이상이고, 1명 이하 고용)
- 산후조리사
- 학원 교사 등 사설 교사

○ 가입의무가 없는 자영업자가 GRV에 가입하는 방법은 자발적 보험과 신청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나뉨.

○ 자발적 보험(Freiwillige Versicherung)은 보험자가 보험료의 크기와 가입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사회법전 제6권(SGB VI) 제4조에 근거한 ‘신청에 의한 의무보험(Versicherung auf Auftrag)’은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던 자영업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의무보험자가 되는 것인데, 임의로 보험을 탈퇴할 수 없고 해당 자영업업을 그만둘 때만 의무보험에서 벗어나게 됨.

○ 신청에 의한 의무보험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하나는 금액이 확정된 표준보험료(Regelbeitrag)를 납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임.
- 확정된 표준보험료의 크기는 근거값(Bezugsgröße, reference)으로 제시된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요율인 18.6%를 곱하여 도출함.
- 2020년에 월소득의 사용하고 있는 근거값이 서독지역 3,185유로, 동독지역 3,010유로인데, 여기서 도출되는 표준보험료는 서독지역 592.41유로, 동독지역 559.86유로가 됨(Ihre Vorsorge, 2020, p.3).
- 표준보험료 납부방식은 자영업을 시작한 처음 3년 동안에는 정해진 표준보험료의 1/2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의 실제 소득 크기를 보험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됨(Ihre Vorsorge, 2020, p.3).
- 소득에 따른 변동 보험료 방식은 GRV의 일반적 보험료 납부방식과 동일함.

○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던 자영업자가 ‘신청에 의한 의무보험’을 이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Ihre Vorsorge, 2020, p.4).

- 취업능력감소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재활 신청의 권리가 생김
- 기본연금(Grundrente)⁹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⁹⁰⁾ 기본연금(Grundrente)은 2021년 1월 1일 기본연금법(Grundrentengesetz)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연금으로 연금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연금보험 시스템에서 파악하여 보험자의 신청 없이 추가적인 연금액을 지불하는 새로운 연금방식임. 전제조건은 의무보험기간(대기기간)이 35년(최소 33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 자세한 내용은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21b) 참조.

참고문헌

- 강마야, 여민수. (2013).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충남리포트. 제80호.
- 강민정. (2017). “순자산가치를 고려한 농가의 빈곤탈출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민연금공단. (2005). 프랑스 연금제도.
- 국민연금공단. (2022). 국민연금공표통계.
- 김남훈, 김태후, 하인혜. (2020).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정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규, 송건섭, 조덕호. (2011). “농지연금제도를 통한 농촌노인의 생계비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3호. pp.331-349.
- 김수석. (2008).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응한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농촌경제. 제31권 제4호. pp.1-16.
- 김은경. (2013). 프랑스의 복지재원 조달시스템 연구. 경기연구원.
- 김정호, 최경환, 이용호. (2007).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훈, 박지연. (2018). 경영이양직불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노대명, 김대중, 김영아, 김은경, 나병균, 박찬용, 박혜미, 신윤정, 심창학, 이성애, 봉인식. (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진수, 장운욱. (2016). “위험요인을 고려한 농지연금 월지급금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3권 제1호. pp.191-121.
-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
- 농림축산식품부. (2022a). 2022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2022b). 2022년 농식품 사업안내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 1.). “농업인, '21년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 더 받는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3.).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0). 2019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
- 박대식. (2004).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윤병석. (2009).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김강호, 류성희. (2011).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2019).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백학영. (2016).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1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6. 10.).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 류건식, 이봉주, 김동겸. (2009).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평가”. 보험학회지 제83집. pp.93-122.
- 류재현, 안병일. (2017). “경영이양직접지불제가 고령농의 영농은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쌀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4권 제3호. pp.519-538.
- 송시완. (2016). “농가 빈곤 유형과 빈곤지속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내원, 채광석, 이명현. (2008). 농업구조조정과 직접지불제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소영, 김진진. (2020). “경영이양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이양의 제도적 고찰.” 현장농수산연구지. 제22권 제2호. pp.23-36.
- 이용하. (2011). “다층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제1권 제2호. pp.1-27.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본 농림수산성. (2022. 1.).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令和4年 1月 現在).
-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旧制度の抜本的制度改革(<https://www.nounen.go.jp/nounen/seido/data/seidokaikaku.pdf>) 검색일: 2022. 4. 15.
-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給付の種類(<https://www.nounen.go.jp/nounen/seido/data/kyufushurui.pdf>) 검색일: 2022. 4. 15.
-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獨立行政法人 農業者年金基金の概要(<https://www.nounen.go.jp/soshiki/gaiyou/data/gaiyou.pdf>) 검색일: 2022. 4. 15.
-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2021. 3.) 2020年 11月 實施 資金運用に關する調査結果 (<https://www.nounen.go.jp/nounen/shisan/data/r02/questionresult.pdf>) 검색일: 2022. 4. 15.
-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2022. 4.). 農業者年金を受給するには: 新制度(農業者老齡年金·特例付加年金)と 旧制度(農業者老齡年金).
-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2022). 數字で見るのうねん(2020年度).
- 임소영, 최예준. (201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심층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 김남훈, 하인혜. (2019).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선, 이춘원. (2017). “농지연금 수급액 차이가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pp.305-320.
- 정명채. (2015). 농어촌 복지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최경환, 박대식, 심완보, 김상균, 민재성, 문형표. (1994).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확대방안.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영숙, 조덕호. (2016). “농촌노인 가구의 농지상속및 농지연금 이용의 결정요인: 시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1권 제5호. pp.145-162.
- 주프랑스대사관. (2006).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및 개혁 논의.
- 주프랑스대사관. (2017).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 동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2&cciNo=1&cnpClsNo=2>). 검색일: 2022. 7. 2.
- 최경진, 양재성, 성주호. (2015). “농지연금 지급방식 다양화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 연구. 제26권 제4호. pp.1-29.
- 최경환, 황의식. (2007).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2012).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2018). 농가경제조사 2017.
- 통계청. (2019). 농가경제조사 2018.
- 통계청. (2022). 농가경제조사 2021.
- 한국농어촌공사. (2021).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업무지침.
- 한국농어촌공사. (2022).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관련 내부자료.
- 황의식, 채광석. (2008).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효과 분석.” 농촌경제. 제31권 제4호. pp.17-32.
- 후생노동성. (2021. 7.). 厚生労働白書(2021年版)(2020年度 厚生労働行政年次報告):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社会保障.
-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2021a). Unsere Sozialversicherung. 49. Aufl. Berlin.
-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2021b). Grundrente: Zuschlag zur Rente. Berlin.
-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2021c). Statistikportal (Rentenversicherung in Zahlen).
- Deutscher Bundestag. (2020).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und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Drucksache 19/22931.

Deutscher Bundestag. (2021). Lage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2021. Drucksache 20/151.
Ihre Vorsorge. (2020). Rente für Selbstständige: Versicherungspflicht lohnt sich.
SVLFG. (2021). “Auf einen Blick. Daten und Zahlen 2020.”
SVLFG. (2022). “Aktuelle Hinzuverdienstgrenzen der LAK.”
Ulrich Reinecke. (2022. 4. 14.). 이메일(서면 인터뷰).

〈참고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 2022. 6. 2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 2020. 5. 1.)
일본 농업자연금기금법(2002년 법률 제127호)
la loi Chassaigne(Revalorisation des retraites agricoles: 농민연금 인상법)
Einkommensteuergesetz(EStG: 소득세법)
Gesetz über eine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ALG: 농업인 노후보장법)
Gesetz zur Neuordnung der Organisation der landwirtschaftlichen Sozialversicherung(LSV-NOG: 농업사회보험 조직 개편법)
Sozialgesetzbuch (SGB) Sechstes Buch(VI): 사회법전 제6권

〈참고 인터넷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https://www.mafra.go.kr/>). 검색일: 2022. 3. 17.
농지은행·농지연금 웹사이트(<https://www.fbo.or.kr/>). 검색일: 2022. 3. 17.
농촌진흥청 웹사이트(<https://www.rda.go.kr/>). 검색일: 2022. 4. 11.
독일 농민총연맹 웹사이트(<https://www.bauernverband.de/>). 검색일: 2022. 4. 3.
독일 농림원예업 사회보험공단 웹사이트(<https://www.svlfg.de/>). 검색일: 2022. 4. 4.
독일 바이에른주 가족노동사회부 웹사이트(<https://www.stmas.bayern.de/>). 검색일: 2022. 3. 26.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웹사이트(<https://www.bmas.de/>). 검색일: 2022. 4. 3.
독일 연방농식품부 웹사이트(<https://www.bmel.de/>). 검색일: 2022. 4. 1.
미시간 전자도서관 웹사이트(<https://www.lib.umich.edu/>). 검색일: 2022. 5. 2.
일본 농림수산업성 웹사이트(<https://www.maff.go.jp/>). 검색일: 2022. 3. 8.
일본 농업자연금기금 웹사이트(<https://www.nounen.go.jp/>). 검색일: 2022. 4. 15.
통계청 웹사이트(<https://kosis.kr/>). 검색일: 2022. 6. 26.
프랑스 공공 라디오 웹사이트(<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2022. 4. 20.
프랑스 농민공제조합 웹사이트(<https://www.msa.fr/>). 검색일: 2022. 4. 2.

프랑스 농민공제조합 통계 웹사이트(<https://statistiques.msa.fr/>). 검색일: 2022. 5. 2.
프랑스 농림수산부 웹사이트(<https://agriculture.gouv.fr/>). 검색일: 2022. 5. 2.
프랑스 농업 상호보험회사 웹사이트(<https://manouvellevie.groupama.fr/>). 검색일:
2022. 4. 4.
프랑스 사회보장 국제 및 유럽 연락 센터 웹사이트(<https://www.cleiss.fr/>). 검색일: 2022. 4. 2.
프랑스 은퇴에 대한 정보제공 민간 웹사이트(<https://www.la-retraite-en-clair.fr/>).
검색일: 2022. 6. 5.

KREI

www.krei.re.kr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